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KOREA TRADE COMMISSION

Re: Antidumping investigation on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solid from Chinese Taipei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April 7, 2026

To Economic Division
Taipei Mission in Korea
149, Sejong-daero, Jongno-gu, Seoul, Korea

Dear Sir or Madam: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3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Customs Act of Korea and Article 12.1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the Agreement'), we hereby inform you that on April 7, 2026 the Korea Trade Commission ('the KTC') initiated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on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solid from Chinese Taipei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Currently, the subject merchandise in this case is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solid, and is classifiable under the subheadings of 2815.11.0000 of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 However, regarding the control code number and scope of the subject merchandise which the KTC has temporarily defined, the interested parties are allowed to give comments in writing on the classification no later than May 6, 2026.



The supplier specified in the enclosed list has been selected for determining the individual dumping margins. Whereas the dumping margin of the selected suppliers is to be computed individually, the KTC normally accepts the voluntary responses of non-selected suppliers unless an individual examination would be considered as unreasonable and overly burdensome to the KTC, or prevent the timely completion of the investigation under Article 6.10.2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To this end, suppliers which desire to enter voluntarily into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obtain an individual dumping margin are required to express their such intention by submitting an enclosed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to the KTC no later than April 28, 2026. The KTC will notify whether or not to accept the application after consideration of relevant data and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the submitted application.

Accordingly, an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should be immediately available to any suppliers which desire to enter into the investigation process. We cordially request your assistance so that they can have an opportunity to defend their interests in the course of this investiga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Ms. Lee Seon Deok(Tel: 82-44-203-3865, email: leesd84@korea.kr), Dumping and Circumvention Investigation Divis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KOREA TRADE COMMISSION

Sincerely,

Young Yoon Kim

Director

Dumping and Circumvention Investigation Division

Enclosures:

- (1) Copy of Korean government gazette regarding initiation of investigation
- (2) Copy of application for initiation of investigation (non-confidential version)
- (3) Copy of report by the investigating authority (non-confidential version)
- (4) List of suppliers subject to the investigation
- (5)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 (6) Questionnaire
- (7) Guide to product scope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

본 신청인은 중국 및 대만으로부터 고체 수산화나트륨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본 신청서 및 별책 부록 첨부서류에는 본 신청인의 제조원가,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기타 비밀로 취급되어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밀로 취급하여 주시고, 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30일

조사신청서 보완제출일: 2026년 3월 17일

신청인:

주식회사 영진

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변호사 김태우

주식회사 더인터내셔널트레이드컨설팅 공인회계사 김종택



목 차

I. 조사신청개요

1. 신청취지	3
2. 신청인	6
3. 피신청인	7
4. 조사신청물품	8
5. 국내시장현황	13

II.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에 관한 사항

1. 조사신청물품	16
2. 국내생산품	20
3.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비교	22

III. 신청인의 신청자격유무에 관한 사항

1.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라는 사실	24
2.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 충족 사실	24
3. 신청인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사실 여부 ..	25
4.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국내생산자간의 특수관계 사실 유무 ..	25

IV.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증빙에 관한 사항

1. 덤핑수입사실에 관한 증빙	26
2. 조사신청물품 수입량의 누적적 평가	36
3.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증빙	38
4. 국내산업의 피해우려에 관한 증빙	56
5.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에 관한 증빙	62
6. 조사신청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빙 ..	63

<별첨 목록>	77
---------------	----

I. 조사신청개요

1. 신청취지

주식회사 영진(이하 "신청인")은 후술할 내용을 근거로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이하 "조사신청물품")이 국내 시장에 지속적으로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생산량 및 판매량 감소, 수익성의 심각한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외에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급박하게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 드리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입니다. 액체 수산화나트륨은 원재료인 천일염을 전해조¹⁾에서 전기 분해함으로써 생산되며, 이 과정에서 염소(Chlorine)가 일정한 비율로 함께 생산됩니다. 이러한 생산 구조로 인해 액체 수산화나트륨(Alkali)과 염소를 함께 생산하는 산업을 일반적으로 클로르알카리(Chlor-Alkali, CA) 산업이라고 합니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액체 수산화나트륨(수산화나트륨 농도 50% 내외)을 고농도로 농축한 후 고체 형태로 만든 것으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물 또는 액체 수산화나트륨에 용해하여 원하는 수산화나트륨 농도로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액체 수산화나트륨과 구별되는 물리적·상업적 성격을 가지며, 특히 운송 및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액체 수산화나트륨과는 차별화된 제품입니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비누·세제, 섬유, 펄프·제지, 화학, 전기·전자, 금속 표면처리, 수처리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핵심적인 알카리 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체 형태로 공급되는 특성상 액체 수산화나트륨 대비 장거리 운송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피신청 국가 및 관세영역으로부터의

1) 전해조는 염수에 전류를 통과시켜 화학 반응을 유도하는 설비로서, 수산화나트륨과 염소를 동시에 생산하는 핵심 공정입니다.

공격적인 수입 확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국내 고체 수산화나트륨 시장은 큰 산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편, 고체 수산화나트륨 산업이 위축될 경우 이는 해당 제품의 원재료인 액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액체 수산화나트륨²⁾은 염소³⁾와 병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적으로 대량·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염소는 대부분 클로르알카리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체 수산화나트륨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액체 수산화나트륨 수요 감소는 전해조 가동률 저하로 직결될 수 있으며, 이는 염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나아가 클로르알칼리 산업 전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체 수산화나트륨 시장의 건전한 유지와 보호는 개별 제품 차원을 넘어, 국내 기초화학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수십 년간 우리나라 화학 산업의 일원으로서,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수입 자체는 시장 수급에 따른 정상적인 경쟁의 일환으로 수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신청 국가 및 관세영역의 경우, 후술할 내용을 근거로 조사신청물품을 정상가격 이하로 국내에 수출함으로써 국내 시장을 교란하기 시작하였고, 어려운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급속도로 국내 시장을 장악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입니다.

다시 강조 드리면, 고체 수산화나트륨 사업이 중단될 경우, 해당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방산업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이 단절될 뿐 아니라, 가소제⁴⁾, 가공설비, 생산설비 유지·보수 등 후방산업 전반에도 심각한 연쇄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내 화학 산업 전반의 구조적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산업 위기로 판단됩니다.

2) 염산 분해 등 다른 염소 생산 방식도 존재하나, 규모와 경제성 측면에서 이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염소는 일상 생활에서 편리함과 안전을 증대시키는 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주된 원료로 사용됩니다.

4) 가소제란 염소로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플라스틱이나 고분자 재료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입니다. 재료의 유연성, 가공성, 내충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존속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하고 실효적인 수단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있으며, 신청인은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건 조사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 신청인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동종물품 국내생산자인 주식회사 영진이며, 직전 회계연도인 2024년말 기준, 기초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기준)

신청인	주식회사 영진	
회사설립연월일	1978년 8월 10일	
대표자	박제성	
주소	본사 / 부천공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38 (삼정동)
자본금	153,000 백만원	
주요주주 및 지분율	박제성 90%, 기타 10%	
총매출액	41,291 백만원	
조사신청물품의 동종물품 매출액	[***]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고체 수산화나트륨, 인산염, 규산염 등의 화공약품	
종업원수	[***]명	

[별첨 1] 대리인 선임장 (위임장)

[별첨 2] 신청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별첨 3] 신청인의 주요 연락처

[별첨 4] 신청인 감사보고서

3. 피신청인

신청인이 파악하고 있는 조사신청물품의 주요 공급자(생산자)⁵⁾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국 또는 분리관세영역	공급자명	신청인 제시 덤핑률
중국	Befar Group Co., Ltd ("베파르")	20.03%
	Shaanxi Beiyuan Chemical Group Co., Ltd ("산시 베이원")	
	Shandong Dadi Salt Chemical Group Co., Ltd ("산둥 다디")	
	Shandong Xinfu Chemical Co., Ltd ("산둥 신평")	
	Xinjiang Zhongtai Chemical Co., Ltd ("신장 중타이")	
	Xinjiang Tianye Group Co., Ltd ("신장 티엔예")	
	Hebei Jinhong Weibang Chemical Co., Ltd. ("웨이방케미칼")	
	Shandong New Source Chemical Co., Ltd. ("뉴소스케미칼")	
	Fondland Chemicals Co., Ltd. ("폰드랜드케미칼")	
	Qingdao Fangjinlong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칭다오팡진롱")	
	Star Grace Mining Co., Ltd. ("스타그레이스")	
	그 밖의 공급자	
대만	Formosa Plastics Corporation ("포모사")	34.32%
	Joint Fair Enterprise Co., Ltd ("헬리엔터프라이즈")	
	Union Chemical Works Ltd ("유니온케미칼")	
	그 밖의 공급자	

자료원: 신청인 내부자료

[별첨 5] 공급국 또는 관세영역별 피신청인의 주소 및 연락처

5) 신청인이 파악 가능한 주요 공급자들은 모두 피신청 국가 또는 관세영역 내 생산자이며 중간 무역상의 정보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주요 공급자별 대한국 수출물량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고체 수산화나트륨 생산 기업들을 주요 공급자로 기재하였습니다.

4. 조사신청물품

가. 조사신청물품명

- 물품명: 고체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solid)
- 관세분류번호: HSK 2815.11.0000
- 관세율: 기본세율 8%
WTO 협정세율 5.5%
한·중 FTA 협정세율 0%

신청일 현재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자유 무역협정 (이하 “한·중 FTA”) 협정세율인 0%가 적용되는 반면, 대만산 물품의 경우에는 WTO 협정세율인 5.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별첨 6] 조사신청물품 관세분류번호 및 관세율

나. 조사신청물품 정의

조사신청물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농도로 농축·가공하여 제조한 백색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으로, NaOH의 화학식을 가진 것
- 농도 및 성상을 불문하고 모두 조사신청대상에 포함

[조사신청물품의 명칭]

조사신청물품은 화학식 NaOH를 갖는 고체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solid)으로서, 고체 가성소다라는 관용명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상업적 거래 및 유통 실무에서는 이러한 관용명과 화합물의 정식 명칭이 상호 구분 없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조사신청물품의 범위]

조사신청물품의 농도 차이 또는 플레이크, 펠릿, 펄 등 고체 성상의 차이는 제조 공정상 물리적 가공 방식에 따른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농도 및 성상의 차이는 조사신청물품의 본질적인 화학적 특성, 용도 또는 시장 내 대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제 산업 현장 및 상업 거래에서도 상호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조사에 있어 농도 및 성상에 따른 구분(예외)을 두지 않고 덩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고체 형태의 수산화나트륨 일체가 조사신청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신청물품의 화학적 특성]

대표적인 강염기인 고체 수산화나트륨⁶⁾은, 고체 상태에서는 백색의 무른 고체로, 조해성⁷⁾이 있고 특히 물속에서 열을 내며 잘 녹는 성질이 있으나 별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 무취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I-4. 조사신청물품 고체 수산화나트륨>



6)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용해도가 높은 강염기성 물질로, 그 수용액은 강력한 알칼리 특성을 띕니다. 특히 유지류(기름) 및 단백질 분해능력이 탁월하며, 산(Acid)과 접촉 시 급격한 중화열을 발생시키며 반응하므로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조해성은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아 액체 상태로 변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조사신청물품의 용도8)]

조사신청물품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범용 무기화학제품9)” 중 하나입니다.

1) 화학 분야

- (1) 원료물질: 지방과 오일을 비누로 전환하는 비누화 공정에 필수적인 원료
- (2) 알칼리제(pH조절): 알칼리성 세제의 제조
- (3) 공장 세정, 반응 pH¹⁰⁾ 조절: 식품, 유가공업 등 제조라인의 CIP 세척 (Clean-in-Place 제자리세정), 특정 pH에서의 반응 유도를 위한 pH 상향 조정

2) 화학섬유 분야

- (1) 섬유 가공: 레이온 등 인조 섬유 제조 용매(비스코스 공정) 또는 합성 섬유의 후처리 가공 및 세척제 등
- (2) 섬유 정련: 면 등 생직물의 왁스·단백질 등 불순물 제거, 머서화 공정 원료 (Mercerization, 섬유를 팽창시키고 결정 구조를 재배열하여 광택감 등 부여)

3) 수처리 분야

- (1) 산성 폐수의 중화: 염산, 황산 등이 포함된 산성 폐수를 pH 7.0 전후로 중화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되게 하는 용도
- (2) 중금속 및 오염물 침전: 폐수 내 수용성 중금속 이온을 수산화물(찌꺼기) 형태로 만들어 침전·배출시키는 용도

4) 금속 분야

- (1) 금속 표면처리: 금속 표면의 얇은 산화막을 고르게 깎아내거나 후속 공정(도금 등) 위해 표면 거칠기를 조절하는 용도
- (2) 세정: 도색 또는 도금 전 오염물 제거 용도(탈지, 산화물 및 스케일 제거)
- (3) 공정 pH조절: pH 조절 통해 금속 표면을 미세 부식시켜 의도한 성상 제조

8) 신청인이 파악한 바로는, 조사신청물품은 식품첨가물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식품첨가물로서의 사용(수입)을 위해서는 국내 인증 및 식약처 등록 등이 필요하나, 조사신청물품은 해당 등록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9) 주로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염소, 암모니아, 탄산칼슘 같은 대량 생산·대량 소비되는 무기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특정 고급 용도에 맞춘 스페셜티 제품이 아니라, 여러 산업(정유·제철·제지·섬유·수처리 등)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기초 원료라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규모의 경제와 공급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10) pH란 용액이 얼마나 산성인지 또는 알칼리성인지 숫자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pH의 기준점은 7이며 그보다 작으면 산성, 크면 알칼리성 용액입니다.

또는 가공 중 산성 물질로 인한 장비 부식 방지

5) 제지, 펄프 분야

- (1) 펄프 및 제지 정련: 목재에서 종이 원료인 펄프 추출, 불순물 제거, 펄프 팽창 및 결정구조 재배열 역할(섬유 정련과 동일·유사)
- (2) 표백: 표백제 사용 전·후에 투입되어 잔류 리그닌(불순물) 제거 역할, 종이 백색도 향상 및 약품(표백제) 절감 효과
- (3) 중화 처리: 펄프 공장에서 생성된 산성 폐수의 중화

[조사신청물품의 측정단위]

고체 수산화나트륨 제품 모델은 일반적으로 용액의 농도(수산화나트륨 함량) 기준으로 표시되며, 수요자가 요구할 수 있는 주요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체 수산화나트륨 70%
- 고체 수산화나트륨 98% /99%¹¹⁾

이에 따라 고체 수산화나트륨 관련 중량 측정 단위(unit of measurement)는 다음과 같이 2가지가 병행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위	구분
LMT (Liquid Metric Ton)	용액 상태의 중량 전체를 나타내는 단위 (Wet Basis)
DMT (Dry Metric Ton)	용액에 함량된 수산화나트륨의 순수 중량만을 나타내는 단위. 즉, 건조상태의 톤 중량 (Dry Basis)

이를테면 NaOH 20% 제품 100 LMT의 경우 전체 중량 100 LMT 중 수산화나트륨 함량은 20% 라는 의미이므로, 이를 건조상태인 100% 기준으로 환산하

11) 신청인은 고체 수산화나트륨 70%와 98%만 생산 및 판매하지만 피신청인의 경우 고체 수산화나트륨 99%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98%와 99%의 경우 수산화나트륨의 농도가 1%밖에 차이되지 않으며 두 모델은 상호대체가능하기 때문에 99%산 또한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면 NaOH 20% 제품 20 DMT에 해당됩니다.

예) NaOH 20% 100LMT = NaOH 20% 20DMT 이며, 매출액이 1,000원이라면 단위 당 가격은 각각 10원/LMT, 50원/DMT 입니다

조사신청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 중량은 DMT 기준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신청인도 이러한 거래 관행 준수 및 재고관리 목적상 DMT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신청서의 중량 관련 항목 작성에 있어, 비교가능성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중량 단위는 수산화나트륨 함량 100% 기준(DMT 기준)으로 환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별첨 7] 신청인 회사 브로셔

5. 국내시장현황

가. 수입자 및 수요자

(1) 주요 수입자

신청인이 파악한 조사신청물품의 주요 수입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범용 화학제품 특성상 수입자를 완전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그 수입물량 및 비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 확인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DMT, 2024년 연간 기준)

수 입 자	수 입 량 (DMT) ¹²⁾	비 중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원: 신청인 내부자료

[별첨 8] 주요 수입자의 연락처

12) 주요수입자의 수입량은 2024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신청인이 파악한 주요 수입자별 수입량 비중은 2024년 동안 수입된 조사신청물품의 전체수입량을 곱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 주요 수요자

신청인이 파악한 주요 수요자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DMT, 2024년 연간 기준)

수요자	수요량 ¹³⁾ (DMT)	비중 (%)
[***]	[***]	[***]%
[***]	[***]	[***]%
[***]	[***]	[***]%
[***]	[***]	[***]%
[***]	[***]	[***]%

자료원: 신청인 내부자료

[별첨 9] 주요 수요자의 연락처

나. 국내 생산자

국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DMT, 2024년 연간 기준)

국내생산자	생산량	비중 (%)
주식회사 영진	[***]	[***]%
범창산업 주식회사	[***]	[***]%
합계	[***]	[***]%

자료원: 신청인 내부자료

[별첨 10]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회원사 리스트

13) 수요량은 신청인의 2024년 국내 판매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국내수급 현황

신청인이 파악한 조사신청물품 및 국내동종물품 국내수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수급 현황>

(단위: DMT, 백만원)

구분		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요	국내소비	물량	1,000	953	-4.7%	1,044	9.6%	1,000	899	-10.1%
		금액	1,000	941	-5.9%	1,000	6.3%	1,000	1,015	1.5%
	해외소비	물량	1,000	409	-59.1%	630	54.0%	1,000	2,043	104.3%
		금액	1,000	1,870	87.0%	744	-60.2%	1,000	1,636	63.6%
합계		물량	1,000	951	-4.9%	1,043	9.7%	1,000	901	-9.9%
		금액	1,000	949	-5.1%	998	5.2%	1,000	1,018	1.8%
공급	국내공급	물량	1,000	795	-20.5%	804	1.1%	1,000	799	-20.1%
		금액	1,000	877	-12.3%	863	-1.6%	1,000	838	-16.2%
	해외공급	물량	1,000	1,316	31.6%	1,603	21.8%	1,000	1,025	2.5%
		금액	1,000	1,079	7.9%	1,243	15.2%	1,000	1,259	25.9%

[자료원: 1. 신청인의 내부자료 2. 한국무역협회(KITA)의 무역통계

[주] 본 신청서 환율은 한국은행의 연평균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2022년: 1,291.95(원/US\$)/2023년: 1,305.41(원/US\$)/2024년: 1,363.98(원/US\$)/2024년 상반기: 1,349.50(원/US\$)/2025년 상반기: 1,427.94(원/US\$)

[별첨 11]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자료 / [별첨 1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환율 자료

II.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에 관한 사항

1. 조사신청물품

가.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

본 조사신청에서 대상으로 하는 물품은 고체 형태의 수산화나트륨입니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대표적인 강염기성 무기화학물질로, 상온에서는 백색의 조해성¹⁴⁾ 고체 형태를 띠며 공기 중의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여 쉽게 용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과 접촉할 경우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취급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청인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GHS)에 따르면 98%의 농도를 가진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녹는점이 318℃, 끓는점이 1390℃이며 70~75%의 농도를 가진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녹는점이 65℃, 끓는점이 181.5℃입니다. 즉,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농도에 따라 녹는점과 끓는점은 상이하며 농도가 높을수록 녹는점과 끓는점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높아질수록 물의 함량이 줄어들는데 농도가 높아진 수산화나트륨은 물에 비해 결합력이 매우 강해 배열구조를 깨는데 큰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높은 알칼리성을 기본으로 국내 다양한 산업에서 기초 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처로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비누·세제 제조, 펄프·제지 생산, 섬유·염색 공정, 금속 표면처리, 상·하수 및 폐수의 pH 조절·중화, 유·무기 합성, 석유화학 공정 등이 있으며, 일부 고순도 제품은 전자소재 세정 등 특수 공정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체 형태의 수산화나트륨은 액상 수산화나트륨에 비해 운송·보관 효율이 높아 수출입 거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체 물성 요

14) 조해성은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아 액체 상태로 변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플레이크형, 펠렛형 등)로 유통¹⁵⁾되고 있습니다만 서로 상호 대체되어 용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주요 물리적 특성으로는 수산화나트륨(NaOH)의 함유량, 탄산나트륨(Na₂CO₃)의 함유량, 염화나트륨(NaCl)의 함유량, 산화철(Fe₂O₃) 함유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동종물품 조사신청물품의 주요 물리적 특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내동종물품의 경우 KS 규격을 준용하고 있고 조사신청물품은 KS 규격이 아닌 각국의 산업표준을 사용하지만 중국, 대만산 조사신청물품의 주요 물리적 특성을 국내동종물품과 비교하였을 때 물리적 특성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비교’에서 후술하였습니다.

[별첨 13] 한국산업표준 KS M 1403 및 신청인의 물질안전보건자료

15) 신청인은 플레이크형 고체 수산화나트륨만 생산하고 있으나 플레이크형이든 펠렛형이든 상호 대체가 가능한 제품으로 용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나. 제조공정¹⁶⁾ 및 제조방법

1단계: 50% 내외의 액체 수산화나트륨 투입 공정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인 50% 내외의 액체 수산화나트륨¹⁷⁾을 농축기에 공급합니다. 외부 구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탱크로리(액체나 분말 등을 담기 위해 탱크가 달린 대형 화물차) 차량으로 입고 후 원료 저장 탱크에 보관하다가 생산 시 농축기에 공급됩니다.

2단계: 농축 공정

원료 저장탱크에서 농축기로 공급된 50% 내외의 액체 수산화나트륨은 총 2단계의 낙하박막식 농축기를 통과하면서 농축됩니다(낙하박막식 농축기는 액체를 얇은 막 형태로 흘러보내 물만 선택적으로 증발시켜 농도를 높이는 장치입니다). 이 농축기는 일반적으로 진공 상태로 운전되는데, 이는 압력을 낮춰 물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증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농축 과정에서 필요한 열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에서 발생되며, 해당 열은 농축기의 열교환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어 증발을 유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제품에 불필요한 수분은 증발되어 제거되며 농축기 안에서 가열온도 및 압력에 따라 농축도가 정해집니다.

3단계: 고체화 및 성형

농축된 고농도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차가운 회전 롤러 위에 얇게 도포한 후 빠르게 식혀 고체화합니다. 고체 성상은 기업별로 플레이크 형태, 펠 형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모양만 다를 뿐 사용에 있어서 상호 대체 가능한, 사실상 동일한 제품입니다.

16) 조사신청물품 제조공정은 보편적인 고체 수산화나트륨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급자별 적용 기술 및 공정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제품 실질은 동일합니다. 즉, 일부 공정 변형이 있어도 조사신청물품의 실질은 국내 동종물품과 동일하므로 모두 조사신청물품에 해당합니다.

17) 소금을 물에 녹인 염수를 정제 및 전해해서 약 30%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만든 뒤, 증발 농축 설비에서 물을 제거해 50%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만듭니다.

4단계: 포장 및 저장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습기에 매우 민감하므로, 밀폐된 용기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저장합니다. 포장지의 겉포장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을 이용해 열에 강하고 잘 찢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내피의 경우 폴리에틸렌(PE) 제품을 이용해 비교적 부드럽고 유연하며 수분 차단 및 내용물 보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50% 액체 수산화나트륨으로부터 시작해 농축 → 고체화 및 성형 → 포장의 단계로 진행되며, 이중 농축 공정이 핵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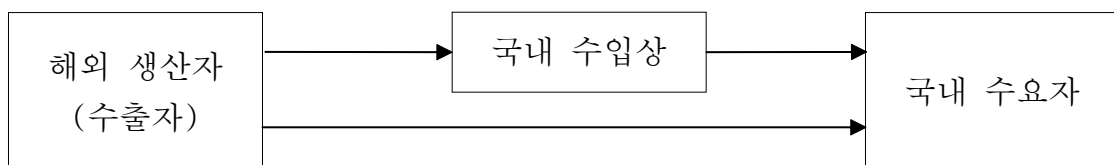
다. 품질 및 소비자평가

조사신청물품은 국내동종물품과 품질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수요자들도 조사신청물품과 국내동종물품을 대체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수요자들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동종물품을 동일한 단일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라. 유통경로

신청인이 파악하기로는, 조사신청물품의 유통은 주로 중국 및 대만 생산자로부터 국내 수요자가 수입하거나, 국내 수입상이 해외 수출자(혹은 생산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신청물품 주요 유통경로



2. 국내생산품

가. 국내동종물품 정의

국내동종물품은 고체 수산화나트륨으로서 조사신청물품과 동일합니다.

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국내동종물품은 조사신청물품과 동일한 화학식(분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물리적 특성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별첨 14에서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주요 물리적 특성인 수산화나트륨(NaOH)의 함유량, 탄산나트륨(Na₂CO₃)의 함유량, 염화나트륨(NaCl)의 함유량, 산화철(Fe₂O₃) 함유량 4가지 특성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동종물품과 조사신청물품은 고체화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실질적 용도는 동일합니다.

[별첨 1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¹⁸⁾의 품질 시험성적서 및 고체수산화나트륨 규격

다.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국내생산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은 조사신청물품과 동일합니다.

라. 품질 및 소비자평가

국내동종물품은 조사신청물품과 품질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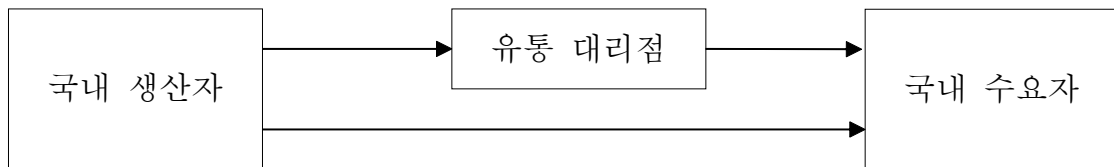
18) 대만산의 경우 피신청인 중 하나인 'Formosa'의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분석하였지만 중국산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지 못하여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고체 수산화나트륨 제품 중 'L&S International'이라는 중간상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분석하여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들도 조사신청물품과 국내동종물품을 대체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수요자들은 국내동종물품과 조사신청물품을 동일한 단일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수요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 유통경로

국내생산품은 유통 대리점을 거쳐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되거나, 국내 생산자가 국내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생산품 주요 유통경로



3.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비교

가. 물리적 특성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동일한 화학식을 가지고 있어 물리적 특성 역시 동일합니다.

나. 품질 및 소비자 평가

국내동종물품과 조사신청물품은 품질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수요자들도 조사신청물품과 국내동종물품을 대체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수요자들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동종물품을 동일한 단일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시장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주요 품질 항목에 대한 시험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orea Testing & Reseach Institute)에 의뢰하였습니다. 아래 시험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생산품은 조사신청물품과 모든 항목에 걸쳐 동등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 간 품질항목 비교19>

시험항목	분류	단위	시험결과		
		%	중국산	대만산	국내생산품
수산화나트륨 (NaOH) ²⁰	순도	%	[***]	[***]	[***]
탄산나트륨 (Na ₂ CO ₃) ²¹	불순물	%	[***]	[***]	[***]
염화나트륨 (NaCl) ²²		%	[***]	[***]	[***]
산화철 (Fe ₂ O ₃) ²³		%	[***]	[***]	[***]

[별첨 1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품질 시험성적서 및 고체수산화나트륨 규격

라. 소 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생산품과 조사신청물품은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단일 제품으로 품질에 차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동일한 용도로 대체사용하고 있고 그 유통경로 역시 유사합니다.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화학제품 특성상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 역시 동일한 단일 제품이므로 국내생산품과 조사신청물품은 동종물품으로 판단됩니다.

- 19) 아래 네 가지 시험항목은 고체 수산화나트륨 98% 순도의 품질을 구성·좌우하는 주요 성분이며,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나타나는 각종 지표(끓는점, 인화점 등)가 아닌 규격(신청인의 경우 KS규격)에 따라 동종제품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첨 14에 첨부된 규격서 내 TECH Grade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 수산화나트륨 (NaOH, 수산화소듐) :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주성분으로, 강염기성을 나타내는 실제 유효 알칼리 부분입니다. 보통 “유효분” 또는 “알칼리도”로 표시하며, 이 함량이 높을수록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순도와 반응성이 좋다고 평가합니다.
- 21) 탄산나트륨 (Na₂ CO₃, 탄산소듐) : 고체 수산화나트륨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해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알칼리이긴 하지만 NaOH보다 반응성이 약해 유효 알칼리도(중화능)를 떨어뜨리고, 비누·펄프 등 일부 공정에서는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탄산분”을 낮게 관리합니다.
- 22) 염화나트륨 (NaCl, 염화소듐) : 원료 염수(소금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남아 있는 소금 성분입니다. 전도도·부식성·스케일 형성 등에 영향을 주므로, 고품질 고체 수산화나트륨일수록 NaCl 함량을 ppm 단위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 23) 산화철 (Fe₂ O₃) : 설비·배관·원료에서 유입되는 철(Fe) 불순물이 산화된 형태로, 미량 금속 불순물 지표로 봅니다. 색상(탁도)·촉매독·설비 부식, 특정 공정(반도체·전자·정밀화학 등)에서 제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철분(Fe)”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III. 신청인의 신청자격유무에 관한 사항

1.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라는 사실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에 해당하는 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에 관한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 충족 사실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국내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중 하나이며, 2024년 기준 국내동종물품 생산량의 [***]%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국내생산자의 찬성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생산자 중 2024년 생산량의 [***]%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범창

이 본 건 조사신청에 대해 찬성한 바, 찬반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는 100%로 50%를 초과하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동종물품 국내 총 생산량의 [***]%로 25% 이상이므로, 국내산업 과반수 찬성에 따라 국내산업 대표성 기준 충족 사실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내생산자	2024년도 생산량 (DMT)	비중 (%)	찬성여부
주식회사 영진	[***]	[***]%	신청인
주식회사 범창	[***]	[***]%	찬성
합계	[***]	[***]%	

[별첨 15] 국내생산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에 대한 찬성 의견서

3. 신청인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사실 여부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습니다.

4.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국내생산자간의 특수관계 사실 유무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별첨 16] 신청인의 조사신청물품 공급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다는 확인서

IV.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증빙에 관한 사항

1. 덤핑수입사실에 관한 증빙

< 대만 >

가. 정상가격 및 조정사항

신청인은 대만 내수시장에서의 실제 판매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 지사를 통해 거래 증빙 입수를 시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실제 판매 증빙이나 거래 내역은 기업의 극비 사항이므로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차선책으로, 신청인은 코트라(KOTRA) 타이베이 무역관을 통하여 조사신청물품 현지 시장가격 정보를 입수하고자 문의하였으나, 기업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서 자료 수집이 불가능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구성가격을 적용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별첨 17] 코트라 현지가격 조사 의뢰결과

<정상가격(구성가격) 및 산정근거>

(단위: US \$/DMT)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제조원가	판매 및 관리비	총원가	적이익	구성가격
[***]	[***]	[***]	[***]	[***]	[***]	[***]	[***]

(1) 제조원가

ㄱ. 원재료비

조사신청물품의 주된 원재료는 액체 수산화나트륨으로서, 액체 수산화나트륨은

가열 및 농축공정을 거쳐 고체 형태의 수산화나트륨으로 제조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Chemical Market Analytics(이하 ‘CMA’)²⁴⁾가 매월 고시하는 대만 현지시장의 50% 액체 수산화나트륨 가격(DMT 기준)을 2024년 7월에서 202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한 금액을 원재료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별첨 18] 대만의 액체 수산화나트륨 내수판매가격 (CMA 가격)

ㄴ. 노무비

노무비는 주된 공정인 액체 수산화나트륨 농축 공정에 투입되는 인력의 비용으로서, 신청인의 동일 공정 노무비를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한국과 대만 간 임금 차이 반영을 위하여 ‘Trading Economics²⁵⁾’에서 발표한 대만의 월별 제조업 평균임금(2024년 7월~2025년 6월)과 대한민국의 분기별 제조업 평균임금(2024년 3분기 ~2025년 2분기)을 연간 수치로 환산한 후 그 차이만큼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간 환율을 적용한 대만의 제조업 평균임금은 [***]으로, 한국의 제조업 평균 임금 [***]의 [***]%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노무비 단가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대만의 노무비 단가를 산출하였습니다.

[별첨 19] 농축 공정의 노무비 계산

ㄷ. 제조경비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체화 시키는 공정에 투입되는 제조경비 단가는 신청인의 해당 공정 투입 제조경비 단가를 계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만, 제조경비 가운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 경우 한국과 대만 간

24) Chemical Market Analytics는 IHS Markit의 베이스 케미컬 사업부로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OPIS가를 인수하여 2022년 6월 1일 다시 출범한 글로벌 화학시장 분석기관이며 40년 이상 축적된 화학·에너지 시장 데이터와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기관은 30개 이상의 주요 지역 및 국가를 대상으로 200종 이상의 기초 화학제품에 대한 수급, 가격, 마진 및 트레이드 데이터를 제공하며 업계에서 신뢰성 높은 가격 정보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https://cma.opisnet.com>)

25) Trading Economics는 2008년 설립된 글로벌 경제 데이터 플랫폼으로, 196개 국가 및 분리관세영역, 2,000만 개 이상의 거시경제·금융 지표에 대한 실시간·역사 데이터와 전망치를 제공합니다. 각종 통계청·중앙은행 등 공식 출처의 데이터를 집계·통합해 API, 웹, 엑셀로 제공하며, 기업·금융기관·연구자의 경기 분석, 리스크 관리, 무역·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됩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

물가차이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에서 상기 제조공정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하여 연료비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제조경비 가운데에 지역별 가격 비교가 가능한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의 한국과 대만 간 가격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Global Petrol Price²⁶⁾’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별첨 20] 농축 공정의 연료비 및 기타제조경비 계산

[별첨 21] 산업용 [***] 국가 및 관세영역별 가격 비교

[별첨 22] 산업용 [***] 국가 및 관세영역별 가격 비교

그 외 감가상각비 및 기타 제조경비는 한국과 대만 간 경제규모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1인당 구매력 GDP 수치 비율을 적용코자 하였으나, 대만의 경우 1인당 구매력 GDP 수치가 공시되지 않아, 차선책으로 대만의 공식통계 사이트 (National Statistics, Republic of China (Taiwan))에서 공표하는 1인당 GDP(2024년)와 Trading Economics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1인당 GDP(2024년)의 차이 비율([***]%)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별첨 23] 국가 및 관세영역별 GDP 기준 환산 비율의 계산 근거

(2) 판매 및 관리비

신청인은 대만의 조사신청물품의 주요 생산자들의 손익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에 공시된 재무제표는 ‘Formosa Plastics Corporation(이하, Formosa)²⁷⁾’ 외에는 수집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 및 관리비는 수집이 가능한 ‘Formosa’의 가장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2024년)의 손익계산서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다만, 비교의 정확성을 위하여 판매 및 관리비 항목 중 운송비가 포함된 판

26) Global Petrol Prices는 2011년에 설립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정보 전문 기관으로, 전 세계 150여개 국가 및 분리관세영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연료, 전기, 천연가스의 소매 가격을 체계적으로 추적·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국 및 영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 복수의 신뢰 가능한 출처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여 구축하고 있으며, 월간 가격 전망과 국가영역별 에너지 비용 분석 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BBC,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 주요 국제 언론에 빈번히 인용되는 등 공신력 있는 자료 출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https://www.globalpetrolprices.com/>)

27) 대만을 대표하는 대형 석유화학·플라스틱 원료 기업으로, PVC·폴리올레핀·수산화나트륨 등 기초 플라스틱/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매비 항목은 제외하여 원가 대비 판매 및 관리비 비율(약[***]%)을 계산하였습니다.

[별첨 24] 대만의 판매비 및 관리비 계산

(3) 적정영업이익

적정영업이익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은 대만의 조사신청물품 생산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서술한 사유로 인하여 1개사의 영업이익률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해당 회사는 2022년도에는 약 [***]%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로 전환되어 2024년도에도 영업이익 역시 [***]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당 회사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종합화학회사로서, 기초유분부터 무기화학까지 아우르는 ([***])의 공개된 재무제표를 추가 활용하여, 양사의 영업이익률을 가중평균한 약 [***]%를 활용하였습니다.

[별첨 25] 대만의 주요 화학업체 원가 대비 영업이익률

(4) 조정요소

상기와 같이 제조원가에 판매 및 관리비,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산정한 구성가격은 그 구성 과정에서 있어 운송비 등 판매비 항목은 포함되지 아니한 바, 순(純)구성가격 산정을 위한 내륙운송비 차감 등은 불요합니다.

[별첨 26] 정상가격(구성가격) 산정 상세 계산내역

나. 덤핑가격 및 조정사항

<덤핑가격 및 산정근거>

(단위: US \$/DMT)

조정전 덤핑가격	조 정 사 항			조정된 덤핑가격
	내륙운송비	해상운임 및 수출부대비용	소계	
[***]	[***]	[***]	[***]	[***]

조정전 덤핑가격은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수입통계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조정전 덤핑가격은 CIF 조건 기준이므로 덤핑률 산정을 위해서는 내륙운반비, 해상운임, 부두발생비용 등의 수출부대비용이 조정되어야 하는 바, 신청인은 포워딩 업체에 문의한 해상운임 및 수출부대비용 견적을 기준으로 덤핑가격의 조정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때 해상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금액이고, 그 정보입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조정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만의 수출내륙운송비는 증빙을 입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세계은행 (World Bank)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인 Doing Business의 2020년도 대만의 보고서를 활용하여 수출내륙운송비의 톤당 단가를 산출한 후, 실제 대만 내 생산자들의 공장에서 가오슝항까지의 거리를 곱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별첨 27] 대만의 수출 내륙운송비 계산

[별첨 28] 대만의 수출부대비용 및 해상운임 계산 상세

<덤핑률 산정>

(단위: US \$/DMT)

조정된 정상가격(a)	조정된 덤핑가격(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	[***]	[***]	[***]	34.32%

< 중국 >

가. 정상가격 및 조정사항

중국의 경우에도 신청인은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실제 판매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 지사를 통한 거래 증빙 입수 시도 등 최선을 다했으나 실제 판매 증빙 및 거래 내역은 기업의 극비 사항으로서 입수할 수 없었으며, 차선책으로 진행한 코트라(KOTRA) 칭다오 무역관을 통한 조사신청물품 현지 시장 가격 정보 입수 문의에 대해서도 기업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서 자료 수집이 불가능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중국에 대한 조사신청물품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서도 구성가격을 적용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별첨 17] 코트라 현지가격 조사 의뢰결과

<정상가격(구성가격) 및 산정근거>

(단위: US \$/DMT)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제조원가	판매 및 관리비	총원가	적정이익	구성가격
[***]	[***]	[***]	[***]	[***]	[***]	[***]	[***]

(1) 제조원가

ㄱ. 원재료비

중국 화학·석유화학·클로리 알칼리(Chlor-Alkali) 시황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표 플랫폼인 OliChem²⁸⁾에서 매일 고시하는 32% 액체 수산화나트륨²⁹⁾의

28) OilChem (隆众资讯)은 2002년에 설립된 중국 기반의 석유·에너지·석유화학 상품 정보 전문 기관으로, 중국 내 정유·석유화학·가스·석탄·비철금속 등 주요 벌크 원자재의 내수가격을 중심으로 한 가격 정보, 수급·재고·수출입 통계 및 가격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기관의 자료는 중국 내 산업계와 시장 참여자들이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대표적인 중국 내수시장 기준 가격(reference price) 출처로서, 중국 국내 가격 수준 및 시장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https://ca.oilchem.net>)

29) 신청인이 수집 가능한 중국내 액체 수산화나트륨 가격 정보는 농도 32%에 관한 것으로, 50%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농축하는 것과 비교하여 원재료비 외 노무비, 제조경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지역별 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일차별 발표되는 최저값과 최고값을 평균하여 이를 기간평균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별첨 29] 중국의 액체 수산화나트륨 내수 가격 공시자료

ㄴ. 노무비

노무비는 주된 공정인 액체 수산화나트륨 농축 공정에 투입되는 인력의 비용으로서, 신청인의 해당 공정 노무비를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국가 간 임금 차이 반영을 위하여 ‘Trading Economics’ 에서 발표한 중국의 연도별 제조업 평균임금(2024년)³⁰⁾과 대한민국의 분기별 제조업 평균임금(2024년)을 연간 수치로 환산한 후 그 차이만큼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간 환율을 적용한 중국의 제조업 평균 임금은 [***]으로, 한국의 제조업 임금 평균 [***]의 [***]%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노무비 단가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중국의 노무비 단가를 산출하였습니다.

ㄷ. 제조경비

농축공정에 투입되는 제조경비 단가는 신청인의 해당 공정 투입 제조경비 단가를 계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만, 제조경비 가운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 경우 국가 간의 물가차이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한국의 [***]하였습니다.

또한, 제조 경비 가운데에 국가별 가격 비교가 가능한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신청인은 ‘Global Petrol Price’ 의 수치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 외 감가상각비 및 기타 제조경비는 국가 간 경제규모를 반영하기 위하여 ‘Trading Economics’ 에서 발표한 2024년도 중국 및 대한민국의 1인당 구매력 GDP 차이비율(한국 대비 약[***]%)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 판매 및 관리비

보수적으로 해당 가격을 제조원가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30) 중국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가장 최근 자료가 2024년 연간 데이터이므로 신청인은 비교의 정확성을 위해 중국의 2024년 연간 노무비 평균과 한국의 2024년 연간 노무비 평균을 비교한 수치를 활용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중국의 조사신청물품의 생산자들의 손익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에 공시된 재무제표는 주요 3개사 외에는 수집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 및 관리비는 수집이 가능한 중국 내 생산자(Befar Group, Shanxi Beiyuan Chemical Group, Xinjiang Zhongtai Chemical)들의 가장 최근에 공시된 재무제표(2024년)의 손익계산서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다만, 비교의 정확성을 위하여 판매 및 관리비 항목 중 운송비가 포함된 판매비 항목은 제외하여 원가 대비 판매 및 관리비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약 [***]%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별첨 30] 중국의 판매비 및 관리비 계산

(3) 적정영업이익

적정영업이익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은 중국의 조사신청물품 생산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다만, 중국내 생산자들의 영업이익률에 편차가 크므로 적정영업이익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국 정부(통계청)가 공표한 가장 최근의 자료인 “통계연감 2024” 가운데에 화학제조업 평균 원가와 영업이익자료를 활용하여 원가 대비 적정영업이익률([***]%)을 계산하였습니다.

[별첨 31] 중국의 화학제조업 평균 원가 대비 영업이익률(통계연감 2024)

(4) 조정요소

상기와 같이 제조원가에 판매 및 관리비,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산정한 구성가격은 그 구성 과정에서 있어 운송비 등 판매비 항목은 포함되지 아니한 바, 순(純)구성가격 산정을 위한 내륙운송비 차감 등은 불요합니다.

나. 덤핑가격 및 조정사항

<덤핑가격 및 산정근거>

(단위: US \$/DMT)

조정전 덤핑가격	조 정 사 항				조정된 덤핑가격
	내륙운송비	수출부대비용 해상운임	미환급증치세	소계	
[***]	[***]	[***]	[***]	[***]	[***]

조정전 덤핑가격은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조정전 덤핑가격은 CIF 조건 기준이므로 덤핑률 산정을 위해서는 내륙 운반비, 해상운임, 부두발생비용 등의 수출부대비용이 조정되어야 하는 바, 신청인은 수출내륙운송비의 경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내수판매를 위한 철도 운임에 관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여 톤당 단가를 산출하였습니다.

[별첨 32] 중국의 수출 내륙운송비 계산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및 수출부대비용은 포워딩 업체에서 제공한 견적을 바탕으로 중국 내 생산자들이 가장 근접한 [***] 항구인 [***] 및 [***]에서 대한민국의 항구까지의 해상운임 및 수출부대비용 견적을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견적 가운데에 [***]하였습니다. 더불어 해상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고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어 해당 부분은 조정사항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별첨 33] 중국의 수출부대비용 및 해상운임 계산 상세

또한 조사신청물품을 내수에 판매하는 경우와 수출하는 경우의 매입증치세 환급률 차이를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서 2025년 6월 사이에 조사신청 물품에 대한 증치세율은 13%로, 내수판매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수출하

는 경우에 적용 받는 증치세환급률(퇴세율)은 0%이었으므로, 내수-수출 간 퇴세율 차이인 13%를 덤핑가격의 조정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덤핑률 산정>

(단위: US \$/DMT)

조정된 정상가격(a)	조정된 덤핑가격(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	[***]	[***]	[***]	20.03%

[별첨 34] 중국의 조사신청물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 자료

2. 조사신청물품 수입량의 누적적 평가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 등 사실을 조사 판정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미소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2)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전체 수입량 대비 중국 및 대만산 조사신청물품 비중은 각각 57.6% 및 33.7%를 차지하고 있는 바(해당 수입물품의 누적 비중은 전체 수입물량의 91.3% 임), 이들 국가 및 관세영역으로부터의 조사신청물품 수입량은 미소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조사신청물품의 평균 재판매가격은 [***]천원/DMT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생산품 평균가격 [***]천원/DMT 대비 [***]% 이상 저가로 판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관세영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신청 물품이 되고, 덤핑률 및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이 미소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사신청물품 간 및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 간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조사신청물품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덤핑률, 수입비중 및 가격비교 >

구 분	덤핑률(%)	수입물량비중(%) (2025년 상반기)	가격경쟁	
			수입가격 (천원/DMT)	재판매가격 (천원/DMT)
○ 조사신청물품(평균)	-	91.3%	[***]	[***]
- 중국산	20.03%	57.6%	[***]	[***]
- 대만산	34.32%	33.7%	[***]	[***]
○ 기타국 수입품	-	8.7%	[***]	[***]
○ 국내생산품	-	-		[***]

주) ① 수입가격은 CIF 수입가격임

② 재판매가격 = 수입가격 × 환율 × (1+관세율) + 통관비용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 한국은행 환율 자료, 신청인 내부자료

[별첨 35] 국내수입 통관비용 산정근거

3.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증빙

가. 수입

<물 량>

국내소비 물량은 2022년 [***]톤에서 2023년 [***]톤으로 4.7% 감소하였다가, 2024년에는 [***]톤으로 9.6%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하였으나, 국내 수요 자체는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수요 환경에도 불구하고, 조사신청물품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내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2022년 [***]톤에서 2023년 [***]톤으로 전년 대비 32.2%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톤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8%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출하량은 2022년 [***]톤 출하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3년 국내출하량은 [***] 톤으로 전년 대비 20.3%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 톤으로 0.9%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0.6% 감소하였습니다.

상대적물량 지표인 점유율을 보면 조사신청물품은 2022년 [***]%, 2022년 [***]%, 2024년 [***]%, 2025년 상반기는 [***]%로 전년동기 대비 3.6%p 증가하였고 2022년 대비 2025년 상반기까지 [***]%p 한국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생산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22년 [***]%, 2023년 [***]%, 2024년 [***]%에서, 2025년 상반기 [***]%로 전년동기 대비 6.4%p 급락하였고 2022년 대비 2025년 상반기까지 [***]%p 한국시장에서 점유율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조사신청물품 수입 증가와 국내산업의 생산 및 판매 감소 간에 명확한

대체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입물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시장이 직접적으로 잠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내산업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가격 인하 등 대응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타국 수입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타국 수입물량은 2022년 [***] 톤에서 2024년 [***] 톤으로 증가하였으나, 국내소비 대비 시장점유율은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상반기 [***]%에 불과하여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기타국 수입의 증감은 국내생산 감소나 시장점유율 하락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국내산업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국내산업의 출하량 및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그리고 조사신청물품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 감소,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는 조사신청물품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기타국 수입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조사신청물품 국내소비 현황>

(단위: DMT, 백만원)

구분	년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4 년 상반기	2025 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a=b+e)	물량	1,000	953	-4.7%	1,044	9.6%	1,000	899	-10.1%	
	금액	1,000	941	-5.9%	1,000	6.3%	1,000	1,015	1.5%	
총수입 (b=c+d)	물량	1,000	1,316	31.6%	1,603	21.8%	1,000	1,025	2.5%	
	금액	1,000	1,079	7.9%	1,243	15.2%	1,000	1,259	25.9%	
조사신청 물품수입 (c)	물량	1,000	1,322	32.2%	1,612	21.9%	1,000	972	-2.8%	
	금액	1,000	1,185	18.5%	1,325	11.8%	1,000	1,122	12.2%	
중국	물량	1,000	1,914	91.4%	3,403	77.8%	1,000	805	-19.5%	
			금액	1,585	58.5%	2,660	67.8%	1,000	940	-6.0%
	대만	물량	1,000	1,014	1.4%	679	-33.0%	1,000	1,504	50.4%
				금액	968	-3.2%	600	-38.0%	1,000	1,676
기타수입 (d)	물량	1,000	1,201	20.1%	1,436	19.6%	1,000	2,363	136.3%	
	금액	1,000	867	-13.3%	1,079	24.5%	1,000	1,613	61.3%	
국내생산품 출하 (e)	물량	1,000	797	-20.3%	804	0.9%	1,000	794	-20.6%	
	금액	1,000	864	-13.6%	865	0.1%	1,000	831	-16.9%	
국내 소비 점유율	조사신청물품 수입 (c/a)	[***]%	[***]%	11.1%p	[***]%	4.4%p	[***]%	[***]%	3.6%p	
	기타수입 (d/ a)	[***]%	[***]%	0.4%p	[***]%	0.2%p	[***]%	[***]%	2.8%p	
	국내생산품 출하 (e/a)	[***]%	[***]%	-11.4%p	[***]%	-4.6%p	[***]%	[***]%	-6.4%p	

자료원: 한국 관세청 수입통계 (한국무역협회 KITA 통계), 무역통계진흥원 자료 및 신청인 내부자료

<가 격>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은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전 기간 동안 국내생산품 평균판매가격보다 일관되게 낮게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가격 열위가 수입산의 국내시장 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조사신청물품의 평균 수입가격(CIF 기준)은 2022년 톤당 [***]달러에서 2023년 [***]달러로 11.3% 하락하였고, 2024년에는 [***]달러로 추가 12.2% 하락하는 등 지속적인 가격 인하 추세를 보였습니다.

원화 재판매가격을 보더라도 수입산의 저가 구조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조사신청물품의 연도별로 보면, 조사신청물품의 원화재판매가격은 2022년 톤당 [***]천원에서 2023년 [***]천원으로 10.8% 하락하였고, 2024년에는 [***]천원으로 추가적으로 9.3% 하락하는 등 지속적인 가격 인하 추세를 보여 국내산 제품 대비 명확한 가격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생산품 가격은 같은 기간 큰 폭의 하락 없이 유지되고 있어,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 제품 간 가격 격차가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사신청물품의 평균 수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9.1%)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화 재판매가격 역시 상승(15.9%)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제품과의 가격 격차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수준 자체보다도 저가 구조가 고착화되어 국내시장 가격 형성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기타국 수입은 가격 측면에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국 재판매가격은 2022년 [***]천원에서 2023년 [***]천원으로 하락한 이후, 2024년 [***]천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다시 [***]천원으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타국

수입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가격 수준 역시 조사신청물품 대비 매우 높아 시장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국내산업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조사신청물품은 국내산과 품질·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와 재판매가격 모두에서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입물량의 급증이 결합되면서 국내 시장가격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을 포함한 국내생산자는 판매단가 인하 압력과 판매량 감소, 마진 축소라는 복합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국내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경쟁 환경을 왜곡하고 국내 생산기반의 유지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실질적인 경영상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타국 수입은 가격 및 물량 측면 모두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므로, 국내산업의 가격 하락 및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은 조사신청물품 수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신청물품 수입가격>

(단위: DMT, 천US\$, US\$/DMT, 천원/DMT)

구분	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2025년	
				증감률		증감률	상반기		상반기
중국	수입 물량 (톤)	1,000	1,914	91.4%	3,403	77.8%	1,000	805	-19.5%
	수입금액 (천 US\$)	1,000	1,569	56.9%	2,520	60.6%	1,000	888	-11.2%
	평균 수입 가격 (CIF US\$/톤)	1,000	820	-18.0%	740	-9.7%	1,000	1,103	10.3%
	원화 재판매 가격 (천원/톤)	1,000	831	-16.9%	785	-5.5%	1,000	1,165	16.5%
대만	수입 물량 (톤)	1,000	1,014	1.4%	679	-33.0%	1,000	1,504	50.4%
	수입금액 (천 US\$)	1,000	958	-4.2%	568	-40.7%	1,000	1,584	58.4%
	평균 수입 가격 (CIF US\$/톤)	1,000	944	-5.6%	836	-11.4%	1,000	1,053	5.3%
	원화 재판매 가격 (천원/톤)	1,000	954	-4.6%	884	-7.3%	1,000	1,112	11.2%
조사 신청 물품 소계	수입 물량 (톤)	1,000	1,322	32.2%	1,612	21.9%	1,000	972	-2.8%
	수입금액 (천 US\$)	1,000	1,173	17.3%	1,255	7.0%	1,000	1,061	6.1%
	평균 수입 가격 (CIF US\$/톤)	1,000	887	-11.3%	779	-12.2%	1,000	1,091	9.1%
	원화 재판매 가격 (천원/톤)	1,000	892	-10.8%	809	-9.3%	1,000	1,159	15.9%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천원)		1,000	722	-27.8%	752	4.2%	1,000	683	-31.7%
국내생산품 평균가격 (천원)		1,000	1,084	8.4%	1,075	-0.8%	1,000	1,047	4.7%

자료원: 한국 관세청 수입통계 (한국무역협회 KITA 통계), 무역통계진흥원 자료 및 신청인 내부자료

나. 생산

국내 생산업체의 연간 생산능력은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톤 수준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설비 자체는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대만산 조사신청물품의 저가 수입 확대에 의해 설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은 점차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생산량은 2022년 [***]톤에서 2023년 [***]톤으로 23.4% 급감한 후, 2024년에도 [***]톤으로 겨우 1.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5년 상반기 생산량은 [***]톤으로 전년 동기 [***]톤 대비 17.2% 추가 감소하였으며, 이를 연환산하면 약 [***]톤 수준으로 2022년 대비 35% 이상 축소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조사신청물품 수입량은 [***]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급증하고 있어, 내수 수요가 점차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동률 역시 이러한 생산 위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2022년 [***]%였던 가동률은 2023년 [***]%로 11.1%p 급락한 뒤, 2024년에도 [***]%에 머물러 설비의 절반 이상이 유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가동률은 [***]%로 전년 동기 [***]% 대비 6.4%p 추가 하락하여, 상시 가동이 필요한 화학 설비에서 사실상 [***]%대 수준만 조업이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비능력은 유지되고 있음에도 생산량과 가동률이 장기간 [***]% 이하, 최근에는 [***]%대까지 떨어진 것은, 중국 및 대만산 조사신청물품의 저가·대량 수입으로 국내 제품의 판매가 위축되고 조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내몰렸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정비 부담 증가와 채산성 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설비 폐쇄·투자 축소·고용 감소로 이어져 국내 생산기반 유지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피해로 평가됩니다.

<생산현황>

(단위: DMT)

구분	년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4 년 상반기	2025 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1,000	1,000	0.0%	1,000	0.0%	1,000	1,000	0.0%	
생 산 량(b)		1,000	766	-23.4%	779	1.7%	1,000	828	-17.2%	
가동률(b/a)		[***]%	[***]%	-11.1%p	[***]%	0.6%p	[***]%	[***]%	-6.4%p	

자료원: 신청인 내부자료

[별첨 36] 생산능력 산정 근거

다. 판매

조사기간 동안 신청인의 판매 실적은 총출하, 국내출하, 수출 모든 측면에서 뚜렷한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 및 대만산 저가 수입 확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출하 물량은 2022년 [***]톤에서 2023년 [***]톤으로 20.5% 급감한 뒤, 2024년 [***]톤으로 1.1% 소폭 회복하는 데 그쳤고, 2025년 상반기에는 [***]톤으로 전년 동기([***]톤) 대비 20.4% 또다시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총출하 금액도 2022년 [***]백만 원에서 2023년 [***]백만 원(-13.9%), 2024년 [***]백만 원(0.3% 증가)에 이어 2025년 상반기에는 [***]백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하여, 물량과 단가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출하 실적을 보면 내수 기반이 얼마나 빠르게 잠식되고 있는지 더욱 분명합니다. 국내출하 물량은 2022년 [***]톤에서 2023년 [***]톤으로 20.3% 감소한 뒤, 2024년 [***]톤(0.9% 증가)에 그쳤고, 2025년 상반기에는 [***]톤으로 전년 동기 [***]톤 대비 20.6% 감소했습니다. 국내출하 금액 또한 2022년 [***]백만 원에서 2023년 [***]백만 원(-13.6%)으로 줄어든 후, 2024년 [***]백만 원(0.1% 증가)에 머물렀고 2025년 상반기에는 [***]백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해, 내수시장에서의 판매 기반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출 역시 안정적인 보완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은 2022년 [***]톤에서 2023년 [***]톤(-82.2%)으로 급감한 뒤, 2024년 [***]톤으로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톤으로 전년 동기 [***]톤 대비 증가하였지만 내수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수출 단가가 2022년 [***]천원에서 2024년 [***]천원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해외시장에서도 가격경쟁 압력이 존재해 국내업체가 적극적으로 물량을 확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조사신청물품은 낮은 수입단가와 재판매가격, 그리고 빠르게 증가한 수입물량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에서 가격 기준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신청인의 국내출하량과 매출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총출하 감소, 내수 판매 급락, 수출의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 상황은, 저가 수입품이 단순한 경쟁 수준을 넘어 신청인의 매출 기반과 수익구조를 구조적으로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량적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판매현황>

(단위 : DMT, 백만원, 천원/DMT, %)

구분	년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4 년	2025 년	
				증감률		증감률	상반기		상반기
총출하 (a=b+c+d+e)	물량	1,000	795	-20.5%	804	1.1%	1,000	796	-20.4%
	금액	1,000	861	-13.9%	864	0.3%	1,000	834	-16.6%
	단가	1,000	1,083	8.3%	1,074	-0.8%	1,000	1,047	4.7%
국내출하(b)	물량	1,000	797	-20.3%	804	0.9%	1,000	794	-20.6%
	금액	1,000	864	-13.6%	865	0.1%	1,000	831	-16.9%
	단가	1,000	1,084	8.4%	1,075	-0.8%	1,000	1,047	4.7%
수출(c)	물량	1,000	178	-82.2%	712	300.0%	1,000	1,667	66.7%
	금액	1,000	155	-84.5%	629	305.9%	1,000	1,732	73.2%
	단가	1,000	869	-13.1%	882	1.5%	1,000	1,039	3.9%
자가소비(d)	물량	1,000	1,000	0.0%	1,000	0.0%	1,000	1,000	0.0%
	금액	1,000	1,000	0.0%	1,000	0.0%	1,000	1,000	0.0%
	단가	1,000	1,000	0.0%	1,000	0.0%	1,000	1,000	0.0%

자료원: 신청인 내부자료

라. 재고

신청인의 재고는 조사 초기에는 축소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빠르게 누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에 따르면 총출하량은 2022년 [***]톤에서 2023년 [***]톤으로 20.5% 급감한 뒤, 2024년 [***]톤으로 1.1%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2025년 상반기에는 [***]톤으로 전년 동기[(***톤)] 대비 20.4%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재고는 2022년 [***]톤에서 2023년 [***]톤(-30.2%), 2024년 [***]톤(-26.3%)까지 줄어들었다가, 2025년 상반기에는 [***]톤으로 전년 동기[(***톤)] 대비 29.0% 급증하여, 최근 들어 생산·출하 대비 재고가 다시 빠르게 쌓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고율(재고/총출하 비율)을 보면 이러한 흐름이 더욱 명확합니다. 재고율은 2022년 [***]%에서 2023년 [***]%로 약[***]%p 하락하며, 조사신청물품 유입 초기에는 신청인이 가격 인하 및 판촉을 통해 재고를 적극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재고율이 [***]%로 하락 폭이 둔화된 데 이어, 2025년 상반기에는 [***]%로 전년 동기[(***%)] 대비 3.5%p 급등하여, 판매되지 못한 물량이 다시 창고에 머물고 있는 구조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재고율 반전은 조사신청물품의 저가 대량 유입으로 인해 국내생산품의 판매가 부진해지고, 생산된 물량이 제때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앞서 본 것처럼 중국 및 대만산 수입물량이 크게 늘고 국내 출하량이 동반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고까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은, 신청인이 가격을 추가로 인하하거나 생산을 감축하지 않는 한 재고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재고 확대는 단순히 일시적인 재고조정 수준을 넘어, 보관·운전자금 비용 증가와 함께 향후 조업단축·라인 가동 중단 등 생산조정 압박으로 직결됩니다. 이는 신청인의 손익구조와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고, 설비 유지·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중장기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조사신청

물품의 수입 확대는 국내판매 감소뿐 아니라 재고 누적을 통해 신청인의 경영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산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량적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재고현황>

(단위: DMT)

구분	년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4 년 상반기	2025 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a)		1,000	795	-20.5%	804	1.1%	1,000	796	-20.4%	
재고(b)		1,000	699	-30.1%	515	-26.3%	1,000	1,291	29.1%	
재고율(b/a)		[***]%	[***]%	-0.5%p	[***]%	-0.9%p	[***]%	[***]%	3.5%p	

자료원: 신청인 내부자료

마. 손익

조사신청 대상기간 동안 국내 생산자의 손익구조는 매출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심각한 경영 압박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매출액은 2022년 [***]백만원에서 2024년 [***]백만원으로 2023년에는 -13.6%로 큰 폭의 하락, 2024년에는 0.1%로 거의 변동이 없는 양상을 보였으며, 2년간 13.5%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수입품 시장 확대 등으로 인한 국내 점유율 약화와 판매 기반의 불안정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매출원가 역시 2022년 [***]백만원에서 2024년 [***]백만원으로 감소했으나, 매출 하락에 비해 둔화된 조정폭으로 인해 매출총이익의 개선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실제로 매출총이익은 2022년 [***]백만원에서 2023년 [***]백만원, 2024년 [***]백만원으로 나타나, 2023년 -24.3%라는 급감세를 보였고 2024년에는 21.3%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가 절감의 일시적 효과일 뿐, 시장 전체적인 회복세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2022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2024년 [***]백만원으로 집계돼 2023년에 -62.4%의 급락, 2024년에는 52.0% 증가세를 보였지만, 수년간 단가 하락 및 수요 약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는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22년 [***]%, 2023년 [***]%, 2024년 [***]%,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2025년 상반기에는 [***]% 라는 이익률을 보이며 정상적인 이익 구조를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손익구조의 불균형과 수익성 악화는 수입품 유입 확대에 의한 단가 하락과 국내시장 내 대체 소비, 그리고 고정비 부담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이 단순한 매출 둔화를 넘어 뚜렷한 경영 피해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4 년	2025 년
				증감률		증감률	상반기	상반기	증감률
매출액 (a)		1,000	864	-13.6%	865	0.1%	1,000	831	-16.9%
매출원가 (b)		1,000	886	-11.4%	853	-3.7%	1,000	873	-12.7%
매출총이익(c = a - b)		1,000	757	-24.3%	918	21.3%	1,000	645	-35.5%
판매비와관리비 (d)		1,000	1,077	7.7%	1,208	12.2%	1,000	853	-14.7%
영업이익 (e = c - d)		1,000	376	-62.4%	572	52.0%	1,000	144	-85.6%
영업이익률 (f = e / a)		[***]%	[***]%	-4.5%p	[***]%	1.8%p	[***]%	[***]%	-4.5%p

자료원 : 신청인 내부자료

마. 제조원가

국내산업은 조사신청물품과의 경쟁 속에서 원가 급등과 판매가격 억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원가-가격 압박(Cost-Price Squeeze)’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표에 따르면 제조원가는 2022년 톤당 [***]천원에서 2023년 [***]천원으로 11.2% 상승한 뒤 2024년에도 [***]천원 수준을 유지하였고, 2025년 상반기에는 [***]천원으로 다시 10.0% 급등하여 원가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재료비는 2022년 [***]천원에서 2023년 [***]천원(+8.7%)으로 상승한 후 2024년에도 [***]천원, 2025년 상반기 [***]천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무비와 경비 역시 2022~2025년 상반기 동안 각각 [***]→[***]천원(+50.0%), [***]→[***]천원(+10.4%)으로 인상되어 제조원가 전반이 상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 상승에는 조사신청물품과의 가격 경쟁을 의식한 국내 업체의 생산 효율화 한계가 겹치면서, 단위당 제조원가가 구조적으로 높게 고착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품 평균판매가격은 조사신청물품과의 경쟁 때문에 원가 상승 폭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판매가격은 2022년 [***]천원에서 2023년 [***]천원(+8.4%)으로 일부 인상되었으나, 2024년 [***]천원(-0.8%)으로 되레 하락했고, 2025년 상반기에도 [***]천원(+4.7%) 수준에 그쳐 제조원가 상승률(2022→2025년 상반기 16.6%)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조정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은 2022~2025년 상반기 동안 [***]~[***]천원 수준에서 형성되어 국내산보다 약 [***]~[***]% 이상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신청인은 원가-이윤을 반영한 정상가격 대신 수입산 가격에 맞춘 ‘방어적 가격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원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을 충분히 전가하지 못해 단위당 마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고정비 부담과 재무적 여력이 악화되면서 설비투자·연구개발 등 장기 경쟁력 확보 활동도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니다. 결국 조사신청물품의 지속적인 저가 유입이 국내 가격 수준을 압박함으로써, 신청인은 원가 상승과 가격 억제를 동시에 겪는 이중고에 처해 있으며, 이는 국내산업의 수익성 훼손과 경영 안정성 약화라는 실질적 피해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단위당 제조원가>

(단위: 천원/DMT)

구분	년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4 년 상반기	2025 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료비(a)		1,000	1,087	8.7%	1,051	-3.3%	1,000	1,086	8.6%	
노무비(b)		1,000	1,288	28.8%	1,288	0.0%	1,000	1,165	16.5%	
경 비(c)		1,000	1,115	11.5%	996	-10.7%	1,000	1,110	11.0%	
제조원가 (d=a+b+c)		1,000	1,112	11.2%	1,061	-4.6%	1,000	1,100	10.0%	
국산품공장도판매가격		1,000	1,084	8.4%	1,075	-0.8%	1,000	1,047	4.7%	

자료원: 신청인 내부자료

사.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 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고, 2023년에는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체 수산화나트륨으로 변환하기 위한 [***]을 추진하며 2022년 대비 305.4%의 설비투자 증가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023년에 투자하였던 [***]이 있어 2023년 대비 또 큰 폭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또한 신청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지만 조사신청물품의 공격적 수입으로 인해 이에 대한 투자가 판매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설비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설비투자	1,000	4,054	305.4%	9,413	132.2%	1,000	0	-100.0%
연구개발	1,000	1,388	38.8%	1,122	-19.2%	1,000	1,243	24.3%

자료원: 신청인 내부자료

아. 주요 원자재 가격³¹⁾

주요 원자재 가격은 2022년 톤당 [***]천원에서 2023년 [***]천원으로 8.8% 상승한 뒤, 2024년 [***]천원(-3.9%)으로 소폭 조정되었다가 2025년 상반기에는 [***]천원으로 다시 8.7%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생산품 가격은 2022년 [***]천원에서 2023년 [***]천원으로 8.4% 상승했으나, 2024년에는 [***]천원(-0.8%)으로 오히려 하락했고 2025년 상반기에도 [***]천원(+4.7%) 인상에 그쳐, 원자재 가격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적인 조정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조사신청물품의 지속적인 저가 공세와 직결됩니다. 각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은 2022~2025년 상반기 동안 대체로 [***]~[***]천원 수준에 형성되어 국내생산품 평균가격([***]~[***]천원)을 [***]~[***]% 이상 하회하고 있어, 조사신청물품이 시장가격의 하한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조사신청물품과의 가격 격차를 의식해 판매단가 인상을 자제하거나, 2024년과 같이 오히려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그만큼 원가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면서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이후 이어진 주요 원자재 가격과 국내생산품 가격 간의 구조적인 격차는, 조사신청물품의 저가 수입이 국내산업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마진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는 정량적 증거입니다. 이러한 원가-가격 압박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신청인의 이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생산기반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피해로 평가됩니다.

31) 신청인의 국내동종물품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는 [***]입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

(단위: 원/DMT, %)

구분	년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4 년	2025 년
				증감률		증감률	상반기	상반기	증감률
주요원자재 가격 ([***])		<u>1,000</u>	<u>1,088</u>	8.8%	<u>1,046</u>	-3.9%	<u>1,000</u>	<u>1,087</u>	8.7%
국내생산품 가격		<u>1,000</u>	<u>1,084</u>	8.4%	<u>1,075</u>	-0.8%	<u>1,000</u>	<u>1,047</u>	4.7%

자료원: 신청인 내부자료

4. 국내산업의 피해우려에 관한 증빙

가. 조사신청물품의 대한국 수입의 현저한 증가율

조사신청물품의 대한국 수입은 과거의 일시적 조정을 지나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이와 같은 추세가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2022년 [***]톤에서 2023년 [***]톤으로 32.2%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톤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은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증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조사신청물품의 평균 수입가격(CIF 기준)은 2022년 톤당 [***]달러에서 2023년 [***]달러로 11.3% 하락하였고, 2024년에는 [***]달러로 추가 하락(-12.2%)하여 전반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9.1%)하였으나, 여전히 이전 연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 기준 재판매가격 역시 2022년 톤당 [***]천원에서 2023년 [***]천원으로 10.8% 하락하였으며, 2024년에는 [***]천원으로 추가 하락(-9.3%)하는 등 가격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사신청물품은 수입물량이 확대되는 동시에 가격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저가 수입을 기반으로 국내시장 내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사신청물품의 대한민국 수입의 현저한 증가율>

(단위: DMT, 천US\$, US\$/DMT, 천원/DMT)

구분	년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4 년 상반기	2025 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중국	수입 물량 (톤)	1,000	1,914	91.4%	3,403	77.8%	1,000	805	-19.5%
	수입금액 (천 US\$)	1,000	1,569	56.9%	2,520	60.6%	1,000	888	-11.2%
	평균 수입 가격 (CIF US\$/톤)	1,000	820	-18.0%	740	-9.7%	1,000	1,103	10.3%
	원화 재판매 가격 (천원/톤)	1,000	831	-16.9%	785	-5.5%	1,000	1,165	16.5%
대만	수입 물량 (톤)	1,000	1,014	1.4%	679	-33.0%	1,000	1,504	50.4%
	수입금액 (천 US\$)	1,000	958	-4.2%	568	-40.7%	1,000	1,584	58.4%
	평균 수입 가격 (CIF US\$/톤)	1,000	944	-5.6%	836	-11.4%	1,000	1,053	5.3%
	원화 재판매 가격 (천원/톤)	1,000	954	-4.6%	884	-7.3%	1,000	1,112	11.2%
조사 신청 물품 소계	수입 물량 (톤)	1,000	1,322	32.2%	1,612	21.9%	1,000	972	-2.8%
	수입금액 (천 US\$)	1,000	1,173	17.3%	1,255	7.0%	1,000	1,061	6.1%
	평균 수입 가격 (CIF US\$/톤)	1,000	887	-11.3%	779	-12.2%	1,000	1,091	9.1%
	원화 재판매 가격 (천원/톤)	1,000	892	-10.8%	809	-9.3%	1,000	1,159	15.9%

자료원: 한국 관세청 수입통계 (한국무역협회 KITA 통계), 무역통계진흥원 자료 및 신청인 내부자료

나. 조사신청물품 공급국 생산 및 수출여력

표에 따르면, 조사신청물품 공급국의 고체 수산화나트륨 생산능력은 2022~2025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실제 생산량은 정체·감소 양상을 보여, 구조적인 과잉설비와 유휴능력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 [***]천톤이었던 생산능력이 2023년 [***]천톤, 2024·2025년 [***]천톤으로 소폭 증가·유지되는 가운데, 생산량은 2022년 [***]천톤에서 2023년 [***]천톤, 2024년 [***]천톤, 2025년 [***]천톤 수준에 그쳐 가동률이 [***%]로 [***%]대 후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만의 연간 생산능력은 2022~2025년 내내 [***]천톤으로 변동이 없으며, 생산량 또한 2022년 [***]천톤에서 2023년 [***]천톤(-1.0%), 2024년 [***]천톤(+0.3%)으로 소폭 증감하였고 가동률은 [***%]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2025년에도 [***]천톤(가동률 [***%])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유휴 설비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매년 약 [***]천톤, 대만은 약 [***]천톤 내외의 잉여 생산능력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셈으로, 이는 신청인 국내 연간 수요(약 [***]천톤 수준)를 여러 배 상회하는 잠재적 수출 여력입니다.

내수만으로는 설비를 충분히 가동하기 어려운 이러한 공급 구조 아래에서, 중국 및 대만의 고체 수산화나트륨 생산업체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시장에 가격 인하를 수반한 수출 확대를 시도할 유인을 구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 가동률이 [***]에서 [***]으로 하락한 반면 설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유휴능력을 해소하기 위한 공격적인 수출 전략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역시 수백만 톤대의 잉여능력을 바탕으로 저가 물량 공세를 언제든지 강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조사신청물품 공급국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1) 유지·증설되는 높은 생산능력, (2) [***]에 그치는 가동률, (3) 국내 연간 수요를 크게 초과

하는 대규모 유희 설비, (4) 한국과의 지리적·물류적 근접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구조적인 덤핑 수출 유인을 가진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과잉공급과 유희능력은 신청인 제품의 판매기회 축소와 가격 인하 압력으로 직결되며, 국내 생산자의 수익성과 시장 기반을 실질적으로 침식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대만의 생산능력 및 수급현황>

(단위: 천DMT)

공급국 또는 분리관세영역	년도 구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예상)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중국	생산능력	1,000	1,011	1.1%	1,016	0.5%	1,016	0.0%
	생산량	1,000	1,027	2.7%	1,026	-0.1%	1,021	-0.5%
	가동률	[***]%	[***]%	1.1%p	[***]%	-0.4%p	[***]%	-0.3%p
대만	생산능력	1,000	1,000	0.0%	1,000	0.0%	1,000	0.0%
	생산량	1,000	990	-1.0%	993	0.3%	897	-9.7%
	가동률	[***]%	[***]%	-0.9%p	[***]%	0.3%p	[***]%	-8.5%p
합계	생산능력	1,000	1,011	1.1%	1,016	0.5%	1,016	0.0%
	생산량	1,000	1,026	2.6%	1,025	-0.1%	1,018	-0.7%
	가동률	[***]%	[***]%	1.0%p	[***]%	-0.4%p	[***]%	-0.5%p

자료원: 신청인 내부자료

[별첨 37] 중국 및 대만의 생산능력 및 수급현황 증빙

다. 조사신청물품의 한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은 조사기간 전반에 걸쳐 국내생산품 평균판매가격보다 일관되게 낮게 형성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수입품의 구조적 가격우위가 공고화되면서 신청인의 수익기반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생산품의 평균판매가격은 2022년 톤당 [***]천원에서 2023년 [***]천원으로 8.4% 상승하였으나, 2024년에는 [***]천원으로 소폭 하락(-0.8%)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상반기에는 [***]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하였으나, 이는 원재료비 상승 등 비용 증가 요인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반면, 조사신청물품의 평균 수입가격(CIF 기준)은 2022년 톤당 [***]달러에서 2023년 [***]달러로 11.3% 하락하였고, 2024년에는 [***]달러로 추가 하락(-12.2%)하는 등 지속적인 가격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달러로 상승(9.1%)하였으나, 여전히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신청물품의 원화 기준 재판매가격 역시 2022년 [***]천원에서 2023년 [***]천원으로 10.8% 하락하였고, 2024년에는 [***]천원으로 추가 하락(-9.3%)하여 저가 판매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천원으로 상승(15.9%)하였으나, 여전히 국산품 가격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신청물품의 가격은 일정한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산품과의 가격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조사신청물품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가격 차이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잠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산업은 이러한 저가 수입품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인하 등 수익성을 희생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일정 기간 가격 격차가 일부 축소되는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이 여전히 국산품 평균판매가격을 하회하고 있어, 국내산업은 원재료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조사신청물품은 국내산과 품질·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내내 수입단가와 재판매가격 모두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국내시장 가격의 기준점을 사실상 하향 조정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거래처 이탈을 막기 위해 판매단가 인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고, 이는 마진 축소와 수익성 악화, 나아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여력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생산기반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

(단위 : US\$/DMT, 천원, %)

구분		년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4 년 상반기	2025 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조사신청물품 평균수입가격 (CIF)			1,000	887	-11.3%	779	-12.2%	1,000	1,091	9.1%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			1,000	892	-10.8%	809	-9.3%	1,000	1,159	15.9%	
원화 재판매가격	중국		1,000	831	-16.9%	785	-5.5%	1,000	1,165	16.5%	
	대만		1,000	954	-4.6%	884	-7.3%	1,000	1,112	11.2%	
국내생산품 평균판매가격			1,000	1,084	8.4%	1,075	-0.8%	1,000	1,047	4.7%	

자료원: 한국 관세청 수입통계 (한국무역협회 KITA 통계), 무역통계진흥원 자료 및 신청인 내부자료

라. 조사신청물품의 재고현황

조사신청물품의 재고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분한 잉여 생산능력 하 가동률 유지가 필요한 바, 대한민국 수출이 가능한 재고 증가는 필연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에 관한 증빙

해당사항 없음. 신청인은 모두 2000년 이전부터 20년 이상 국내동종물품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바, 국내 동종물품 산업은 이미 확립된 산업입니다.

6. 조사신청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과의 인과 관계에 관한 증빙

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조사 기간 동안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 증가는 국내생산품의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시장 상황 변동과 관계없이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국내생산품의 점유율은 하락하며 명백한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소비 물량은 2022년 [***]톤에서 2023년 [***]톤으로 4.7% 감소하였다가, 2024년에는 44,090톤으로 9.6%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하였으나, 국내 수요 자체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요 흐름에도 불구하고,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내생산품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은 2022년 [***]톤에서 2023년 [***]톤으로 크게 증가(32.2%)하였고, 2024년에는 [***]톤으로 추가 증가(21.9%)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소비 대비 시장점유율 역시 2022년 [***]%에서 2023년 [***]%, 2024년 [***]%로 상승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로 확대되는 등 조사신청물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생산품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생산품 출하량은 2022년 [***]톤에서 2023년 [***]톤으로 크게 감소(-20.3%)하였으며, 2024년에도 [***]톤으로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다시 감소(-20.6%)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은 2022년 [***]%에서 2023년 [***]%, 2024년

[***]%, 2025년 상반기 [***]%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조사신청물품 수입 증가와 국내생산품 판매 감소 간에 명확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수요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조사신청물품 수입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국내생산품의 출하량 및 시장점유율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신청물품 수입은 국내생산품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며 판매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총수입 물량이 2022년 [***]톤에서 2024년 [***]톤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조사신청물품 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기타국 수입의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국내생산품 판매 감소가 조사신청물품 수입 증가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의 지속적인 확대는 국내생산품의 판매량 감소 및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산업의 생산 활동 및 경영 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조사신청물품 국내소비 현황>

(단위: DMT, 백만원)

구분	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a=b+e)	물량	1,000	953	-4.7%	1,044	9.6%	1,000	899	-10.1%
	금액	1,000	941	-5.9%	1,000	6.3%	1,000	1,015	1.5%
총수입 (b=c+d)	물량	1,000	1,316	31.6%	1,603	21.8%	1,000	1,025	2.5%
	금액	1,000	1,079	7.9%	1,243	15.2%	1,000	1,259	25.9%
조사신청 물품수입 (c)	물량	1,000	1,322	32.2%	1,612	21.9%	1,000	972	-2.8%
	금액	1,000	1,185	18.5%	1,325	11.8%	1,000	1,122	12.2%
중국	물량	1,000	1,914	91.4%	3,403	77.8%	1,000	805	-19.5%
		1,000	1,585	58.5%	2,660	67.8%	1,000	940	-6.0%
	금액	1,000	1,014	1.4%	679	-33.0%	1,000	1,504	50.4%
		1,000	968	-3.2%	600	-38.0%	1,000	1,676	67.6%
기타수입 (d)	물량	1,000	1,201	20.1%	1,436	19.6%	1,000	2,363	136.3%
	금액	1,000	867	-13.3%	1,079	24.5%	1,000	1,613	61.3%
국내생산품 출하 (e)	물량	1,000	797	-20.3%	804	0.9%	1,000	794	-20.6%
	금액	1,000	864	-13.6%	865	0.1%	1,000	831	-16.9%
국내 소비 점유율	조사신청물품수입 (c/a)	[***]%	[***]%	11.1%p	[***]%	4.4%p	[***]%	[***]%	3.6%p
	기타수입(d/a)	[***]%	[***]%	0.4%p	[***]%	0.2%p	[***]%	[***]%	2.8%p
	국내생산품출하 (e/a)	[***]%	[***]%	-11.4%p	[***]%	-4.6%p	[***]%	[***]%	-6.4%p

자료원: 한국 관세청 수입통계 (한국무역협회 KITA 통계), 무역통계진흥원 자료 및 신청인 내부자료

나.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1)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생산품 대비 저가판매 여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은 조사기간 전반에 걸쳐 국내생산품 평균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이는 국내시장 내 가격 인하 압력과 국내 생산자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사신청물품 평균 재판매가격은 2022년 톤당 [***]천원에서 2023년 [***]천원으로 10.8%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국산품 평균판매가격은 [***]천원에서 [***]천원으로 8.4% 상승하여 양자 간 가격 격차는 구조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양 가격의 차이는 2022년 [***]천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천원으로 371.2% 급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천원으로 다시 29.8% 확대되면서 조사신청물품이 국내산 대비 [***]~[***]%가량 저렴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이 [***]천원, 국내산 평균판매가격이 [***]천원으로 집계되어 [***]천원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어, 수입품의 가격우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패턴임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기타수입국 제품은 2022년 [***]천원에서 2024년 [***]천원으로 가격이 크게 조정되었음에도, 절대 수준이 국내산보다 훨씬 높아 국내 제품과의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국내 생산자와의 가격경쟁이 주로 조사신청물품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기타수입국과의 가격 차이(국산-기타수입국)는 2023년에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다가 2024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등 국내산이 가격상 중간지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합하면, 조사신청물품은 국내산과 품질·용도 면에서 대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저가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자는 판매단가 인하를 강요받고 마진이 축소되는 구조적 불리

함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구조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국내산업의 수익기반과 가격주도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사신청물품의 저가판매가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과 국내생산품 가격 비교>

(단위: 천원/DMT, %)

구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4 년 상반기	2025 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 조사신청물품 평균재판매가격(a)	1,000	892	-10.8%	809	-9.3%	1,000	1,159	15.9%
- 중국산	1,000	831	-16.9%	785	-5.5%	1,000	1,165	16.5%
- 대만산	1,000	954	-4.6%	884	-7.3%	1,000	1,112	11.2%
○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	1,000	722	-27.8%	752	4.2%	1,000	683	-31.7%
○ 국산품 판매가격(b)	1,000	1,084	8.4%	1,075	-0.8%	1,000	1,047	4.7%
○ 차이 (c=a-b)	1,000	4,712	371.2%	6,116	29.8%	1,000	786	-21.4%
- 중국산	1,000	5,362	436.2%	5,984	11.6%	1,000	795	-20.5%
- 대만산	1,000	3,694	269.4%	4,917	33.1%	1,000	846	-15.4%
- 기타수입국	1,000	674	-32.6%	709	5.2%	1,000	619	-38.1%

자료원: 한국 관세청 수입통계 (한국무역협회 KITA 통계), 무역통계진흥원 자료 및 신청인 내부자료

주1) 원화재판매가격=(CIF 수입가격 x (1+관세율+통관제비용)) x 평균환율

주2) 국산품 판매가격 = (신청인 내수매출액 / 내수판매량)

주3) 원화환산 적용 환율 - 한국은행 고시 원/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2)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생산품 가격하락 초래 여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은 조사기간 전반에 걸쳐 국내산 제품 대비 일관되게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이러한 저가 수입품의 지속적인 유입이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의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신청물품 평균 재판매가격은 2022년 톤당 [***]천원에서 2025년 상반기 [***]천원으로 8.4%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산 판매가격은 [***]천원에서 [***]천원으로 오히려 12.4% 상승하는 데 그쳐, 양자 간 가격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산품 판매가격은 2022년 [***]천원에서 2023년 [***]천원으로 8.4% 상승했다가, 2024년에는 [***]천원으로 다시 0.8% 하락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2025년 상반기에는 [***]천원으로 4.7%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조사신청물품 평균 재판매가격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10.8%,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9.3%의 연속적 하락을 기록하여,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 사이의 절대 가격 차이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업체가 원가 부담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한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고, 조사신청물품의 저가공세에 의한 제한적 가격 조정에만 머무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2024년 이후 조사신청물품 가격이 2025년 상반기에 다소 반등하였음에도, 여전히 국내산 대비 약 [***]% 이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저가 수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 가격전략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국내산 제품은 가격 주도권을 상실하고, 조사신청물품의 가격 수준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어, 이는 국내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영위기를 초래하는 중대한 가격효과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내생산품의 가격하락>

(단위: 천원/DMT, %)

구분	년도	2022 년		2023 년		2024 년 상반기	2025 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 조사신청물품 평균재판매가격(a)		1,000	892	-10.8%	809	-9.3%	1,000	1,159	15.9%
- 중국산		1,000	831	-16.9%	785	-5.5%	1,000	1,165	16.5%
- 대만산		1,000	954	-4.6%	884	-7.3%	1,000	1,112	11.2%
○ 국산품 공장도판매가격		1,000	1,084	8.4%	1,075	-0.8%	1,000	1,047	4.7%

자료원: 한국 관세청 수입통계 (한국무역협회 KITA 통계), 무역통계진흥원 자료 및 신청인 내부자료

주1) 원화재판매가격=(CIF 수입가격 x (1+관세율+통관제비용)) x 평균환율

주2) 국산품 판매가격 = (신청인 내수매출액 / 내수판매량)

주3) 원화환산 적용 환율 - 한국은행 고시 원/달러 평균 매매기준율

(3)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생산품 가격억제 여부

조사신청물품의 지속적인 유입은 국내 생산자의 정상가격(목표판매가격) 형성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며, 실제 시장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산 제품은 원가와 적정 이윤을 반영한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어,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표에 따르면 국내생산품 목표판매가격은 2022년 톤당 [***]천원에서 2023년 [***]천원으로 13.7% 상승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천원으로 소폭(-2.7%)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판매가격은 2022년 [***]천원에서 2023년 [***]천원(8.4% 상승)으로 일부 인상되었다가, 2024년에는 [***]천원으로 다시 0.8% 하락하여, 목표가격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 가격 간 차이를 보면, 2023년에는 [***]천원으로 벌어졌고, 2024년에도 [***]천원 수준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목표판매가격이 [***]천원으로 9.7% 추가 상승한 반면, 실제판매가격은 [***]천원(4.7% 상승)에 그쳐 격차가 [***]천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생산자가 수입품과의 가격경쟁을 의식해 목표가격만큼 판매단가를 올리지 못하고, 정상가격 대비 할인된 수준에서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신청물품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자는 원가 상승과 목표가격 인상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사신청물품의 저가공세는 국내 업체의 가격결정권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정상가격 체계를 무력화하여 국내 산업의 수익구조와 투자 여력을 잠식하는 구조적 가격압박 효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내생산품 실제판매가격과 목표판매가격 비교>

(단위: 천원/DMT, %)

구분	년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4 년 상반기	2025 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 국내생산품 목표판매가격(a)		1,000	1,137	13.7%	1,106	-2.7%	1,000	1,097	9.7%	
- 제조원가		1,000	1,112	11.2%	1,061	-4.6%	1,000	1,100	10.0%	
○ 국내생산품 실제판매가격(b)		1,000	1,084	8.4%	1,075	-0.8%	1,000	1,047	4.7%	
○ 차액 (a-b)		1,000	2,000	100.0%	1,164	-41.8%	1,000	2,903	190.3%	

자료원: 신청인 내부자료

다. 조사신청물품 수입으로 인한 수입상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신청물품의 저가 유입은 국내생산품의 가격인상을 구조적으로 억제하여 국내 산업에 상당한 판매수입 상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표에 따르면 국내산 실제판매가격은 2022년 톤당 [***]천원에서 2024년 [***]천원, 2025년 상반기에는 [***]천원으로 제한적으로만 상승한 반면, 정상가격에 기반한 목표판매단가는 같은 기간 [***]천원에서 [***]천원, 2025년 상반기에는 [***]천원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단위당 수입상실은 2023년 [***]천원, 2024년 [***]천원, 2025년 상반기 [***]천원으로 확대·지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단위당 수입상실이 판매수량과 결합되면서, 전체 수입상실금액은 조사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국내 판매량이 [***]톤에 달하는 가운데, 단위당 수입상실이 [***]천원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연간 수입상실금액은 약 [***]천원(약 [***]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2024년에는 판매량이 [***]톤으로 소폭 증가하고 단위당 수입상실이 [***]천원 수준을 유지한 결과, 수입상실금액은 [***]천원(약 [***]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수입상실금액은 [***]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5% 급증해, 조사신청물품 덤핑수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조사신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의 저가로 국내 시장에 지속 유입되면서, 국내 생산자는 원가와 목표마진을 반영한 적정 가격을 적용하지 못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상실은 단순한 이익 감소를 넘어,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여력 축소, 고용 유지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실질적 피해로 평가됩니다.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억제로 인한 수입상실>

(단위: 천원/DMT, %)

구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4 년 상반기	2025 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산품 실제가격(a)	1,000	1,084	8.4%	1,075	-0.8%	1,000	1,047	4.7%
목표판매단가(b)	1,000	1,137	13.7%	1,106	-2.7%	1,000	1,097	9.7%
톤당수입상실 (c = b-a)	1,000	2,000	100.0%	1,164	-41.8%	1,000	2,903	190.3%
판매수량(d)	1,000	797	-20.3%	804	0.9%	1,000	794	-20.6%
수입상실 (e = c×d)	1,000	2,000	100.0%	1,174	-41.3%	1,000	2,305	130.5%

자료원: 신청인 내부자료

주1) 목표판매가격 = (톤당 제조원가 + 톤당 판매관리비) / (1 - 목표영업이익률)

주2) 목표영업이익률: [***]

신청인의 목표판매량은 산업피해가 크게 발생하기 전인 2022년 수준으로 유지되었어야 했으나, 실제 판매량은 2022년 [***]톤에서 2023년 [***]톤으로 20.3% 급감한 이후 2024년에도 [***]톤(0.9% 증가)에 그쳐, 조사신청물품 덤핑수입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매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판매 상실량은 2023년에 [***]톤, 2024년에도 [***]톤 수준으로 계속 발생하여, 신청인의 생산능력과 시장수요를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수요가 수입품으로 대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매 상실은 수입상실액 증가로 직결되었습니다. 톤당 판매단가가 2022년 [***]천원에서 2023년 [***]천원, 2024년 [***]천원으로 형성된 가운데, 판매상실량과 단가를 곱한 수입상실액은 2023년 약 [***]백만원, 2024년에도 [***]백만원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수입상실액은 [***]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 증가해, 덤핑수입이 지속되는 한 신청인의 매출 기반이 더욱 빠르게 잠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컨대, 조사신청물품의 저가·대량 유입으로 인해 신청인은 계획한 수량만큼 국내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상당한 판매상실과 수입상실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국내산업의 영업성과 재무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키는 실질적 피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상실로 인한 수입상실>

(단위: DMT, 천원/DMT, 백만원)

구분	년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4 년 상반기	2025 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목표판매량(a)		1,000	953	-4.7%	1,044	9.6%	1,000	899	-10.1%	
실제판매량(b)		1,000	797	-20.3%	804	0.9%	1,000	794	-20.6%	
판매상실물량 (c = a-b)		1,000	2,000	100.0%	3,080	54.0%	1,000	1,272	27.2%	
판매단가(d)		1,000	1,084	8.4%	1,075	-0.8%	1,000	1,047	4.7%	
수입상실 (e = c×d)		1,000	2,000	100.0%	3,054	52.7%	1,000	1,331	33.1%	

자료원: 신청인 내부자료

주1) [***]

주2) 목표판매가격 = (톤당 제조원가 + 톤당 판매관리비) / (1 - 목표영업이익률)

라. 조사신청물품 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 등에 미친 영향

(1) 조사신청물품 이외의 수입이 국내생산자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은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입니다. 2024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에 불과하며 2025년 상반기에도 [***]%에 불과합니다. 기타국 수입품의 재판매가격은 2024년 기준 국내 동종물품 대비 약 [***]% 더 높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약 [***]% 더 높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조사신청물품 이외의 수입은 국내생산자에게 영향을 주고있지 않으며 현재 국내산업의 피해는 기타국 수입이 아닌 조사신청물품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2) 수요감소 또는 소비행태변화가 있었는지와 그로인해 국내생산자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외국생산자 및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이 있었다면 그 내용 및 이들간의 경쟁이 국내생산자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기술개발로 인해 국내생산자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별첨 목록 >

번호	내용
1	대리인 선임장 (위임장)
2	신청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3	신청인의 주요 연락처
4	신청인 감사보고서
5	공급국 또는 관세영역별 피신청인의 주소 및 연락처
6	조사신청물품 관세분류번호 및 관세율
7	신청인 회사 브로셔
8	주요 수입자의 연락처
9	주요 수요자의 연락처
10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회원사 리스트
11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자료
1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환율 자료
13	한국산업표준 KS M 1403 및 신청인의 물질안전보건자료
1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품질 시험성적서 및 고체수산화나트륨 규격
15	국내생산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에 대한 찬성 의견서
16	신청인의 조사신청물품 공급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다는 확인서
17	코트라 현지가격 조사 의뢰결과
18	대만의 액체 수산화나트륨 내수 가격 (CMA가격)
19	농축 공정의 노무비 계산
20	농축 공정의 연료비 및 기타제조경비 계산
21	산업용 [***] 국가 및 관세영역별 가격 비교
22	산업용 [***] 국가 및 관세영역별 가격 비교
23	국가 및 관세영역별 GDP 기준 환산 비율의 계산 근거
24	대만 및 중국의 판매비 및 관리비 계산

25	대만의 주요 화학업체 원가 대비 영업이익률
26	정상가격(구성가격) 산정 상세 계산내역
27	대만의 수출 내륙운송비 계산
28	대만의 수출부대비용 및 해상운임 계산 상세
29	중국의 액체 수산화나트륨 (32%) 내수가격 공시자료
30	중국의 판매비 및 관리비 계산
31	중국의 화학제조업 평균 원가 대비 영업이익률
32	중국의 수출 내륙운송비 계산
33	중국의 수출부대비용 및 해상운임 계산 상세
34	조사신청물품의 증치세 환급률 자료
35	국내수입 통관비용 산정근거
36	신청인 생산능력 산정근거
37	중국 및 대만의 생산능력 및 수급현황 증빙

비공개정보 목록 및 비공개 사유

페이지	비밀취급 요청정보	법적 근거	내용
6	신청인 국내동종물품 영업이익, 종업원수	②	<p>*비공개 요청항목: 신청인 국내동종물품 영업 이익, 종업원 수</p> <p>본 자료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정보로, 해당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영업과 경쟁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에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13	수입자 현황	③	<p>*비공개 요청항목: 수입자명, 수입량 및 수입량 비중</p> <p>본 자료는 신청인이 영업 과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공표되지 않는 회사의 내부 자료이며, 공개 시 경쟁자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14	수요자 현황	③	<p>*비공개 요청항목: 수요자명, 수요량 및 수요량 비중</p> <p>본 자료는 신청인의 중요한 영업기밀 정보로서, 공개 시 경쟁자에게 신청인의 거래처가 공개되고,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14	국내 생산자	②	<p>*비공개 요청항목: 국내생산자,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및 생산량 비중</p> <p>본 자료는 공표되지 않는 내부 자료로서 회사의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이며, 대외 공개 시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15	국내 수급 현황	②	<p>*비공개 요청항목: 국내 및 해외 수요, 공급 물량 / 국내 및 해외 수요, 공급 금액</p> <p>본 자료 중 국내 및 해외 수요, 공급 자료는 공표되지 않는 회사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경쟁자들이 이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23	품질시험성적서 품질항목	④	<p>*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의 품질시험성적서 품질항목</p> <p>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유료로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또한, 대외 공개 시 제품 경쟁력 침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p>
24~25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 충족 사실	②	<p>*비공개 요청항목: 신청인 및 찬성인의 생산량 비중</p> <p>본 자료는 공표되지 않는 내부 자료로서 회사의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이며, 신청인 및 기타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비중이 공개될 경우 경쟁사가 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26~29	대만산 정상가격 및 산정 근거	④	<p>*비공개 요청항목: 정상가격의 출처, 정상가격 및 산정 근거 내역</p> <p>본 자료는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유료로 제공받은 자료 및 신청인의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자료로서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대외</p>

			공개가 금지되어 있음.
30	대만산 덤핑가격 및 덤핑률 산정 근거	② ④ ⑤	<p>*비공개 요청항목: 덤핑가격 산정근거 출처, 조정 전 덤핑가격, 내륙운송비, 해상운임 및 수출부대비용 조정사항</p> <p>산정근거에 사용된 자료는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유료로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 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또한, 대외 공개 시 제품경쟁력 침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p> <p>조정 전 덤핑가격 또한 신청인이 유료사이트를 기반으로 획득한 자료임으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p>본 자료에 포함된 조정사항에 해당하는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내륙운반비는 협조를 통해 제공받은 외부 자료로서 영업 기밀에 관한 정보이며,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31~33	중국산 정상가격 및 산정 근거	④	<p>*비공개 요청항목: 정상가격의 출처, 정상가격 및 산정 근거 내역</p> <p>본 자료는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유료로 제공받은 자료 및 신청인의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자료로서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대외 공개가 금지되어 있음.</p>
34~35	중국산 덤핑가격 및 덤핑률 산정 근거	② ④ ⑤	<p>*비공개 요청항목: 덤핑가격 산정근거 출처, 조정 전 덤핑가격, 내륙운송비, 해상운임 및 수출부대비용, 미환급증치세 조정사항</p> <p>산정근거에 사용된 자료는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유료로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 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p>음. 또한, 대외 공개 시 제품경쟁력 침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p> <p>또한, 조정 전 덤핑가격 또한 신청인이 유료사이트를 기반으로 획득한 자료임으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p>본 자료에 포함된 조정사항에 해당하는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내륙운반비는 협조를 통해 제공받은 외부 자료로서 영업 기밀에 관한 정보이며,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증치세는 조정 전 덤핑가격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p>36~37</p>	<p>조사신청물품 수입 가격, 재판매가격</p>	<p>② ⑤</p>	<p>*비공개 요청항목: 조사신청물품 수입가격, 재판매가격</p> <p>조사신청물품의 수입 가격 및 재판매가격에는 신청인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자료가 반영되어 있기에 공개가 불가능함.</p>

<p>38~39</p>	<p>국내 소비, 수입, 국내생산품 출하 및 점유율 현황</p>	<p>②</p>	<p>*비공개 요청항목: 국내 소비 물량 및 금액, 수입 물량 및 금액, 국내생산품 출하 물량 및 금액, 국내 소비 점유율</p> <p>본 자료는 공표되지 않는 내부 자료로서 회사의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영업 실적 자료임. 공개 시, 판매 물량 및 국내소비 등 국내산업의 시장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p>수입 데이터는 신청인이 외부 유료사이트로부터 획득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함.</p>
<p>41~43</p>	<p>수입 원화재판매가격 및 국내 동종물품 평균 가격</p>	<p>② ⑤</p>	<p>*비공개 요청항목: 수입품의 재판매가격 및 국내 동종물품의 평균가격</p> <p>수입품의 재판매가격은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유료로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또한, 대외 공개 시 제품경쟁력 침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p> <p>국내 동종물품 평균 가격은 공표되지 않는 내부 자료로서 회사의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영업 실적 및 회계상 자료임.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p>43~44</p>	<p>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p>	<p>②</p>	<p>*비공개 요청항목: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p> <p>신청인의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정보에 대한 근거 자료는 비공개 회계자료로 회사 영업 및 회계 기밀 정보임. 또한, 본 자료를 공개 시 경쟁자는 신청인의 생산규모 및 가동률에</p>

			<p>다른 경험 추정치를 이용하여 고정제조원가 및 변동제조원가를 추정할 수 있어 사업전략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45~46	판매현황	②	<p>*비공개 요청항목: 신청인의 국내출하 물량 및 금액, 수출 물량 및 금액, 총출하 물량 및 금액, 자가소비 및 타계정대체 물량 및 금액</p> <p>신청인의 영업상 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 기밀 정보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 및 국내 전체 시장규모를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공격적 가격정책을 통해 수입물량 확대를 시도할 수 있음.</p>
47~48	재고현황	②	<p>*비공개 요청항목: 신청인의 총출하 물량, 재고 물량 및 재고율</p> <p>신청인의 영업상 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 기밀 정보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영업과 경쟁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49~50	손익현황	②	<p>*비공개 요청항목: 신청인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p> <p>본 자료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정보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영업과 경쟁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시장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51~52	제조원가	① ②	<p>*비공개 요청항목: 신청인의 제조원가</p> <p>본 자료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정보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영업과 경</p>

			<p>쟁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시장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53	설비투자	②	<p>*비공개 요청항목: 신청인의 설비투자 현황, 연구개발 내역</p> <p>본 자료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정보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영업과 경쟁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시장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54~55	주요 원자재가격	① ②	<p>*비공개 요청항목: 주요 원자재의 가격, 국내 생산품 가격</p> <p>본 자료는 공표되지 않는 내부 자료로서 회사의 비밀정보이며, 회사의 제조원가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함.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영업과 경쟁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56~57	조사신청물품 수입 물량, 수입 가격, 재판매가격	② ⑤	<p>*비공개 요청항목: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 수입가격, 재판매가격</p> <p>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에는 신청인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자료가 반영되어 있기에 공개가 불가능하며 수입 가격은 외부 유료사이트로부터 획득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함.</p>
58~59	조사신청물품의 공급국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	④	<p>*비공개 요청항목: 조사신청물품의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p> <p>본 자료는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유료로 제공받은 자료로서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대외공개가 금지되어 있음.</p>

<p>60~61</p>	<p>조사신청물품 수입 가격, 재판매가격,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p>	<p>② ⑤</p>	<p>*비공개 요청항목: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 수입가격, 재판매가격,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p> <p>조사신청물품의 수입 가격 및 재판매가격에는 신청인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자료가 반영되어 있기에 공개가 불가능함.</p>
<p>63~65</p>	<p>국내 소비, 수입, 국내생산품 출하 및 점유율 현황</p>	<p>②</p>	<p>*비공개 요청항목: 국내 소비 물량 및 금액, 수입 물량 및 금액, 국내생산품 출하 물량 및 금액, 국내 소비 점유율</p> <p>본 자료는 공표되지 않는 내부 자료로서 회사의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영업 실적 자료임. 공개 시, 판매 물량 및 국내소비 등 국내산업의 시장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p>수입 데이터는 신청인이 외부 유료 사이트로부터 획득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함.</p>
<p>66~70</p>	<p>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p>	<p>② ⑤</p>	<p>*비공개 요청항목: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p> <p>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에는 신청인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자료가 반영되어 있기에 공개가 불가능함.</p>
<p>71~75</p>	<p>가격 억제로 인한 수입 상실</p>	<p>① ②</p>	<p>*비공개 요청항목: 국내생산품 적정판매가격, 매출원가, 실제판매가격, 판매수량</p> <p>비공개정보인 국내 생산품 실제 판매 가격, 적정 판매가격, 판매수량 및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되었으므로 공개가 불가능함.</p>
	<p><별첨2></p>	<p>⑤</p>	<p>*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 법인 등기부등본</p>

	신청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인 외 기타 이해관계자의 접근 불가능한 정보가 명시되 어 있으므로 비밀취급이 필요함.
	<별첨4> 신청인의 감사보고서	②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2025년 반기 재무제표 2025년 재무정보는 아직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회계자료로써 신청인 외 기타 이해관계자의 접 근 불가능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밀취급 이 필요함.
	<별첨8> 주요 수입자 연락처	③	* 비공개 요청항목 : 주요 수입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에 강화에 따라 무역협회는 수 입자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동 정보 대외 공개 시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별첨9> 주요 수요자 연락처	③	* 비공개 요청항목 : 주요 수요자 연락처 신청인의 고객을 포함하여 내부적으로 파악하 고 있는 영업기밀 자료로서 대외공개 시 경쟁 자에게 신청인의 거래처가 공개되고 신청인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
	<별첨11>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자료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자 료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제공하는 수입통계자 료는 신청인이 유료정보로 획득한 자료로써 대 외공개가 허락되지 않음으로 비밀유지가 필요 함.
	<별첨14> 한국화학융합시 험연구원의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의 품질시험성적 서, 고체수산화나트륨 규격

	<p>품질 시험성적서 및 고체수산화나트륨 규격</p>		<p>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유료로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또한, 대외 공개 시 제품 경쟁력 침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p>
	<p><별첨17> 코트라 현지가격 조사 의뢰결과</p>	<p>④ ⑤</p>	<p>* 비공개 요청항목 : 코트라 현지가격 조사 의뢰결과</p> <p>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p><별첨18> 대만의 액체 수산화나트륨 내수 가격 (CMA가격)</p>	<p>④ ⑤</p>	<p>* 비공개 요청항목 : 대만 CMA 액체 수산화나트륨 내수가격</p> <p>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p><별첨19> 농축 공정의 노무비 계산</p>	<p>④ ⑤</p>	<p>* 비공개 요청항목 : 노무비 계산내역</p> <p>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p><별첨20> 농축 공정의 연료비 및 기타제조경비 계산</p>	<p>④ ⑤</p>	<p>* 비공개 요청항목 : 연료비 및 기타제조경비 계산내역</p> <p>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p><별첨21> 산업용 [***] 국가별 가격 비교</p>	<p>④ ⑤</p>	<p>* 비공개 요청항목 :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내역</p> <p>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p><별첨22> 산업용 [***] 국가별 가격 비교</p>	<p>④ ⑤</p>	<p>* 비공개 요청항목 : 산업용 전력비 가격내역</p> <p>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p><별첨23> 국가별 GDP 기준 환산 비율의 계산 근거</p>	<p>④ ⑤</p>	<p>* 비공개 요청항목 : 국가별 GDP 환산비율</p> <p>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p><별첨24> 대만의 판매비 및 관리비 계산</p>	<p>④ ⑤</p>	<p>* 비공개 요청항목 : 대만 주요 생산자 판매비 및 관리비 비율</p> <p>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p><별첨25> 대만의 주요 화학업체 원가 대비 영업이익률</p>	<p>④ ⑤</p>	<p>* 비공개 요청항목 : 대만 주요생산자 영업이익률</p> <p>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p><별첨26> 정상가격(구성 가격) 산정 상세 계산내역</p>	<p>④ ⑤</p>	<p>* 비공개 요청항목 : 정상가격 산정내역</p> <p>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p><별첨27> 대만의 수출 내륙운송비 계산</p>	<p>④ ⑤</p>	<p>* 비공개 요청항목 : 대만 내륙운송비 계산내역</p> <p>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p>

			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28> 대만의 수출부대비용 및 해상운임 계산 상세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대만 수출부대비용 및 해상운임 계산내역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29> 중국의 액체 수산화나트륨 (32%) 내수가격 공시자료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액체수산화나트륨 내수가격 공시자료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30> 중국의 판매비 및 관리비 계산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주요 생산자 판매비 및 관리비 비율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31> 중국의 화학제조업 평균 원가 대비 영업이익률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화학제조업 영업이익률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32> 중국의 수출 내륙운송비 계산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내륙운송비 계산내역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33>	④	*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수출부대비용 및 해

	<p>중국의 수출부대비용 및 해상운임 계산 상세</p>	<p>⑤</p>	<p>상운임 계산내역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p><별첨34> 조사신청물품의 증치세 환급률 자료</p>	<p>④ ⑤</p>	<p>*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증치세 환급 계산내역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p><별첨35> 국내수입 통관비용 산정근거</p>	<p>④ ⑤</p>	<p>* 비공개 요청항목 : 국내수입 통관비용 계산내역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p><별첨36> 신청인 생산능력 산정근거</p>	<p>② ⑤</p>	<p>*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 생산능력 계산내역 신청인의 생산능력은 공표되지 않은 내부자료가 반영되어 있기에 공개가 불가능함.</p>
	<p><별첨37> 대만 및 중국의 생산능력 및 수급현황 증빙</p>	<p>④ ⑤</p>	<p>* 비공개 요청항목 : 대만 및 중국 생산능력 및 수급현황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 비공개정보 구분 <관세법 시행규칙 제 15조>

① 제조원가
②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 ③ 거래선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조사대상공급자 (Supplier(s) subject to the investigation)

관세영역 (Customs territory)	공급자 (Supplier) ¹⁾	주 소 (Address)
대 만 (Chinese Taipei) ²⁾	Formosa Plastics Corporation	No.201, Dunhua North Road, Songshan District, Taipei City, Taiwan * (우편번호) 10508

1) 명시된 공급자뿐 아니라 조사대상물품의 개발, 생산, 판매, 유통 등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회사)도 본 반덤핑조사의 당사자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만의 WTO 공식 회원명 :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Chinese Taipei)

●무역위원회공고 제2026-7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주식회사 영진

나. 신청일자 : 2026년 3월 17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품명 : 고체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caustic soda) solid)

- 조사범위 :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농도로 농축·가공하여 제조한 백색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으로, NaOH의 화학식을 가진 것

- 관세품목분류 : HSK 2815.11.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화학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지원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 Skyey Impex Limited, 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 Ltd., (대만) Formosa Plastics Corporation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나 관세영역 당국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 또는

관세영역의 신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단, 신청인과 조사대상공급자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22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 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 및 관세영역 당국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해외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와 관할 정부(당국)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및 관세영역의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지원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질의서·공청회 등 조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 결정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 전 화	044-203-5863	044-203-3865
- FAX	044-203-4815	044-203-4813

*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여부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한국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

조사참여 신청서

(구제 23-2026-2호)

조사대상물품	고체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solid)
공급국 및 관세영역	중국 및 대만
조사대상기간	2025. 1. 1. ~ 2025. 12. 31.
신청서 제출기한	2026. 4. 28.(화)
담당 조사관	이선덕 (Lee Seon-deok)
- 전화	82-44-203-3865
- 이메일	leesd84@korea.kr
신청서 제출처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
홈페이지	https://ktc.go.kr

I. 일반사항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2026년 4월 7일 이를 공고하였습니다.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무역위원회공고 제2026-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II. 요청정보** 상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Annex] CERTIFICATE OF ACCURACY**를 날인하여 2026년 4월 28일까지 무역위원회에 조사참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공급자 >

- (중국) 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
Skyey Impex Limited
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 Ltd.
- (대만) Formosa Plastics Corporation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합니다.

무역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6.10.2조에 따라 조사대상 공급자 수가 너무 많아 개별적이 조사가 부당하게 부담이 되고 조사의 적시 종결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공급자의 조사참여 신청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이외의 공급자가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정보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참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할 것입니다.

II. 요청정보

1. 회사개요

(1) 회사

- 회사명(영문 및 한글) :
 - * 영문명은 감사보고서 및 상업송장 등에 명시되는 회사의 정식 영문명 기재
- 주 소(우편번호 포함) :
- 전 화 :
- 이메일 :
- 웹사이트 :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2) 법적대리인

- 법적대리기관명 :
- 법적대리인 직위 및 성명 :
- 주 소 :
- 전 화 :
- 이메일 :

(3) 회사 조직 및 관계자(회사)

귀사의 조직 및 관계자(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동 정보는 귀사가 조사대상물품의 개발, 생산, 판매, 유통 등에 관여하는 형태와 역할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동 정보 요청은 **귀사뿐 아니라 귀사의 관계자(회사)도 대상으로 합니다.** 관계자(회사)에 대한 정보는 향후 조사 시 판매가격, 판매관리비, 제조원가 등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시장 및 물품

하단 양식에 따라 조사대상기간('25.1.1.~12.31.) 동안 귀사가 한국, 내수 및 제3국 시장에 판매한 조사대상물품의 물량과 금액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물품 판매에 관여하는 회사(관계자)가 다수인 경우, 각 판매 주체별로 해당 양식을 완성하십시오.

동 정보는 무역위원회가 귀사의 조사참여 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조사대상물품 수입통계에 귀사 실적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활용될 것입니다.

양식 : < 회사 또는 관계자명 >

판매시장	구 분	판매량* (단위 : kg)	판매금액** (단위 : 미국달러 또는 내수화폐)
한 국	관계자(회사) 대상 판매		
	비관계자(회사) 대상 판매		
내 수	관계자(회사) 대상 판매		
	비관계자(회사) 대상 판매		
제3국	관계자(회사) 대상 판매		
	비관계자(회사) 대상 판매		

* 판매량은 DMT(Dry Metric Ton)를 kg(0.001DMT)으로 환산한 수치를 기재하고, 동 단위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함께 대체 단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단위를 함께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RMB)

3. 회계/재무 관행

귀사의 회계기간을 포함하여 회계 및 재무보고 관행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 정보는 귀사와 관련한 정보를 무역위원회가 확인하고 분석하는 용도로 활용될 것입니다.

4. 생산량

귀사 및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조사대상기간('25.1.1.~12.31.) 동안 생산한 조사대상물품의 양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량 : kg(DMT 기반)

5. 관계자(회사)

귀사의 모든 직·간접적인 관계자(회사)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고, 각 사가 조사대상물품의 개발, 생산, 판매(내수 및 수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6. 귀사 및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무역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현지실사도 진행될 수 있음에 동의하십니까?

[ANNEX]

CERTIFICATE OF ACCURACY

I, (name and title), currently employed by (company name),
certify that (1) I have read the submission, and (2)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submission is, to the best of my knowledge, complete
and accurate.

DATE: _____

(signature of certifying person)

한국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

반덤핑 질의서

(구제 23-2026-2호)

조사대상물품	고체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solid)
공급국 및 관세영역	중국 및 대만
조사대상기간	2025. 1. 1. ~ 2025. 12. 31.
답변기한	2026. 5. 18.(월)
담당 조사관	이선덕 (Lee Seon-deok)
- 전화	82-44-203-3865
- 이메일	leesd84@korea.kr
답변서 제출처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
홈페이지	https://ktc.go.kr

목 차

Section A. 작성지침 -----	1
A-1. 답변서 제출요령	2
A-2. 답변서 준비요령	3
A-3. 답변자 유형별 제출자료 요약	5
Section B. 일반정보 -----	6
B-1. 회사명 및 연락처	6
B-2. 법적대리인	6
B-3. 기업구조 및 관계자(회사)	7
B-4. 유통경로	10
B-5. 판매과정	11
B-6. 회계 및 재무 정책	12
B-7. ERP 시스템	14
B-8. 제3국을 경유한 수출	15
B-9. 비관계자(회사)에 의해 공급된 조사대상물품의 판매	16
Section C. 조사대상물품 -----	17
C-1. 조사대상물품	17
C-2. 물품규격	18
C-3. 수출 및 내수물품 비교	19
Section D. 경영통계 -----	20
D-1. 판매	20
D-2. 손익계산서	21
D-3. 생산실적 및 생산능력	24
D-4. 재고	25
D-5. 관계 재판매회사에 대한 표 작성	27

Section E. 대한민국 수출판매 -----	28
E-1. 대한민국 수출판매 및 조정	28
E-2. 대한민국 수출판매의 파일 포맷(EP)	29
E-3. 대한민국 수출판매의 파일 포맷(CEP)	43
Section F. 내수판매 -----	57
F-1. 내수판매 및 조정	57
F-2. 내수판매의 파일 포맷	58
F-3. 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	70
Section G. 생산원가 및 구성가격 -----	71
G-1. 일반설명	71
G-2. 일반사항	73
G-3. 답변형식	78
G-4. 매출원가	83
G-5. 생산원가	86
Section H. 한국 내 추가가공 또는 조립원가 -----	87
H-1. 일반설명	87
H-2. 일반사항	88
H-3. 답변형식	90
H-4. 추가가공원가 데이터 파일	92
Section I. 전자파일 준비 안내 -----	96
부록 I. 용어해설 -----	97
부록 II. 자료의 정확성 입증 -----	103
부록 III. 공개본 작성지침 -----	104

Section A. 작성지침

본 질의서는 대한민국 관세법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귀사가 조사 대상물품을 한국에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관세법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반덤핑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조사 시 제공되는 비밀 정보 혹은 비밀 보장 조건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무역위는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해당 정보는 정보를 제출한 귀사의 구체적인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사가 필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 및 최종 판정에 심각한 방해로 하는 경우, 무역위는 별도로 입수한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귀사가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져 귀사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사가 이 질의서의 표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어도 **제출기일 10일 전에**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답변기한 연장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 기한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질의서 관련 질의 혹은 의심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본 질문서를 받은 후 10 영업일 이내에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1. 답변서 제출요령

아래의 사항은 답변서 작성뿐만 아니라 조사와 관련하여 귀사가 무역위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해당됩니다.

1. 답변서는 질의서 표지에 명기된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2. 답변서 공개본 및 비공개본 각 3부를 제출마감기한까지 제출하십시오.
3. 공개본 및 비공개본의 전자파일(hwp, docx, xlsx, pdf 등)도 제출 마감기한까지 제출하십시오.
4.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공개 청구를 제출하십시오.
5. 공개본에는 합리적인 이해를 위한 충분한 정보¹⁾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개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6.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십시오. 자료제출자는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이 없는 경우 무역위는 답변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 양식은 부록 II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7. 귀사가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지 않고 단순히 수출 혹은 유통을 하는 경우, 관련 생산자에게 본 질의서를 전달하십시오. 귀사가 당해 제품의 생산에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이 조사에 대응할 의무가 아직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귀사는 본 질의서에 독립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수치자료는 지표나 실제 값의 10퍼센트 이내의 숫자를 사용하여 표시하면 적절히 요약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8. 귀사의 답변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입증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답변서에 제출된 정보는 서로 완벽히 연결되어야 하며, 일치해야 합니다. 제출 정보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조사에 의도적으로 비협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용가능한 자료가 사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9. 답변서는 **양면 복사된 책 형태(링 제본 아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 제약으로 인해 링 제본을 제출하는 경우 일주일 이내에 요구된 형태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A-2. 답변서 준비요령

1. **답변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번역이 어려운 서류가 있는 경우 본 질문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십시오.
2.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먼저 **질문내용을 반복하고 그 아래에 답변내용을 작성**하십시오. 도표의 경우 별도로 제공하는 엑셀파일²⁾에 작성하고, 필요시 시트를 추가하십시오.
3.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되는 정보는 Section I의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4. 질의서의 **Section E와 F**에서 요구한 조정사항은 판매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보고하고, 특정판매에 국한하여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조정항목은 적절한 배분방식(예: 평균)을 이용하십시오.

만일 특정한 거래별로 가격조정 또는 비용을 보고하는 것이 중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면 귀사가 이에 대한 배분이 합리적으로 세분화되어 (예컨대 고객별, 생산별 그리고/또는 월별 등) 산정되었다는 것과 불합리한

2)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s://ktc.go.kr>) 내 무역구제 > 무역구제조사 진행 > 반덤핑 조사건명 > 질의서/답변서(파일명: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참조

왜곡이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역위는 배분된 비용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 귀사의 가격조정과 비용 기재 방식 (2) 귀사의 기록을 이용하여 보다 세분화된 가격조정이나 비용을 보고할 수 없는 사유 (3) 귀사의 배분방법이 부정확성이나 왜곡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5. 특별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정금액과 그 성격을 명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역위는 그 조정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모든 비용과 수익은 그것이 발생하고 이루어진 통화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무역위가 위와는 별개의 통화단위로 기재할 것을 요구한 경우, 실제 통화단위 기재 후 무역위 요구 통화단위를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수익과 비용은 귀사의 회계계정표상에서 이름과 계정과목 또는 세부계정과목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7. 귀사의 서술답변, 계산내역서, 표에서 사용된 모든 계량단위, 통화 및 환산요소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8. 답변내용의 원천자료가 평상시는 어떤 형태로 분류되고 유지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귀사의 답변서 부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동 정보는 무역위가 실사를 준비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9. 질의서는 귀사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회사)도 (부록 I 참조) 이번 조사의 당사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사대상 국가 또는 관세영역에 위치한 관계자(회사)가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생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별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내의 비관계자(회사)에게 판매되기 전 관계자(회사)에 의해 가치 혹은 물리적 특성(추가가공)이 바뀌는 경우, 관계자(회사)는 Section H를 작성해야 합니다.

10. 귀사는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을 포함한 모든 판매자료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사는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11. 보고내용에 대하여는 그 목차와 첨부물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첨부물의 제목과 첨부물별 일련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12. 각 질문내용별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만일 **해당하지 않는 질문**의 경우 **“해당 없음”**을 표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당해 특정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귀사에 불리한 추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3. 답변자 유형별 제출자료 요약

아래 표는 본 질의서에 포함된 주요 표를 수출 형태 및 답변자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이는 답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본 질문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내에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십시오.

1. 대한민국 판매자료 파일

수출 형태	판매데이터			
	EPSALE	CEPSALE	EXFUCOM	EXFUCOP
EP	0			
CEP	0	0		
한국 내 추가가공	0	0	0	0

2. 내수 판매자료 파일

답변자 유형	판매데이터
	DMSALE
답변자	0
답변자의 제품을 재판매하는 관계자	0

Section B. 일반정보

B-1. 회사명 및 연락처

귀사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기입하고 이와 관련된 담당자의 성명 및 회사 내에서의 역할을 기입하십시오.

- 회사명(영문 및 한글) :
 - * 영문명은 감사보고서 및 상업송장 등에 명시되는 회사의 정식 영문명 기재
- 주 소(우편번호 포함) :
- 전 화 :
- 이메일 :
- 웹사이트 :
- 담당자 직위(회사 내 역할 포함) 및 성명 :

B-2. 법적대리인

본 조사를 위하여 귀사가 법적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대리인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 법적대리기관명 :
- 법적대리인 직위 및 성명 :
- 주 소 :
- 전 화 :
- 이메일 :

B-3. 기업구조 및 관계자(회사)

회사의 경영, 법적구조 및 관계자(회사)에 대한 질문의 목적은 무역위조사대상물품의 개발, 생산,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귀사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역위는 귀사뿐 아니라 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자(회사)에 대한 정보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가격, 판매 및 일반 관리비나 생산원가를 산정하는데 관계자(회사)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나열된 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회사는 물론, 개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귀사뿐 아니라 **본 조사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회사)도 피조사인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회사들은 A-1.7에서 A-2.9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조사대상물품의 개발·생산·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귀사의 조직 구조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구조에 대한 **설명자료와 회사 조직도(각 부서별 인원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귀사 및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조사대상물품의 개발·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공장·판매사무소·연구개발시설 및 관리사무소의 목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시설의 주소 및 각각의 간략한 목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모든 공장과 시설, 판매 사무소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또는 상업화에 관련된 모든 국가에 있는 관계 회사 또는 모든 자회사의 이름(현지어, 영문명 각각 기재), 주소, 전화 및 이메일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들 관계자(회사)의 활동을 명시하여 주십시오. 모든 경우에 귀사와 관계의 성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귀사가 이들 회사와 임원 또는 고위 관리자를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이들 회사와 상호관계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당사자 간의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러한 관계자(회사) 등이 매우 많은 경우 본 질문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래에 나열된 기준에 해당하는 **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자회사 및 모회사**를 포함한 귀사의 **법적 구조와 연계 조직도**를 제출하고 그러한 집단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관계회사는 다음에 열거된 회사를 포함하되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a.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지분을 직·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
 - b. 귀사가 자회사로 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
 - c. 제3자에 의하여 귀사와 함께 통제를 받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 이 경우 귀사가 그와 같은 소유권이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사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보유한 모든 사람 또는 법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귀사가 다른 회사의 자회사라면 귀사의 모회사(들)가 의결권의 5% 이상을 보유한 다른 법인의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d. 귀사에 의해 통제되거나 귀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 또는 법인. 채무자, 밀접한 공급자, 합작회사 파트너, 그들의 임원과 관리자가 귀사의 임원과 관리자를 겸하는 경우 그 회사, 귀사와 영업상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회사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사를 통제하거나 또는 귀사에 의하여 통제되는 앞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또는 회사를 포함

하십시오. 통제는 사람 또는 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지시나 제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5. 위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언급된 사람 중 직접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였을 경우에 그 소유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총 투입을 포함하여) 조사대상물품의 개발·생산·판매에 있어서 귀사가 언급한 각 사람의 이름과 역할 및 각 사람과 귀사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6. 위에 언급한 관계자(회사) 중 (총 투입을 포함하여) 조사대상물품의 개발·생산·판매 분야에 종사하는 자와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리스트와 관계의 성격 등을 설명하십시오.
7. 귀사, 귀사의 자회사 및 모회사의 10대 지분소유자의 명단과 각자의 지분율,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5% 이상 소유한 자의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만일 위 자료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완성시킬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8. 조사대상물품과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귀사가 지불한 경우” 그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B-4. 유통경로

귀사가 제시한 유통경로와 판매과정에 대한 자료는 동일한 거래 단계에 있는 내수거래와 수출거래를 비교하거나 또는 동일한 단계의 거래가 존재하지 아닐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적절한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한 거래단계에서의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1. **한국수출과 내수시장의 판매경로에 대한 설명과 흐름도를 각각 제시 하십시오.**
2. **유통과정의 고객유형(예 : 대리점, 도매상, 소매상, 최종소비자 등) 명단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구성수출가격의 경우에는 한국의 수입자와 비관계자(회사)의 유형(예 : 대리점, 도매상, 소매상, 최종소비자 등)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3. **한국시장과 내수시장에서 행하여진 판매활동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 하십시오.** 판매활동에는 **재고유지, 보수, 기술자문, 보증서비스, 배송, 광고 및 기타 판매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활동 및 용역 중 귀사와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수행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표시하고 각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내수 및 수출거래와 관련된 비용은 공제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Section E와 F의 비용항목으로 보고하십시오.
4. **내수시장과 한국수출시장에서 귀사가 거래처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의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그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B-5. 판매과정

1. 상기 B-4에 설명된 **유통경로별 판매과정**을 설명하십시오.
2. 도매상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처나 판매시장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이 경우에 도매상에게 판매지역 또는 매출량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밝히십시오.
3. **한국수출과 내수판매**와 관련된 **계약내용**(예 : 장기구매계약, 단기구매계약, 구매주문, 주문확인과정 등)을 설명하십시오.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한국수출과 내수거래**에 대하여 **계약유형별로 각 1건의 거래**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계약서 등 판매과정에서 작성되는 모든 관련서류의 사본**(구매주문서, 내부 또는 외부작성 주문확인서, 송장, 선적 및 수출서류)과 해당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정항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십시오.
4. 배송일자 외에 계약일 이후 판매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조건의 변동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5. 상기 B-5.3의 계약유형별 조사대상물품의 판매가 내수시장과 한국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십시오.
6. 내수시장 및 한국수출 시장에서 조사대상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목록을 제시하고 각각의 가격목록이 어떤 판매유형에 적용되는지를 제시하십시오. 만약 할인이나 리베이트가 적용되는 경우 그 리스트도 제시하십시오.
7. 상기 B-4에서 귀사가 제시한 각각의 유통경로별로 대금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십시오.
8. 내수시장과 한국수출 시장에서의 판매 흐름, 즉 주문접수부터 매출액 입금까지의 과정과 단계별 평균 소요기일을 표시한 표를 제공하십시오.

B-6. 회계 및 재무 정책

귀사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회계 및 재무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무역위에 제시하십시오.

1. 귀사의 회계기간을 포함하여, 회계 및 재무보고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2. 귀사의 재무, 회계원칙이 조사대상물품 생산국 또는 관할 관세영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르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최근 2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세무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감사결과 적정의견 이외의 의견을 받은 경우, 그러한 의견이 덤핑마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3. 귀사의 회계장부와 장부보존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를 제공하십시오. 또한 흐름도에 모든 회계 보조부와 회계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문서(원재료 구매, 재고, 판매 및 매출채권 장부 등)를 표시하고, 개별 데이터가 재무제표에 요약 표시되는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4. **최근 2개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다음의 재무문서와 월별 또는 분기별 재무제표를 제출하십시오.
 - a. **계정과목표(최하위 계정단위까지 기재)**
 - b. **연결 및 비연결 감사보고서(감사의견 및 주석 포함)**
 - c. **조사대상물품의 내부 손익 분석보고서 및 내부 재무보고서.**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조사대상물품과 가장 근접한 생산라인에 해당하는 보고서

d. 조사대상물품의 개발·생산·판매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회사)의 재무제표 및 관련 문서

e. 귀사가 위치한 국가에 제출한 기타 재무보고서

f. 시산표

5. 다음 사항과 관련된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a. 원재료, 재공품, 제품의 재고 및 매출원가에 대한 평가방법

b. 고정자산의 평가, 재평가, 감가상각 및 유휴자산의 처리

c. 고정자산의 종류별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또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최근 2년 이내에 변경된 적이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d.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을 포함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e. 연말에 수정분개를 요하는 손익관련 계정과목

f. 외화환산 및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처리

g. 재고자산 또는 고정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일반관리비 및 이자비용 등의 자본화 방침

h. 공장의 폐쇄·운휴·보수 등과 관련된 사항, 특히 조사대상기간 중에 공장 일부를 보수·폐쇄 또는 운휴시킨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것이 귀사의 비용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십시오.

i. 귀사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스크랩

j. 인플레이션이 재무제표 정보에 미친 영향

B-7. ERP 시스템

귀사가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다음의 정보를 무역위에 제시하십시오.

1. 귀사의 매출과 비용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중심으로 **ERP 시스템의 개요**를 설명하십시오. 판매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기능을 서술하십시오.
2. **ERP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하고, **서버의 수와 위치**를 기술하십시오. 관계자(회사)가 동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관계자(회사)의 명칭을 모두 열거하여 주시고, 서버가 귀사와 동일 위치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주십시오.
3. 매출 및 비용에 대한 **원천문서가 회계전표, 보조원장, 총계정원장을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4. 일반적인 영업환경에서 생성되는 **ERP 상의 조사대상물품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예를 들어, 재고, 판매, 출하) **표본**을 제공하십시오.

B-8. 제3국을 경유한 수출

대한국 수출이 제3국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조사대상물품의 한국수출과 관련된 유통구조를**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한국수출과 **관련된 회사의** 이름을 모두 열거하고 관계자(회사) 여부를 밝히십시오. 조사대상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물품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고,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모델과 경유 국가를** 나열하십시오. 이 경우 물품의 **주문부터 배달 및 대금청구까지의 과정을** 흐름도로 설명하십시오.
2. 만약 경유 국가에서 물품이 추가 가공 또는 조립되거나 어떤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3. 경유국을 통하여 한국으로 선적된 물품이 수출국으로 간주되는 국가 또는 관세영역(이하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서 조달된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수입 후 한국의 비관계자(회사)에게 인도될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원산지과 그 부품의 조립이 이루어진 장소를 밝히십시오.

B-9. 비관계자(회사)에 의해 공급된 조사대상물품의 판매

한국에 수출한 물품이 귀사 또는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본 질의서의 다음 부분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1. 본 질의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귀사 또는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수출한 물품을 귀사에 공급한 자의 이름(현지어, 영문명 각각 기재), 주소, 이메일, 웹페이지 등을 담당 조사관에게 알려주십시오.
2. 귀사에 물건을 공급한 자가 귀사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할 당시에 그 물품의 최종 판매처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3. 본 조사에 해당되는 공급자에게 본 질의서를 전달해 주십시오.
4. 상기 B-9-1.~B-9-3.의 답변 및 조치내역과는 별개로 귀사는 여전히 본 질의서 Section C, D, E, F, G에 대한 답변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Section C. 조사대상물품

C-1. 조사대상물품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별도의 지침 문서는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CCN 구성방법은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 코딩 시스템에 의한 모델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2. 귀사가 CCN 구성에 추가 또는 변경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조사개시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원가와 판매가격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사의 제품을 제품코드(Prodcod), 규격, 물리·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CCN을 구성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CCN 구분을 위하여 사용한 원천자료가 무엇이고, 추출된 원천 자료로부터 최종 CCN으로 구분한 전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해당 샘플 증빙(ERP 화면, 송장, 회사 내부자료 등)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Section E 및 F의 한국수출 및 내수판매자료에서 CCN을 부여한 방식과 Section G의 제조원가에서 CCN을 부여한 방식을 각각 모두 설명하십시오.)

C-2. 물품규격

다음의 정보는 귀사 또는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한국에 수출하거나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물품의 규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사가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가능한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1. 아래 표의 항목코드를 열의 머리글로 사용하여 조사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모든 모델에 대하여 **도표를 작성**하십시오. 제품코드는 가능한 한 자세하여야 하며, 귀사의 생산라인 및 ERP 등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C-2.1 코드>

*	항목명	항목코드	항목설명
1	CCN	(CCN)	물품통제코드 (CCN 안내서 참조)
2	제품코드	(PRODCOD)	제품코드
4	제품모델	(MODEL)	송장에 기재하는 모델명 (대표 모델명이 아닌 해당되는 모든 모델명을 보고할 것)
5	제품모델-1	(MODEL-1)	홈페이지, 브로슈어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모델명 내지 브랜드명 (대표 모델명이 아닌 해당되는 모든 모델명을 보고할 것)
5	한국수출량	(EXQTY)	한국에서의 모델별 매출량
6	한국수출액	(EXVAL)	한국에서의 모델별 매출액
7	내수판매량	(DMQTY)	내수에서의 모델별 매출량
8	내수판매액	(DMVAL)	내수에서의 모델별 매출액
9	3국수출량	(EXOTHQTY)	한국 외 수출국에서의 모델별 매출량
10	3국수출액	(EXOTHVAL)	한국 외 수출국에서의 모델별 매출액
11	제품특성	(PRODESC)	제품의 특성 설명

2.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비조사대상물품 포함)에 대하여 귀사 및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작성한 **카탈로그나 브로슈어를 제출**하십시오.
3. 무역위는 CCN을 기준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할 것이나, 필요시 제품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십시오.

C-3. 수출 및 내수물품 비교

귀사 또는 귀사 관계자(회사)의 내수 판매 물품과 대한민국 수출판매 물품 중 동일한 CCN으로 분류되었으나, 시장에 따라 다른 제품코드 및 다른 모델명(브랜드명)를 가지고 있는 판매 건이 있는 경우, **아래 표를 작성** 하십시오.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C-3 수출 및 내수물품 비교>

(단위 : kg, 현지화폐단위)

한국 수출					내수 판매					차이
CCN	제품 코드	모델명 (브랜드명)	수량	금액	CCN	제품 코드	모델명 (브랜드명)	수량	금액	

※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엑셀도표 포함) 작성 시 모든 중량 단위는 **DMT(Dry Metric Ton)**를 **kg 단위로 환산한 순중량(Net weight)**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LMT, 총중량(Gross Weight) 등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동 사실을 별도 보고하십시오.

특히 원료, 디자인, 특징, 규격, 생산과정 및 생산설비 등에 있어서의 차이와 함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Section D. 경영통계

D-1. 판매

세금과 할인을 공제한 귀사의 비연결 기준 순매출액³⁾을 조사대상기간과 조사대상기간 직전 3 회계연도에 대해 **아래 양식으로 작성**하십시오. 이 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원천 데이터 및 해당 데이터의 보관 장소를 **설명**하십시오. 아래 표의 사업부를 구분한 기준과 조사대상물품이 어느 사업부에 속하는지를 제시하십시오. 아래 표의 조사대상물품 매출액은 EPSALE 및 DMSALE 매출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만일 차이가 있다면 그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D-1 판매>

(단위 : kg, 현지화폐단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조사대상기간 (2025.1.1.~12.31.)	
	A(*)	U(*)	A	U	A	U	A	U
회사전체 매출액 (모든 물품)								
- 내수판매								
- 한국수출								
- 기타국가수출								
조사대상물품을 포함한 사업부문 매출액								
- 내수판매								
- 한국수출								
- 기타국가수출								

3) 회계에 사용된 화폐단위(통상 현지화폐단위)를 계속 사용하십시오.

4) 기타국가 수출 = 국가 1 + 국가 2 + 국가 3 + 기타국가

5) 국가 1~3은 매출량(중량)이 큰 순서대로 보고하십시오.

조사대상물품 매출액								
- 내수판매								
- 한국수출								
- 기타국가수출 ⁴⁾								
* 국가 1 ⁵⁾								
* 국가 2								
* 국가 3								
* 기타국가								
조사대상물품을 포함한 사업부문 매출량								
- 내수판매								
- 한국수출								
- 기타국가수출								
조사대상물품 매출량								
- 내수판매								
- 한국수출								
- 기타국가수출								
* 국가 1								
* 국가 2								
* 국가 3								
* 기타국가								

*A : 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

*U : 비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

D-2. 손익계산서

귀사의 비연결 기준 손익계산서의 주요 항목을 조사대상기간과 조사대상기간 직전 3 회계연도에 대해 아래 양식으로 작성하십시오. 조사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비용 배부방식을 설명하십시오.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D-2 손익계산서>

(단위 : 현지화폐단위)

모든 물품					
구 분		2022	2023	2024	조사대상기간 (2025.1.1.~12.31.)
매출액	(1)				
반품액	(2)				
반품후 매출액	(3=1-2)				
기초재고	(4)				
당기제품제조원가/ 당기구매액	(5)				
기말재고	(6)				
매출원가	(7=4+5-6)				
매출총이익	(8=3-7)				
판매 및 일반관리비	(9)				
영업이익	(10=8-9)				
영업외수익	(11=12+13)				
이자수익	(12)				
기타영업외수익	(13)				
영업외비용	(14=15+16)				
이자비용	(15)				
기타영업외비용	(16)				
특별항목전이익	(17=10+11-14)				
특별이익 및 특별손익	18				
법인세차감전순익	(19=17+18)				
법인세	(20)				
법인세차감후순익	(21=19-20)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D-2 손익계산서(계속)>

(단위 : 현지화폐단위)

조사대상물품					
구 분		2022	2023	2024	조사대상기간 (2025.1.1.~12.31.)
매출액	(1)				
반품액	(2)				
반품후 매출액	(3=1-2)				
기초재고	(4)				
당기제품제조원가/ 당기구매액	(5)				
기말재고	(6)				
매출원가	(7=4+5-6)				
매출총이익	(8=3-7)				
판매 및 일반관리비	(9)				
영업이익	(10=8-9)				
영업외수익	(11=12+13)				
이자수익	(12)				
기타영업외수익	(13)				
영업외비용	(14=15+16)				
이자비용	(15)				
기타영업외비용	(16)				
특별항목전이익	(17=10+11-14)				
특별이익 및 특별손익	18				
법인세차감전순익	(19=17+18)				
법인세	(20)				
법인세차감후순익	(21=19-20)				

D-3. 생산실적 및 생산능력

1. 다음 표와 같이 총 생산량과 조사대상물품의 구매량을 제시하십시오.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D-3 생산실적 및 생산능력>

(단위 : kg)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조사대상기간 (2025.1.1.~12.31.)	2026년 예측치
- 생산능력					
- 생 산 량					
- 가 동 률(%)					
- 조사대상물품 구매량 ⁶⁾					

2. 생산능력과 가동률의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따른 것인지 기술하십시오.
3. 귀사가 조사대상물품을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관련 제조공장별로 상기 표를 작성하십시오.
4. 귀사를 비롯한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판매한 생산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원산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5. 수출국,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생산을 시작하거나 생산능력을 증가시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6. 입수 가능한 범위에서 공급국 또는 관할 관세영역 전체의 조사대상물품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아래 표와 같이 작성, 제출하고 출처를 명시하십시오.

6) 관계자(회사)나 자회사의 구매를 포함한 최종 생산품의 모든 구매량을 기록하되, 재판매하기 전에 구매물품의 사소한 변경(예 : 재포장)은 최종 생산품의 구매로서 고려되지 아니함

<작성양식 : 공급국 또는 관세영역의 생산능력 및 가동률>

(단위 : kg)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조사대상기간 (2025.1.1.~12.31.)	2026년 예측치
- 생산능력					
- 생산량					
- 가동률(%)					

D-4. 재고

1. 다음 표와 같이 재고금액과 수량을 제시하십시오.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D-4.1 재고>

(단위 : 현지화폐단위, kg, 현지화폐단위/kg)

구분	제품				상품			
	모든제품 재고금액	조사대상물품			모든상품 재고금액	조사대상물품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2022 기초재고								
2022 기말재고								
2023 기말재고								
조사대상기간 기초재고 (2024 기말재고)								
조사대상기간 기말재고 (2025 기말재고)								

2.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재고자산의 수불을 요약하는 다음 표를 작성하십시오. 조사대상물품의 재고수량 수불을 보고하여 주시고, 금액과 관련하여 원재료와 조사대상물품 이외의 물품을 포함한 모든 재고자산의 수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 자회사 및 모든 관계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D-4.2 재고수불>

<재고 금액>

(단위 : 현지화폐단위)

항목	조사대상기간 기초재고	생산	구매	판매	타계정대체	기타 증가	기타 감소	조사대상기간 기말재고
제품 재고								
-조사대상물품								
-비조사대상물품								
상품 재고								
-조사대상물품								
-비조사대상물품								
원재료								
기타재고자산								
합계								

* 필요시 칸을 추가하십시오.

<재고 물량>

(단위 : kg)

항목	조사대상기간 기초재고	생산	구매	판매	타계정대체	기타 증가	기타 감소	조사대상기간 기말재고
제품 재고								
-조사대상물품								
-비조사대상물품								
상품 재고								
-조사대상물품								
-비조사대상물품								
원재료								
기타재고자산								
합계								

* 필요시 칸을 추가하십시오.

D-5. 관계 재판매회사에 대한 표 작성

만약 관계 재판매회사가 내수시장에서 조사대상물품의 재판매에 관련되어 F-3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앞에서 열거된 D-1부터 D-4까지의 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본 질의서 Section B와 Section G에서 요구되는 질문 및 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Section E. 대한민국 수출판매

이 장에서는 조사대상물품의 대한민국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며, 특히 한국에 수출된 제품의 판매가격과 그 산정방법에 대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서를 수령한 수출자는 생산자와 함께 본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정매출의 조사대상기간 내 포함 여부는 상업송장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일에 대한 정의는 [부록 I]을 참고하십시오.

E-1. 대한민국 수출판매 및 조정

1. 귀사의 대한민국 수출 형태가 EP인 경우 “CEPSALE” 파일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CEP인 경우 “EPSALE”과 “CEPSALE” 파일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파일의 매출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십시오. EP와 CEP의 정의는 [부록 I]을 참고하십시오.
2. 전체 매출액에서 “EPSALE”과 “CEPSALE” 파일에 보고된 매출액을 산출한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3. 본 질의서 E-2, E-3 항목의 필드별 설명에 따라 대한민국 수출 거래에 대한 “EPSALE” 및 “CEPSALE” 파일을 완성하십시오. 각 파일에는 건별 판매자료와 그에 대한 조정사항을 제시하고, 표본 거래에 대하여 조정사항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 한 세트를 제출하십시오.
4. 조정사항 중 관계자(회사)에 의해 발생한 항목이 있는 경우 조정사항별 관련된 관계자(회사) 목록을 제공하고 정상가격 여부를 입증하십시오.
5. 대한민국 수출과 관련된 조정사항과 연관이 있는 모든 계정을 열거하고 관련 조정사항을 표시하는 차트를 제출하십시오.

E-2. 대한민국 수출판매의 파일 포맷(EP)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E-2 EPSALE>

필드번호 0 : 일련번호

필드명 : SN

설명 : 각 매출 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십시오. 이 번호는 타 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필드번호 1 :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필드명 : CCN

설명 : 본 질의서 C-1 및 별도 배포한 CCN 안내서에 따라 CCN을 작성하십시오. 한국 내에서 추가 가공되는 경우 수입 당시 제품을 기준으로 CCN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필드번호 2 : 제품코드

필드명 : PRODCOD

설명 : 회계관리 목적으로 귀사에서 부여한 제품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 : 모델명

필드명 : MODEL

설명 : 송장에 표시되는 제품모델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1 : 모델명-1

필드명 : MODEL-1

설명 : 홈페이지, 브로슈어 등 대외적으로 제품을 표시·광고하는 모델명 내지 브랜드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 : HS코드

필드명 : HSCD

설명 : 한국시장 통관 시 보고되는 HS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5 : 상업송장일자

필드명 : INVDATE

설명: 판매 건별 상업송장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6 : 판매일

필드명 : SALDATE

설명 : 상업송장일자와 다른 경우에만 보고하십시오. 판매일 보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당 조사관과 연락하십시오.

필드번호 7 : 상업송장번호

필드명 : INVNUM

설명 : 상업송장번호를 보고하십시오. 또한 송장번호 생성체계와 번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8 : 출하일

필드명 : SHIPDATE

설명 : 공장 또는 보관창고에서 고객에게 출고된 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9 : 대금입금일

필드명 : PAYDATE

설명 : 판매대금 입금일을 보고하고 해당 입금일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원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10 : 지급조건

필드명 : PAY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지급조건(예 : 일람지급, 30일 후 지급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경로별로 지급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지급조건을 고객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조기지급 할인이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면 위 지급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0.1 : 신용장번호

필드명 : L/CNUM

설명 : 신용장 거래방식의 경우 신용장 번호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필드번호 11 : 인도조건

필드명 : DEL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인도조건(예 : FOB, CFR, CIF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경로별로 인도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2 : 고객코드

필드명 : CUSTNUM

설명 : 각 판매 건별 고객코드를 보고하고 귀사의 고객코드, 주소, 이름이 기재된 리스트를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13 : 고객구분

필드명 : CUSCAT

설명 : 아래의 코드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십시오.

1 = 제조업자

2 = 상사

- 3 = 도매상
- 4 = 소매상
- 5 = 자가소비
- 6 - n = 기타

필드번호 14 : 유통경로

필드명 : CHANNEL

설명 : B-4에서 제시한 유통경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5 : 고객구분 (관계자(회사) 여부)

필드명 : CUSREL

설명 : 아래의 코드를 이용하여 관계자(회사)를 구분하십시오.

U = 비관계자(회사)

A = 관계자(회사)

필드번호 16 : 주문서 또는 계약 번호

필드명 : ORDNUM

설명 : 주문서 또는 계약번호를 보고하십시오. 주문번호의 생성체계와 번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6.1 : 선하증권 번호

필드명 : B/LNUM

설명 : 해상운송방식의 경우 선하증권 번호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필드번호 17 : 제품등급

필드명 : GRA

설명 : 귀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세부 제품등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8 : 매출량

필드명 : QTY

설명 : 매출량을 보고하십시오. 각 출하기준 혹은 상업송장의 행번호 수량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수량의 단위가 달라 단위기준(kg)으로 환산이 필요한 경우, 환산된 수량은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19 : 수량단위

필드명 : QTU

설명 : 수량단위를 입력하십시오. 판매와 비용 발생시 여러 단위가 사용되는 경우 주요 단위를 선정하여 단일한 단위기준(kg)으로 데이터를 보고하고, 별도의 필드를 추가하여 발생 단위기준의 값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0 : 송장금액

필드명 : SALESAM

설명 : 최초의 고객에 대한 거래통화기준 세후 매출액을 보고하고 단위를 필드번호 20.1(CURR)에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21 : 조기지급할인액

필드명 : EPAY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고객별 조기지급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2 : 수량할인액

필드명 : QTY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고객별 수량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3 : 기타할인액

필드명 : OTH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기타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추가 필드를 삽입하여 작성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4 : 순송장금액

필드명 : NETSALES

설명 : 필드 21에서 23에 보고된 금액을 송장금액(필드 20)에서 차감한 순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5 : 현지통화 기준 순송장금액

필드명 : TURNOVER

설명 : 필드 24에 보고된 순송장금액을 귀사의 회계시스템상에 기록된 내수통화로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6 : 반품수량

필드명 : CREDQTY

설명 : 반품수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7 : 반품금액

필드명 : CREDTURN

설명 : 반품금액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8 : 반품후 수량

필드명 : NETQTY

설명 : 반품후 수량을 보고하십시오.(즉, QTY - CREDQTY)

필드번호 29 : 반품후 금액

필드명 : NETVAL

설명 : 반품후 순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즉, NETSALES - CREDTURN)

필드번호 30 : 금액조정

필드명 : BILLADJ

설명 : 송장에서 직접 차감되는 할인(필드번호 21에서 23) 및 리베이트 (필드번호 31) 외에 송장에서 차감되지 않는 금액조정 및 할인이 있는 경우,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과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금액 조정의 유형이 다양한 경우 추가필드를 삽입하여 보고하고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금액을 증가시키는 조정은 양, 감액시키는 경우는 음의 부호로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1 : 리베이트

필드명 : REBAT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지 않는 판매 건별 리베이트를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리베이트 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귀사의 리베이트 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리베이트 금액 산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32 : 간접세

필드명 : INDTAX

설명 : 각 판매 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세를 보고하고, 어느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설명하십시오. 각각의 세금항목에 대하여 세금 부과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십시오. 또한 각 세금항목의 계산방법, 정산방법, 납부와 관련한 서류도 첨부하십시오.

필드번호 33 : 공장에서 물류창고까지 내륙운반비

필드명 : INLFTW

설명 : 귀사의 **공장에서 창고**(또는 중간 경유지)까지의 운반비를 보고하십시오. 공장에서 항구까지의 운반비는 필드번호 35번에 보고합니다. 운송형태(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운송을 위해 사용한 배송업체와 맺은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고, 배송업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여러 물품이 동일 운송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배부한 경우 발생 단위에 근거하여 배부하고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본사 소유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 계산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4 : 물류창고비용

필드명 : INWARE

설명 : 창고보관비용을 보고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비용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보관비용 및 고객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귀사가 운영하는 물류창고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창고의 위치를 설명하십시오. 고객을 위해 창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 리스트와 함께 제공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창고가 타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운영회사와 귀사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5 : 공장/물류창고에서 항구까지 내륙운반비

필드명 : INLFTP

설명 : 귀사가 조사대상물품을 **항구까지 운송**하기 위해 발생한 운반비를 보고하십시오. 운송형태(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여러 항목이 동일 운송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배부한 경우 발생 단위에 근거하여 배부하고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운송을 위해 사용한 배송업체와 맺은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고, 배송업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본사 소유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 계산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6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 부대비용

필드명 : INHANDLE

설명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 부대비용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개별 구성항목 포함)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7 : 보험료

필드명 : ININSUR

설명 : **수출국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 금액을 보고하고,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8 : 해상운반비

필드명 : OCFREIGHT

설명 : 수출항에서 한국까지 배송을 위해 발생한 운반비를 보고하십시오.
운송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십시오.
해당 비용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9 : 해상보험료

필드명 : OCINSUR

설명 : 수출국 항구에서 한국 항구까지 발생한 해상보험료 금액을 보고
하십시오. 해당 비용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0 : 한국내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필드명 : KRCHARGE

설명 : 한국 내에서 발생한 핸들링,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금액을 보고
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개별 구성항목 포함)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1 : 한국내 항구에서 물류창고까지 운반비

필드명 : KINLFPW

설명 : 한국통관 후 물류창고까지 발생한 운반비를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2 : 한국내 물류창고비용

필드명 : KRWARE

설명 : 한국내 창고보관비를 보고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비용은
고객에게 별도로 청구하여 회수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필드번호 43 : 항구/물류창고에서 고객까지 운반비

필드명 : KINLFWC

설명 : 한국내 항구 또는 물류창고에서 고객까지 발생한 운반비를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4 : 한국내 보험료

필드명 : KRINSUR

설명 : 한국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를 보고하고,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5 : 신용비용

필드명 : CREDIT

설명 : 단기차입이자율을 사용한 신용비용을 계산하십시오. 귀사가 적용한 **단기차입이자율** 관련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신용비용은 개별 매출건의 **입금일과 출하일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계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 평균회전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46 : 신용기간

필드명 : CREPRD

설명 : 위 신용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일수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7 : 은행수수료

필드명 : BKCHARGE

설명 : 한국 고객으로부터 대금 회수 시 발생한 은행수수료를 보고하십시오. 은행수수료 항목이 다양한 경우 각 항목별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은행별 수수료가 다른 경우 은행별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 필드에 보고된 비용의 계산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8 : 판매보증비용

필드명 : WARR

설명 : 판매보증비용을 보고하십시오. 배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보고하십시오. 직전 3 회계연도 동안의 연도별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판매보증비용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비용의 산출방법과 근거를 명시하십시오. 이러한 비용이 조사대상물품의 일부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또는 여러 물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관련 금액을 배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판매보증 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거래건별 파일에 제시된 보증비용 계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9 : 기술지원 및 서비스비용

필드명 : AFTERSAL

설명 : 기술서비스 비용을 보고하십시오. 배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의 비용을 보고하십시오. 거래처에 제공하는 서비스, 수리, 상담 등의 서비스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50 : 수수료

필드명 : COMM

설명 : 판매와 관련하여 지불한 지급수수료 **금액과 그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여러 종류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종류별로 별도의 필드에 보고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조건과 수수료가 결정되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업체가 관계회사인지 여부를 설명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1 : 판매대행사

필드명 : SELAGEN

설명 : 판매대행업체의 이름 또는 내부 관리코드를 보고하십시오. 여러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업체별 수수료를 및 관계자(회사) 여부를 표시한 리스트를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52 : 관세환급

필드명 : DTDRAW

설명 : 관세환급액을 보고하고, 계산방식을 보여주는 파일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3 : 관세 및 통관비용

필드명 : DTCREAR

설명 : 수입통관 시 실제 부담한 관세액과 통관비용을 보고하고, 계산방식을 보여주는 파일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4 : 포장비

필드명 : PACK

설명 : 한국 수출을 위해 발생한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비에는 재료비, 인건비 및 가공비가 포함됩니다. 여러 공장에서 포장비가 발생한 경우 공장별 가중평균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 자재비, 인건비, 가공비별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포장 자재비의 경우 소요되는 **자재 리스트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5 : 포장유형

필드명 : PACK TYPE

설명 : 제품이 판매되는 포장유형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56 : 환율

필드명 : FXRATE

설명 : 송장금액을 회계장부 표시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을 기재하십시오. 아울러 기재된 환율의 출처와 적용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외화환산과 관련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국의 환율변동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수출과 관련된 최근 2년 동안의 외화의 공식 매도율과 매입률 자료와 중앙은행환율을 제시하십시오. 또한 비공식 환율이 있다면 그것을 기재하고 그 원천을 밝히십시오.

필드번호 57 : 과세가격

필드명 : CIFVAL

설명 : 한국 통관 시 보고한 과세가격을 보고하십시오. CIF 금액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방식과 증빙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8 : 수입상

필드명 : IMPORTER

설명 : 수입자를 기재하십시오.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확인 안 됨”으로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59 : 제조자

필드명 : MFR

설명 : 제조자명을 표시하십시오. 제조자를 모르는 경우 귀사에게 조사 대상물품을 공급한 공급자를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60 : 용도

필드명 : USE

설명 : 생산, 판매를 위해 내부관리되고 있는 제품의 용도를 보고하십시오. 만약 내부관리되고 있는 용도가 없다면 홈페이지, 브로슈어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제품의 용도를 보고하십시오.

E-3. 대한민국 수출판매의 파일 포맷(CEP)

아래 필드별 설명에 따라 한국 내 최초 비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 건별로 “CEPSALE” 파일을 완성하십시오.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E-3 CEPSALE>

필드번호 0 : 일련번호

필드명 : SN

설명 : 각 매출 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십시오. 이 번호는 타 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필드번호 1 :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필드명 : CCN

설명 : 본 질의서 C-1 및 별도 배포한 CCN 안내서에 따라 CCN을 작성하십시오. 한국 내에서 추가 가공되는 경우 수입 당시 제품을 기준으로 CCN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필드번호 2 : 제품코드

필드명 : PRODCOD

설명 : 회계관리 목적으로 귀사에서 부여한 제품 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 : 모델명

필드명 : MODEL

설명 : 송장에 표시되는 제품모델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1 : 모델명-1

필드명 : MODEL-1

설명 : 홈페이지, 브로슈어 등 대외적으로 제품을 표시·광고하는 모델명 내지 브랜드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 : HS코드

필드명 : HSCD

설명 : 한국시장 통관 시 보고되는 HS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5 : 상업송장일자

필드명 : INVDATE

설명: 판매 건별 상업송장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6 : 판매일

필드명 : SALDATE

설명 : 상업송장일자와 다른 경우에만 보고하십시오. 판매일 보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당 조사관과 연락하십시오.

필드번호 7 : 상업송장번호

필드명 : INVNUM

설명 : 상업송장번호를 보고하십시오. 또한 송장번호 생성체계와 번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8 : 출하일

필드명 : SHIPDATE

설명 : 공장 또는 보관창고에서 고객에게 출고된 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9 : 대금입금일

필드명 : PAYDATE

설명 : 판매대금 입금일을 보고하고 해당 입금일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원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10 : 지급조건

필드명 : PAY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지급조건(예 : 일람지급, 30일 후 지급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경로별로 지급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지급조건을 고객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조기지급 할인이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면 위 지급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0.1 : 신용장번호

필드명 : L/CNUM

설명 : 신용장 거래방식의 경우 신용장 번호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필드번호 11 : 인도조건

필드명 : DEL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인도조건(예 : FOB, CFR, CIF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경로별로 인도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2 : 고객코드

필드명 : CUSTNUM

설명 : 각 판매 건별 고객코드를 보고하고 귀사의 고객코드, 주소, 이름이 기재된 리스트를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13 : 고객구분

필드명 : CUSCAT

설명 : 아래의 코드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십시오.

1 = 제조업자

2 = 상사

- 3 = 도매상
- 4 = 소매상
- 5 = 자가소비
- 6 - n = 기타

필드번호 14 : 유통경로

필드명 : CHANNEL

설명 : B-4에서 제시한 유통경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5 : 고객구분 (관계자(회사) 여부)

필드명 : CUSREL

설명 : 아래의 코드를 이용하여 관계자(회사)를 구분하십시오.

U = 비관계자(회사)

A = 관계자(회사)

필드번호 16 : 주문서 또는 계약 번호

필드명 : ORDNUM

설명 : 주문서 또는 계약번호를 보고하십시오. 주문번호의 생성체계와 번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6.1 : 선하증권 번호

필드명 : B/LNUM

설명 : 해상운송방식의 경우 선하증권 번호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필드번호 17 : 제품등급

필드명 : GRA

설명 : 귀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세부 제품등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8 : 매출량

필드명 : QTY

설명 : 매출량을 보고하십시오. 각 출하기준 혹은 상업송장의 행번호 수량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수량의 단위가 달라 단위기준(kg)으로 환산이 필요한 경우, 환산된 수량은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19 : 수량단위

필드명 : QTU

설명 : 수량단위를 입력하십시오. 판매와 비용 발생시 여러 단위가 사용되는 경우 주요 단위를 선정하여 단일한 단위기준(kg)으로 데이터를 보고하고, 별도의 필드를 추가하여 발생 단위기준의 값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0 : 송장금액

필드명 : SALESAM

설명 : 최초의 고객에 대한 거래통화기준 세후 매출액을 보고하고 단위를 필드번호 20.1(CURR)에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21 : 조기지급할인액

필드명 : EPAY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고객별 조기지급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2 : 수량할인액

필드명 : QTY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고객별 수량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3 : 기타할인액

필드명 : OTH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기타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추가 필드를 삽입하여 작성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4 : 순송장금액

필드명 : NETSALES

설명 : 필드 21에서 23에 보고된 금액을 송장금액(필드 20)에서 차감한 순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5 : 현지통화 기준 순송장금액

필드명 : TURNOVER

설명 : 필드 24에 보고된 순송장금액을 귀사의 회계시스템상에 기록된 내수통화로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6 : 반품수량

필드명 : CREDQTY

설명 : 반품수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7 : 반품금액

필드명 : CREDITURN

설명 : 반품금액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8 : 반품후 수량

필드명 : NETQTY

설명 : 반품후 수량을 보고하십시오.(즉, QTY - CREDQTY)

필드번호 29 : 반품후 금액

필드명 : NETVAL

설명 : 반품후 순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즉, NETSALES - CREDITURN)

필드번호 30 : 금액조정

필드명 : BILLADJ

설명 : 송장에서 직접 차감되는 할인(필드번호 21에서 23) 및 리베이트(필드번호 31) 외에 송장에서 차감되지 않는 금액조정 및 할인이 있는 경우,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과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금액 조정의 유형이 다양한 경우 추가필드를 삽입하여 보고하고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금액을 증가시키는 조정은 양, 감액시키는 경우는 음의 부호로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1 : 리베이트

필드명 : REBAT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지 않는 판매 건별 리베이트를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리베이트 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귀사의 리베이트 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리베이트 금액 산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32 : 간접세

필드명 : INDTAX

설명 : 각 판매 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세를 보고하고, 어느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설명하십시오. 각각의 세금항목에 대하여 세금 부과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십시오. 또한 각 세금항목의 계산방법, 정산방법, 납부와 관련한 서류도 첨부하십시오.

필드번호 33 : 공장에서 물류창고까지 내륙운반비

필드명 : INLFTW

설명 : 귀사의 **공장에서 창고**(또는 중간 경유지)까지의 운반비를 보고하십시오. 공장에서 항구까지의 운반비는 필드번호 35번에 보고합니다. 운송형태(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운송을 위해 사용한 배송업체와 맺은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고, 배송업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여러 물품이 동일 운송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배부한 경우 발생 단위에 근거하여 배부하고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본사 소유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 계산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4 : 물류창고비용

필드명 : INWARE

설명 : 창고보관비용을 보고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비용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보관비용 및 고객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귀사가 운영하는 물류창고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창고의 위치를 설명하십시오. 고객을 위해 창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 리스트와 함께 제공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창고가 타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운영회사와 귀사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5 : 공장/물류창고에서 항구까지 내륙운반비

필드명 : INLFTP

설명 : 귀사가 조사대상물품을 **항구까지 운송**하기 위해 발생한 운반비를 보고하십시오. 운송형태(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여러 항목이 동일 운송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배부한 경우 발생 단위에 근거하여 배부하고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운송을 위해 사용한 배송업체와 맺은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고, 배송업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본사 소유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 계산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6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 부대비용

필드명 : INHANDLE

설명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 부대비용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개별 구성항목 포함)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7 : 보험료

필드명 : ININSUR

설명 : **수출국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 금액을 보고하고,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8 : 해상운반비

필드명 : OCFREIGHT

설명 : 수출항에서 한국까지 배송을 위해 발생한 운반비를 보고하십시오.
운송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십시오.
해당 비용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9 : 해상보험료

필드명 : OCINSUR

설명 : 수출국 항구에서 한국 항구까지 발생한 해상보험료 금액을 보고
하십시오. 해당 비용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0 : 한국내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필드명 : KRCHARGE

설명 : 한국 내에서 발생한 핸들링,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금액을 보고
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개별 구성항목 포함)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1 : 한국내 항구에서 물류창고까지 운반비

필드명 : KINLFPW

설명 : 한국통관 후 물류창고까지 발생한 운반비를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2 : 한국내 물류창고비용

필드명 : KRWARE

설명 : 한국내 창고보관비를 보고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비용은
고객에게 별도로 청구하여 회수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필드번호 43 : 항구/물류창고에서 고객까지 운반비

필드명 : KINLFWC

설명 : 한국내 항구 또는 물류창고에서 고객까지 발생한 운반비를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4 : 한국내 보험료

필드명 : KRINSUR

설명 : 한국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를 보고하고,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5 : 신용비용

필드명 : CREDIT

설명 : 단기차입이자율을 사용한 신용비용을 계산하십시오. 귀사가 적용한 **단기차입이자율** 관련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신용비용은 개별 매출건의 **입금일과 출하일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계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 평균회전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46 : 신용기간

필드명 : CREPRD

설명 : 위 신용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일수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7 : 은행수수료

필드명 : BKCHARGE

설명 : 한국 고객으로부터 대금 회수 시 발생한 은행수수료를 보고하십시오. 은행수수료 항목이 다양한 경우 각 항목별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은행별 수수료가 다른 경우 은행별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 필드에 보고된 비용의 계산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8 : 판매보증비용

필드명 : WARR

설명 : 판매보증비용을 보고하십시오. 배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보고하십시오. 직전 3 회계연도 동안의 연도별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판매보증비용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비용의 산출방법과 근거를 명시하십시오. 이러한 비용이 조사대상물품의 일부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또는 여러 물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관련 금액을 배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판매보증 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거래건별 파일에 제시된 보증비용 계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9 : 기술지원 및 서비스비용

필드명 : AFTERSAL

설명 : 기술서비스 비용을 보고하십시오. 배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의 비용을 보고하십시오. 거래처에 제공하는 서비스, 수리, 상담 등의 서비스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50 : 수수료

필드명 : COMM

설명 : 판매와 관련하여 지불한 지급수수료 **금액과 그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여러 종류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종류별로 별도의 필드에 보고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조건과 수수료가 결정되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업체가 관계회사인지 여부를 설명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1 : 판매대행사

필드명 : SELAGEN

설명 : 판매대행업체의 이름 또는 내부 관리코드를 보고하십시오. 여러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업체별 수수료를 및 관계자(회사) 여부를 표시한 리스트를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52 : 관세 및 통관비용

필드명 : DTCCREAR

설명 : 수입통관 시 실제 부담한 관세액과 통관비용을 보고하고, 계산 방식을 보여주는 파일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3 : 포장비

필드명 : PACK

설명 : 한국 수출을 위해 발생한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비에는 재료비, 인건비 및 가공비가 포함됩니다. 여러 공장에서 포장비가 발생한 경우 공장별 가중평균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 자재비, 인건비, 가공비별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포장 자재비의 경우 소요되는 **자재 리스트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4 : 한국내 포장비

필드명 : KPACK

설명 : 한국 내에서 발생한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비에는 재료비, 인건비 및 가공비가 포함됩니다.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포장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55 : 포장유형

필드명 : PACK TYPE

설명 : 제품이 판매되는 포장유형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56 : 환율

필드명 : FXRATE

설명 : 송장금액을 회계장부 표시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을 기재하십시오. 아울러 기재된 환율의 출처와 적용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외화환산과 관련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국의 환율변동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수출과 관련된 최근 2년 동안의 외화의 공식 매도율과 매입률 자료와 중앙은행환율을 제시하십시오. 또한 비공식 환율이 있다면 그것을 기재하고 그 원천을 밝히십시오.

필드번호 57 : 과세가격

필드명 : CIFVAL

설명 : 한국 통관 시 보고한 과세가격을 보고하십시오. CIF 금액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방식과 증빙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8 : 수입상

필드명 : IMPORTER

설명 : 수입자를 기재하십시오.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확인 안 됨”으로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59 : 제조자

필드명 : MFR

설명 : 제조자명을 표시하십시오. 제조자를 모르는 경우 귀사에게 조사 대상물품을 공급한 공급자를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60 : 용도

필드명 : USE

설명 : 생산, 판매를 위해 내부관리되고 있는 제품의 용도를 보고하십시오. 만약 내부관리되고 있는 용도가 없다면 홈페이지, 브로슈어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제품의 용도를 보고하십시오.

Section F. 내수판매

Section F에서는 내수시장에서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귀사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판매가격과 가격 책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사대상물품이 내수시장에서 판매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⁷⁾, 무역위는 Section G의 구성가격이나 한국을 제외한 타 국가로의 수출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본 질문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내에 문의하십시오.

조사대상기간 내에 포함되는 판매인지 여부는 상업송장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매일에 대한 정의는 [부록 I]을 참고하십시오.

F-1. 내수판매 및 조정

이 부분에서는 귀사가 관계자(회사) / 비관계자(회사)에게 직접 판매한 건별 매출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전체 매출액에서 “DMSALE” 파일에 보고된 매출액을 구별해 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2. “DMSALE” 파일에는 건별 판매자료와 그에 대한 조정사항을 제시하십시오. 표본거래에 대하여 조정사항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 한 세트를 제출하십시오. 조정사항 중 관계자(회사)에 의해 발생한 항목이 있는 경우 조정사항별 관련된 관계자(회사)리스트를 제공하고 정상가격 여부를 입증하십시오.
3. 내수가격과 관련된 조정사항과 연관이 있는 모든 계정을 열거하고 관련 조정사항을 표시하는 차트를 제출하십시오.

7) 통상 대한민국 수출물량의 5% 미만인 경우를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F-2. 내수판매의 파일 포맷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F-2 DMSALE>

필드번호 0 : 일련번호

필드명 : SN

설명 : 각 매출 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십시오. 이 번호는 타 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필드번호 1 :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필드명 : CCN

설명 : 본 질의서 C-1 및 별도 배포한 CCN 안내서에 따라 CCN을 작성하십시오. 한국 내에서 추가 가공되는 경우 수입 당시 제품을 기준으로 CCN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필드번호 2 : 제품코드

필드명 : PRODCOD

설명 : 회계관리 목적으로 귀사에서 부여한 제품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 : 모델명

필드명 : MODEL

설명 : 송장에 표시되는 제품모델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1 : 모델명-1

필드명 : MODEL-1

설명 : 홈페이지, 브로슈어 등 대외적으로 제품을 표시·광고하는 모델명 내지 브랜드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 : 상업송장일자

필드명 : INVDATE

설명: 판매 건별 상업송장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5 : 판매일

필드명 : SALDATE

설명 : 상업송장일자와 다른 경우에만 보고하십시오. 판매일 보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당 조사관과 연락하십시오.

필드번호 6 : 상업송장번호

필드명 : INVNUM

설명 : 상업송장번호를 보고하십시오. 또한 송장번호 생성체계와 번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7 : 출하일

필드명 : SHIPDATE

설명 : 공장 또는 보관창고에서 고객에게 출고된 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8 : 대금입금일

필드명 : PAYDATE

설명 : 판매대금 입금일을 보고하고 해당 입금일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원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9 : 지급조건

필드명 : PAY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지급조건(예 : 일람지급, 30일 후 지급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경로별로 지급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지급조건을 고객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조기지급 할인이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면 위 지급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0 : 인도조건

필드명 : DEL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인도조건(예 : FOB, CFR, CIF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경로별로 인도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1 : 고객코드

필드명 : CUSTNUM

설명 : 각 판매 건별 고객코드를 보고하고 귀사의 고객코드, 주소, 이름이 기재된 리스트를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12 : 고객구분

필드명 : CUSCAT

설명 : 아래의 코드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십시오.

- 1 = 제조업자
- 2 = 상사
- 3 = 도매상
- 4 = 소매상
- 5 = 자가소비
- 6 - n = 기타

필드번호 13 : 유통경로

필드명 : CHANNEL

설명 : B-4에서 제시한 유통경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4 : 고객구분 (관계자(회사) 여부)

필드명 : CUSREL

설명 : 아래의 코드를 이용하여 관계자(회사)를 구분하십시오.

U = 비관계자(회사)

A = 관계자(회사)

필드번호 15 : 주문서 또는 계약 번호

필드명 : ORDNUM

설명 : 주문서 또는 계약번호를 보고하십시오. 주문번호의 생성체계와 번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6 : 제품등급

필드명 : GRA

설명 : 귀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세부 제품등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7 : 매출량

필드명 : QTY

설명 : 매출량을 보고하십시오. 각 출하기준 혹은 상업송장의 행번호 수량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수량의 단위가 달라 단위기준(kg)으로 환산이 필요한 경우, 환산된 수량은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18 : 수량단위

필드명 : QTU

설명 : 수량단위를 입력하십시오. 판매와 비용 발생시 여러 단위가 사용되는 경우 주요 단위를 선정하여 단일한 단위기준(kg)으로 데이터를 보고하고, 별도의 필드를 추가하여 발생 단위기준의 값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9 : 송장금액

필드명 : SALESAM

설명 : 최초의 고객에 대한 **세후 매출액**을 보고하고 **단위를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20 : 조기지급할인액

필드명 : EPAY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고객별 조기지급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1 : 수량할인액

필드명 : QTY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고객별 수량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2 : 기타할인액

필드명 : OTH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기타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추가 필드를 삽입하여 작성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정책을 설명

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
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3 : 순송장금액

필드명 : NETSALES

설명 : 필드 20에서 22에 보고된 금액을 송장금액(필드 19)에서 차감한
순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4 : 현지통화 기준 순송장금액

필드명 : TURNOVER

설명 : 필드 23에 보고된 순송장금액을 귀사의 회계시스템상에 기록된
내수통화로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5 : 반품수량

필드명 : CREDQTY

설명 : 반품수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6 : 반품금액

필드명 : CREDITURN

설명 : 반품금액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7 : 반품후 수량

필드명 : NETQTY

설명 : 반품후 수량을 보고하십시오.(즉, QTY - CREDQTY)

필드번호 28 : 반품후 금액

필드명 : NETVAL

설명 : 반품후 순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즉, NETSALES - CREDITURN)

필드번호 29 : 금액조정

필드명 : BILLADJ

설명 : 송장에서 직접 차감되는 할인(필드번호 20에서 22) 및 리베이트(필드번호 30) 외에 송장에서 차감되지 않는 금액조정 및 할인이 있는 경우,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과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금액 조정의 유형이 다양한 경우 추가필드를 삽입하여 보고하고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금액을 증가시키는 조정은 양, 감액시키는 경우는 음의 부호로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0 : 리베이트

필드명 : REBAT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지 않는 판매 건별 리베이트를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리베이트 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귀사의 리베이트 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리베이트 금액 산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31 : 물리적 특성 차이

필드명 : PHYDIFF

설명 : 각 모델별로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금액을 보고하십시오. 조정금액은 두 모델의 차이에 대한 시장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산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물리적 특성 차이에 대한 세부목록을 항목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귀사가 주장하는 각 차이별로,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32 : 간접세

필드명 : INDTAX

설명 : 각 판매 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세를 보고하고, 어느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설명하십시오. 각각의 세금항목에 대하여 세금 부과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십시오. 또한 각 세금항목의 계산방법, 정산방법, 납부와 관련한 서류도 첨부하십시오.

필드번호 33 : 공장에서 물류창고까지 내륙운반비

필드명 : INLFTW

설명 : 귀사의 **공장에서 창고**(또는 중간 경유지)까지의 운반비를 보고하십시오. 귀사가 이 필드에 보고한 비용을 계산한 방식을 별첨파일로 **제출**하십시오. 운송형태(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주십시오. 운송을 위해 사용한 배송업체와 맺은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고, 배송업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여러 물품이 동일 운송 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배부한 경우 발생 단위에 근거하여 배부하고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본사 소유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 계산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4 : 물류창고비용

필드명 : INWARE

설명 : 창고보관비용을 보고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비용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보관비용 및 고객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귀사가 운영하는 물류창고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창고의 위치를 설명하십시오. 고객을 위해 창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 리스트와 함께 제공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창고가 타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운영회사와 귀사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귀사가 이 필드에 보고한 비용을 계산한 방식을 첨부파일로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35 : 공장/물류창고에서 고객까지 내륙운반비

필드명 : INLFTP

설명 : 귀사가 조사대상물품을 **고객까지 운송**하기 위해 발생한 운반비를 보고하십시오. 귀사가 이 필드에 보고한 비용을 계산한 방식을 별첨파일로 **제출**하십시오. 운송형태(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여러 항목이 동일 운송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배부한 경우 발생 단위에 근거하여 배부하고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운송을 위해 사용한 배송업체와 맺은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고, 배송업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본사 소유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 계산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6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 부대비용

필드명 : INHANDLE

설명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 부대비용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개별 구성항목 포함)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7 : 보험료

필드명 : ININSUR

설명 : **수출국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 금액을 보고하고, 계산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8 : 신용비용

필드명 : CREDIT

설명 : 단기차입이자율을 사용한 신용비용을 계산하십시오. 귀사가 적용한 **단기차입이자율** 관련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신용비용은 개별 매출건의 **입금일과 출하일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계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 평균회전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39 : 신용기간

필드명 : CREPRD

설명 : 위 신용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일수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0 : 은행수수료

필드명 : BKCHARGE

설명 : 고객으로부터 대금 회수 시 발생한 은행수수료를 보고하십시오.
은행수수료 항목이 다양한 경우 각 항목별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은행별 수수료가 다른 경우 은행별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
하고 이 필드에 보고된 비용의 계산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1 : 판매보증비용

필드명 : WARR

설명 : 판매보증비용을 보고하십시오. 배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보고하십시오. 직전 3 회계연도 동안의 연도별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판매보증비용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비용의
산출방법과 근거를 명시하십시오. 이러한 비용이 조사대상물품의
일부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또는 여러 물품에 공통적으로 발생된
비용이라면 관련 금액을 배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판매보증 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거래건별 파일에 제시된 보증비용 계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2 : 기술지원 및 서비스비용

필드명 : AFTERSAL

설명 : 기술서비스 비용을 보고하십시오. 배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의 비용을 보고하십시오. 거래처에 제공하는
서비스, 수리, 상담 등의 서비스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3 : 수수료

필드명 : COMM

설명 : 판매와 관련하여 지불한 지급수수료 **금액과 그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여러 종류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종류별로 별도의 필드에 보고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조건과 수수료가 결정되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업체가 관계회사인지 여부를 설명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44 : 판매대행사

필드명 : SELAGEN

설명 : 판매대행업체의 이름 및 내부 관리코드를 보고하십시오. 여러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업체별 수수료를 및 관계자(회사) 여부를 표시한 리스트를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45 : 포장비

필드명 : PACK

설명 : 내수판매를 위해 발생한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비에는 재료비, 인건비 및 가공비가 포함됩니다. 여러 공장에서 포장비가 발생한 경우 공장별 가중평균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 자재비, 인건비, 가공비별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포장 자재비의 경우 소요되는 **자재 리스트**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46 : 포장유형

필드명 : PACK TYPE

설명 : 제품이 판매되는 포장유형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7 : 제조자

필드명 : MFR

설명 : 제조자명을 표시하십시오. 제조자를 모르는 경우 귀사에게 조사 대상물품을 공급한 공급자를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48 : 용도

필드명 : USE

설명 : 생산, 판매를 위해 내부관리되고 있는 제품의 용도를 보고하십시오. 만약 내부관리되고 있는 용도가 없다면 홈페이지, 브로슈어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제품의 용도를 보고하십시오.

F-3. 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귀사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을 구매한 후 추가 가공하여 비조사대상물품을 생산, 판매한 경우는 관계자(회사)가 동 제품을 소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외의 경우 관계자(회사)가 해당 조사대상물품을 재판매한 것으로 봅니다.

1. 내수시장에서 귀사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한 관계자(회사)리스트를 제공하고, 관계자(회사)를 통한 재판매 비율을 제출하십시오.
2. 한국 외에 위치한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귀사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DMSALE"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2.9 참조). 이때, 매출액은 재판매한 관계자(회사)가 최초의 비관계자(회사)에게 판매한 금액을 보고하여야 하며, 재판매한 관계자(회사)가 지출한 비용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3. 관계자(회사)가 판매보증 서비스, 기술지원 서비스, 운송 등의 서비스를 비관계자(회사) 고객에게 제공하는지 설명하십시오.
4. 내수시장에서 귀사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을 구매하여 소비한 관계자(회사)리스트를 제공하고, 해당 판매비율을 제출하십시오. 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에 적용되는 가격정책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SECTION G. 제조원가 및 구성가격

G-1. 일반설명

본 장은 귀사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내수판매, 한국 및 기타국으로의 수출판매와 관련된 생산원가 및 구성가격 보고내용을 설명합니다.

작성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본 질문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내에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십시오.

1. 제조원가(Cost of manufacturing)

제조원가는 귀사에 의해서 생산(또는 판매)된 조사대상물품의 CCN별 가중평균 제조원가를 의미합니다. 무역위가 별도지시를 하지 않는 한 조사대상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대상물품에 대한 단위당 제조원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역위는 생산원가나 구성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제조원가 자료를 활용할 것입니다. 만약 귀사가 조사대상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판매에만 관여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매입 원가가 제조원가가 될 것입니다.

2. 생산원가(Cost of production)

생산원가는 귀사에 의하여 판매된 조사대상물품의 CCN별 가중평균 생산원가를 의미합니다. 무역위가 별도지시를 하지 않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내수, 한국 및 기타국 시장에서 판매된 모든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단위당 매출원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역위는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생산원가와 내수판매가격을 비교할 것입니다.

3.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

구성가격은 귀사가 한국시장에 판매한 조사대상물품의 CCN별 가중평균 생산원가에 내수시장의 이윤을 더한 금액입니다. 구성가격은 정상가격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제품이 마치 내수시장에서 판매된 것과 같은 상황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귀사가 구성가격을 제출하는 경우 계산에 사용된 원천자료와 함께 계산방식 설명자료를 제출하시고 아래의 표를 작성하십시오. 아래 표의 필드는 "COM" 파일의 필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G-1.3 구성가격>

(단위 : 현지화폐단위, 현지화폐단위/kg)

CCN	제조원가 (매입원가)	판매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적정이윤	구성가격

4. 제조원가와 생산원가의 보고대상기간

본 장의 제조원가, 생산원가에 대한 답변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귀사에 의하여 발생한 정상적인 회계기록 하의 실제원가에 근거해서 보고하여야 합니다.⁸⁾

5. 가중평균 제조원가, 생산원가

생산원가, 제조원가는 각 CCN별 생산수량을 가중요소로 하여 평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동 물품을 생산한다면 생산원가, 제조원가는 각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가중평균하여야 합니다.

8) 만약 귀사의 회계연도가 조사대상기간과 3개월 이하로 차이가 난다면, 귀사의 회계연도에 근거한 자료로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역위의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십시오.

G-2. 일반사항

다음 항목의 질문에 대해서 완전하고 자세한 답변을 하십시오.

1. 제품 설명

귀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2. 생산공정

조사대상물품의 생산공정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a. 귀사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생산품**을 구분하여 주십시오.
- b. 조사대상물품의 **생산공정**에 대한 **흐름도**를 제공하십시오.
- c. 생산공정을 통하여 공정산출물 또는 작업로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d. 조사대상물품 생산공정에서 연산품, 스크랩 혹은 부산물 등이 생산된다면 이를 나열하십시오.
- e. 조사대상물품 생산을 위한 특정 원재료, 노무, 전기 또는 다른 동력, 기계와 설비, 하청계약,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투입요소를 나열하고 이 중 관계자(회사)로부터 조달되는 투입요소를 모두 구분하십시오.
- f.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주요 투입요소 3종에 대해(예 : 원재료, 에너지 비용 등) 다음의 양식에 맞춰 구매·투입수량 및 금액을 제출하십시오. **주요 투입요소는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원가요소를 의미합니다.**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G-2.2(f-1) 주요 투입요소별 구매현황>

연월	투입요소1		투입요소2		투입요소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G-2.2(f-2) 주요 투입요소별 투입현황>

연월	투입요소1			투입요소2			투입요소3		
	수량	금액	COM 대비 비중	수량	금액	COM 대비 비중	수량	금액	COM 대비 비중

g-1.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관계자(회사)로부터 구매한 주요 투입요소의 리스트를 제공하십시오. 각 주요 투입요소별로 다음의 표를 완성하십시오.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G-2.2(g-1) 주요 투입요소별 일반정보>

(단위 : 현지화폐단위)

주요 투입요소	공급자명	공급자와의 관계	구매 수량	구매 가격	평균 구매 단가	공급사의 COP	공급자별 구매비중	COM 대비 비중
투입요소 1	관계자(회사) 공급자명	A				관계공급사만 작성		
	비관계자(회사) 공급자명	U						
	합계							

i. 투입요소 및 관계자(회사) 별 조사대상기간 동안 총 구매수량

ii. 투입요소 및 관계자(회사) 별 조사대상기간 동안 총 구매금액

iii. 평균구매단가

- iv. 관계자(회사)인 공급사의 COP(제조원가(또는 매입단가)와 판매 및 일반 관리비의 합계) 및 COP 계산에 대한 설명과 근거자료 제시
- v. 투입요소별 조사대상기간 동안 비관계자(회사)로부터 구매한 총수량 및 금액
- vi. 조사대상기간 동안 관계자(회사)인 공급사가 비관계자(회사)에게 판매한 동일물품 매출량 및 금액을 각 투입요소별로 하단 양식에 따라 작성 하십시오.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G-2.2(g-1) 관계자 공급 투입요소별 일반정보>

(단위 : 현지화폐단위)

주요 투입요소	관계 공급자명	비관계자(회사)명	판매수량	판매금액	평균판매 단가	공급사의 COP
투입요소 1		.				
		.				
		합계				

g-2. g-1에서 관계자(회사)로부터 주요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주요 원재료, 공급사별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양식은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G-2.2(g-2) 관계 공급자 COP” 참조

- i. 생산·구매단가(생산량, 제조원가, 제조단가, 구매수량, 구매금액, 구매단가 등)
- ii. COP(손익계산서 등 COP 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포함)
- iii. 공급사의 관련 주요 원재료 구매 및 판매현황

3. 원가계산제도 및 회계정책

귀사의 정상적인 원가계산제도 및 통상적인 사업에서 조사대상물품을 생산(외부구매상품의 경우 판매)하기 위해 발생된 원가를 분류, 집계, 배분,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a. 회계제도에 대한 답변 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십시오.

i. 귀사의 정상적인 원가회계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ii. 귀사가 통상적으로 원가를 집계하는 제품군의 단계

iii. 귀사의 원가회계제도와 관련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록 및 관리 보고서의 형태별 설명

b. 만약 귀사의 원가회계제도가 표준원가 또는 예산원가에 기초하고 있다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i. 귀사의 원가계산제도 하에서 기록되고 있는 차이분석의 종류

ii. 각 차이를 계산하고 기록하는 대상기간

iii. 각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

iv. 표준원가 또는 예산원가(예 : 투입가격과 사용량)가 계산되는 **방법** 및 귀사가 이러한 표준원가 또는 예산원가를 개정하는 **빈도**. 그리고 가장 최근 조사대상물품과 관련하여 투입요소의 가격 및 투입량 정보를 개정한 **일자**

- v. 각 회계기간 동안 생산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유리한 차이 또는 불리한 차이의 처분(조업도 차이 포함)
 - * 예 : 매출원가에 배분,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에 안분 등
- c. 각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처리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 d.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산품 또는 부산품이 발생하는 경우 귀사의 원가회계제도 하에서 동 물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하십시오.
- e. 재무회계 목적과 원가회계 목적상 각각 다르게 평가되는 생산원가가 있다면 모두 설명하십시오.
- f. 조사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 원가계산 기간이 초기가동 기간에 해당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초기가동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정사항 및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십시오.

G-3. 답변형식

Section G에 대한 답변은 단위당 제조원가(상품 포함), 생산원가 및 구성가격의 계산이 귀사의 원가계산 시스템에서 계산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고, 귀사에서 사용하는 회계기록 및 관련 재무제표와도 일치해야 합니다.

제조원가, 생산원가 및 구성가격은 귀사의 정상적인 회계기록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그 기록은 수출국, 생산국 또는 관세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과 일치해야 합니다.

1. 답변방법의 기술

귀사의 제조원가, 생산원가 및 구성가격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a. 다음의 각 원가요소에 대해 단위당 제조원가(상품의 경우 매입원가)와 생산원가를 계산(또는 집계)하기 위해 귀사가 사용하는 원가 및 재무 회계 기록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i. 원재료

ii. 노무비

iii. 제조간접비

(귀사가 제출한 제조간접비 금액에 대한 최하위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공)

iv. 연구개발비

v. 일반관리비

(귀사가 잡손과 잡익으로 처리한 항목을 포함한 최하위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공)

vi. 판매비

(귀사가 제출한 수치에 대한 최하위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공)

vii. 순금융비용

(모든 이자수입 항목, 비용항목, 순이자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총액)

b. 귀사의 손익계산서와 반덤핑조사를 위하여 제출한 원가 사이에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아래 지침에 따라 **제출**하십시오. 자료는 귀사의 재무제표에서 시작하여, 최종보고된 원가 데이터까지 단계별 접근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 **원천 데이터**를 **표시**하십시오.

i. 감사보고서상의 손익계산서의 원가와 귀사 회계장부(시산표, 보조부 등) 원가의 연결

ii. 귀사 회계장부 상의 원가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원가 식별

iii. 회계장부 상의 조사대상기간 원가와 원가시스템 상의 원가 연결

iv. 원가시스템상의 원가와 제조원가의 연결

v.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제조원가와 무역위에 보고한 원가와와의 연결
- 보고에서 제외된 제품의 리스트와 이유

c. 귀사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한 곳 이상의 시설(설비)에서 물품을 생산하였다면 귀사가 생산에 사용한 모든 시설로부터 계산된 가중평균 모델별 제조원가를 제시하고, 적용한 가중평균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2. 계산내역

귀사의 단위당 제조원가 계산내역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답하십시오.

- a. 조사대상기간 동안 내수시장,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판매된 조사대상 물품에 대하여 CCN별 "COM" 파일을 제출하십시오.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G-3.2(a) COM>

필드번호 1 :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필드명 : CCN

설명 : 본 질의서 C-1 및 별도 배포한 CCN 안내서에 따라 CCN을 작성하십시오. 한국 내에서 추가 가공되는 경우 수입 당시 제품을 기준으로 CCN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필드번호 2 : 제품코드

필드명 : PRODCOD

설명 : 회계관리 목적으로 귀사에서 부여한 제품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 : 모델명

필드명 : MODEL

설명 : 송장에 표시되는 제품모델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 : 제품타입

필드명 : PTYPE

설명 : 아래의 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하십시오.

P = 귀사가 직접 제조

M= 타 공급사로부터 구매 후 재판매

필드번호 5 : 생산수량

필드명 : QTYPROD

설명 :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생산량(상품의 경우 구매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6 : 직접재료비

필드명 : DIRMAT

필드번호 7 : 부산물

필드명 : TOTSCRAP

필드번호 8 : 직접노무비

필드명 : DIRLAB

필드번호 9 : 변동제조경비

필드명 : VOH

필드번호 10 : 고정제조경비

필드명 : FOH

필드번호 11 : 제조원가

필드명 : SUBTOTPROD

설명 : 필드6 - 필드7 + 필드8 + 필드9 + 필드10

필드번호 12 : 기초 재공품

필드명 : BEGWIP

필드번호 13 : 구매 재공품

필드명 : PURCHWIP

필드번호 14 : 타계정 입고

필드명 : TRINWIP

필드번호 15 : 타계정 출고

필드명 : TROTWIP

필드번호 16 : 기말재공품

필드명 : ENDWIP

필드번호 17 : 제품제조원가

필드명 : TOTCOM

설명: 필드11 + 필드12 + 필드13 + 필드14 - 필드15 - 필드16

필드번호 18 : 단위당 제품제조원가

필드명 : TOTCOMUNIT

설명 : 필드17 / 필드5

- b. 내수시장 및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CCN에 대하여, “답변서 작성 양식(엑셀도표) : G-3.2(b)”에 해당하는 표를 작성하고, 보고된 원가 산출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표준원가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차이 배부방법을 설명하십시오.

G-4. 매출원가

1. 매출원가·재고 : 모든 물품과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표를 완성하십시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G-4.1(a) 매출원가(COGS)>

(단위 : 현지화폐단위)

모든 물품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조사대상기간 (2025.1.1.~12.31.)
매출액	1				
매출원가					
제품					
기초재고	2				
제조원가	3				
기말재고	4				
제품 매출원가	5=2+3-4				
상품					
기초재고	6				
구매입고	7				
기말재고	8				
상품 매출원가	9=6+7-8				
총매출원가	10=5+9				
매출총이익	11=1-10				
매출이익률	12=11/1				

조사대상물품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조사대상기간 (2025.1.1.~12.31.)
매출액	1				
매출원가					
제품					
기초재고	2				
제조원가	3				
기말재고	4				
제품 매출원가	5=2+3-4				
상품					
기초재고	6				
구매입고	7				
기말재고	8				
상품 매출원가	9=6+7-8				
총매출원가	10=5+9				
매출총이익	11=1-10				
매출이익률	12=11/1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G-4.1(b) 재고(INVEN)>

(단위 : kg)

조사대상물품 수량									
CCN	제품코드	기초재고	생산	구매	판매	타계정 대체	기타 증가	기타 감소	기말재고

(단위 : 현지화폐단위)

조사대상물품 금액									
CCN	제품코드	기초재고	생산	구매	판매	타계정 대체	기타 증가	기타 감소	기말재고

* 필요한 경우 필드를 추가하십시오.

* 기타증가, 감소의 경우 사유(세부내역)를 설명하십시오

2. 판매 및 일반관리비 배부 : COP 계산에 사용된 판매 및 일반관리비용의 배부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표를 작성하십시오.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G-4.2 SG&A>

(단위 : 현지화폐단위)

항목	계정과목명 ⁹⁾	계정과목코드	모든 물품	비조사대상물품	조사대상물품			배부기준 공식
					내수판매	대한국 수출	제3국 수출	
매출액	(1)							
매출원가	(2)							
제조원가	(3)							
총판매비용	(4)							
운반비								
수수료								
감가상각비								
:								
총일반관리비용	(5)							
인건비								
전력비								
:								
총금융비용	(6)							
이자수익								
이자비용								
:								
총영업외수익및비용 ¹⁰⁾	(7)							
:								
판매부가세금	(8)							
합계	(9)=sum(4:8)							

9) 개별 항목(예 : 운반비)에 대응하는 계정과목명과 코드를 최하위 단위 기준으로 빠짐없이 열거하여 주십시오.

10) 조사대상물품 생산·판매와 관련된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을 보고했다면, 해당 수익이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고, 그 세부내역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5. 생산원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내수 및 한국 시장에서 판매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항목코드를 열의 머리글로 사용하여 각 판매시장별, CCN별로 도표를 작성하십시오.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 G-5 COP>

(단위 : kg, 현지화폐단위)

*	항목명	항목 코드	항목 설명
1	시장	(MKT)	시장 구분
2	물품통제코드	(CCN)	질의서 Section C-1에서 언급
3	제품코드	(PRODCOD)	제품코드
4	조사대상기간 매출량	(QTY SOLD)	조사대상기간 동안 판매된 조사대상물품 해당모델의 총량
5	단위당 COM	(COMUNIT)	조사대상기간 동안 판매된 각 모델별 단위당 COM
6	총 판매비	(SELL)	내수 · 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
7	총 일반관리비	(G&A)	내수 · 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
8	순 금융비용	(FINANC)	내수 · 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
9	총 연구개발비용	(R&D)	내수 · 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
10	기타	(OTHER)	기타 비용
11	총 판매관련 비용	(SELLREL)	6에서 10까지의 합계
12	단위당 판매관련 비용	(SELLUNIT)	단위당 판매관련 비용
13	단위당 생산원가	(COPUNIT)	5와 12의 합계

Section H. 한국 내 추가가공 또는 조립 원가

본 장에서는 한국 내에서 추가가공 또는 조립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원가의 보고 관련 지침을 설명합니다.

H-1. 일반설명

1. 추가가공원가

추가가공원가(생산원가)란 한국 내에서 추가가공 또는 조립 시 투입되는 원재료, 노무비, 가공비, 재포장비용, 판매 및 일반관리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원가를 의미합니다.

2. 보고기간

조사대상기간 동안 귀사에 의하여 발생한 정상적인 회계기록 하의 실제 원가에 근거해서 보고하여야 합니다.¹¹⁾

3. 가중평균 추가가공원가

추가가공원가는 각 CCN별로 한국 내 판매물량을 가중요소로 하여 평균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한국 내 생산시설에서 동 물품을 생산(추가가공)한다면 각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가중평균하여야 합니다.

11) 만약 귀사의 회계연도가 조사대상기간과 3개월 이하로 차이가 난다면, 귀사의 회계연도에 근거한 자료로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역위의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십시오.

H-2. 일반사항

다음 항목의 질문에 대해서 완전하고 자세한 답변을 하십시오.

1. **생산공정(추가가공 공정) : 조사대상물품의 한국 내 추가가공 공정에 대하여 아래 항목별로 설명하십시오.**
 - a. 조사대상물품 추가가공 공정 흐름도를 제출하십시오.
 - b. 귀사의 추가가공 생산시설에 대하여 상기 공정별로 사용되는 설비의 종류 및 기능, 개수, 위치 등을 설명하십시오.
 - c. 상기 설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목록을 제공하고, 제품별 특성을 설명하십시오.
 - d. 추가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산출물 또는 작업로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하십시오.
 - e. 조사대상물품 생산을 위한 특정 원재료, 노무, 전기 또는 다른 동력, 기계와 설비, 하청계약,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투입요소 리스트를 제출하십시오.
 - f. 주요 투입요소 중 관계자(회사)로부터 구매한 내역이 있는 경우 투입요소 목록을 제출하고 아래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 모든 공급처로부터 구매한 투입요소의 총수량 및 총금액
 - 관계자(회사)로부터 구매한 투입요소의 총수량 및 총금액
 - 관계자(회사)가 귀사에 청구한 금액
 - * 관계자(회사)가 비관계자(회사)에게 청구한 내역 또는 귀사가 비관계자(회사)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보고
 - 위의 관계자 청구금액 및 추가가공 원가계산에 사용한 원천자료

2. 원가계산제도 및 회계정책

- a. 귀사의 원가회계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또한 추가가공 시 발생하는 원가를 식별하여 장부에 보고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b. 각 공정별로 직접 및 간접 **코스트 센터 목록**을 제공하고, 각 코스트 센터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설명**하십시오.
- c. 만약 귀사의 원가회계 방식이 표준원가 또는 예산원가에 기초하고 있다면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 i. 귀사의 원가제도 하에서 기록되고 있는 차이분석의 종류
 - ii. 각 차이를 계산하고 기록하는 대상기간
 - iii. 각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
 - iv. 표준원가 또는 예산원가(예 : 투입가격과 사용량)가 계산되는 방법 및 귀사가 이러한 표준원가 또는 예산원가를 개정하는 빈도 그리고 가장 최근 조사대상물품과 관련하여 투입요소의 가격 및 투입량 정보를 개정한 일자
 - v. 각 회계기간 동안 생산(추가가공)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유리한 차이 또는 불리한 차이의 처분(조업도 차이 포함)

* 예 : 매출원가에 배분,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에 안분 등
- d. 귀사의 재무회계 시스템과 원가회계 시스템이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원가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H-3. 답변형식

Section H에 대한 답변은 단위당 생산원가(추가가공 원가)와 구성가격의 계산이 귀사의 원가계산 시스템에서 계산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귀사에서 사용하는 회계기록 및 관련 재무제표와도 일치하여야 합니다. 귀사가 실제 원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가가공 원가 계산 시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표준원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추가가공 원가 계산 시에도 역시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표준원가를 실제원가로 전환하기 위한 차이는 적절히 배부되어야 합니다.

귀사는 단위당 추가가공 원가를 귀사의 실제 회계처리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1. 답변방법의 기술

귀사의 추가가공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a. 다음의 각 원가요소에 대해 단위당 추가가공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귀사가 사용하는 원가 및 재무회계 기록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i. 원재료

ii. 노무비

iii. 제조간접비(귀사가 제출한 간접비금액에 대한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공)

iv. 연구개발비

v. 일반관리비(귀사가 잡손과 잡익으로 처리한 항목을 포함한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공)

- vi. 판매비(귀사가 제출한 수치에 대한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공)
 - vii. 순 금융비용(모든 이자수입 항목, 비용항목, 순금융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총액)
- b. 귀사의 원가 및 재무회계 시스템에서 계산된 원가와 반덤핑조사를 위하여 제출한 원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2. 계산내역

귀사의 단위당 추가가공 원가의 계산내역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답하십시오.

- a.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CCN에 대하여, 재료비, 노무비, 변동 및 고정제조경비 산출방식을 설명하십시오. 귀사가 표준원가를 사용하는 경우, 원가차이를 배부하는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 b. 판매 및 일반관리비용의 비율을 계산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 c. 순 금융비용비율을 계산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H-4. 추가가공원가 데이터 파일

한국 내에서 발생한 추가가공 원가를 다음 “EXFUCOM” 및 “EXFUCOP” 파일 양식에 맞추어 제공하십시오. 다만, 필요한 경우 양식을 적절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양식 : EXFUCOM>

필드번호 1 :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필드명 : CCN

설명 : 본 질의서 C-1 및 별도 배포한 CCN 안내서에 따라 CCN을 작성하십시오.

필드번호 2 : 제품코드

필드명 : PRODCOD

설명 : 회계관리 목적으로 귀사에서 부여한 제품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 : 모델명

필드명 : MODEL

설명 : 송장에 표시되는 제품모델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 : 매출량

필드명 : QTYSOLD

설명 :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매출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5 : 생산수량

필드명 : QTYPROD

설명 :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생산량(추가가공 수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6 : 직접재료비

필드명 : DIRMAT

필드번호 7 : 부산물

필드명 : TOTSCRAP

필드번호 8 : 직접노무비

필드명 : DIRLAB

필드번호 9 : 변동제조경비

필드명 : VOH

필드번호 10 : 고정제조경비

필드명 : FOH

필드번호 11 : 제조원가

필드명 : SUBTOTPROD

설명 : 필드6 - 필드7 + 필드8 + 필드9 + 필드10

필드번호 12 : 기초 재공품

필드명 : BEGWIP

필드번호 13 : 구매 재공품

필드명 : PURCHWIP

필드번호 14 : 타계정 입고

필드명 : TRINWIP

필드번호 15 : 타계정 출고

필드명 : TROTWIP

필드번호 16 : 기말 재공품

필드명 : ENDWIP

필드번호 17 : 제품제조원가

필드명 : TOTCOM

설명 : 필드11 + 필드12 + 필드 13 + 필드14 - 필드15 - 필드16

필드번호 18 : 단위당 제품제조원가

필드명 : TOTCOMUNIT

설명 : 필드17 / 필드5

<작성양식 : EXFUCOP>

(단위 : kg, 현지화폐단위)

*	항목명	항목 코드	항목 설명
1	물품통제코드	(CCN)	질의서 Section C-1에서 언급
2	제품코드	(PRODCOD)	제품코드
3	모델명	(MODEL)	모델명
4	조사대상기간 매출량	(QTYSOLD)	조사대상기간 동안 한국 시장에서 판매된 조사대상물품 해당모델의 총량
5	단위당 COM	(COMUNIT)	조사대상기간 동안 판매된 각 모델별 단위당 COM
6	총 판매비	(SELL)	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
7	총 일반관리비	(G&A)	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
8	순 금융비용	(FINANC)	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
9	총 연구개발비용	(R&D)	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
10	기타	(OTHER)	기타 비용
11	총 판매관련 비용	(SELLREL)	6에서 10까지의 합계
12	단위당 판매관련 비용	(SELLUNIT)	단위당 판매관련 비용
13	단위당 생산원가	(COPUNIT)	5와 12의 합계

Section I. 전자파일 준비 안내

귀사는 모든 데이터를 다음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출력하여 제출한 자료는 **USB**로 다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 아래와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회사명	
제출일	

2. 모든 제출자료는 **리스트를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3. **답변서**는 **HWP, MS-WORD** 또는 동 프로그램과 호환 가능한 파일 포맷으로 제출(PDF는 별첨 포함 자료 제출 시 활용, Narrative는 원칙적으로 HWP 또는 MS-WORD 사용)해야 합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질의서가 필요한 경우 담당 조사관과 연락하십시오.
4. **데이터와 표**는 **MS-EXCEL** 또는 동 프로그램과 호환 가능한 파일 포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의 표 양식이 필요한 경우 담당 조사관과 연락하십시오.
5. 파일은 각 자료에 분리, 연계, 공간 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부록 I. 용어해설

질의서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설명과 정의를 첨부합니다.

1) 관계자(회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자(회사)로 볼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① 친족 ②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 ③ 동업자 ④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⑤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⑥ 상대방을 법적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를 행사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⑦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를 받는 자 ⑧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동지배하는 자는 관계자에 해당됩니다. 일방이 귀사의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영업적 위치에 있는 경우 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비관계자(회사)

관계자(회사)로 정의할 수 없다면 비관계자(회사)로 간주됩니다.

위의 관계자(회사)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3) 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가격이 수출국으로 간주되는 국가 또는 관세영역(이하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정상적 거래(통상의 상거래)에서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해당 물품은 덤핑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조사대상물품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조사개시결정 공고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5) 조정요소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간 공정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건별로 물리적 차이, 수입비용과 간접세, 할인, 리베이트와 수량, 거래단계, 운송, 보험, 핸들링, 하역과 부대비용, 포장, 신용, A/S 비용, 커미션과 환산 금액을 포함한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 조정을 요구하는 생산자 및 수출자는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6) 통상(정상)적인 상거래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로서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내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된 거래를 통상적인 상거래로 간주합니다.

7) 정상가격(Normal Value)

정상가격은 수출국 내에서 독립고객이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기초합니다. 수출국에서 수출자가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경우의 정상가격은 다른 판매자나 생산자의 가격에 기초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은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에 기초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구성가격(CV) 설명 참조

8) 구성가격(CV)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물품 판매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 또는 소규모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동종물품의 제3국 수출가격 중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구성가격은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내수시장에서 발생하는 적정 이윤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9) 수출가격(EP)과 구성수출가격(CEP)

한국으로 판매된 제품의 가격은 수출가격과 구성수출가격, 두 종류의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무역위는 덤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합니다. 수출가격과 구성수출가격 모두 국외의 최초 비관계자(회사)에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비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가 한국 내 수입 전에 일어나는 판매의 경우 수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제조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한국에 수출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면, 제조자의 판매가 조사의 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초의 비관계자(회사)에 대한 무역상의 판매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비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가 한국 내 수입 후에 일어나는 판매의 경우 구성수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최초의 비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가 수입 전에 이뤄지더라도, 판매가 한국 내에 존재하는 수출자의 관계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한국 내 관계자(회사)가 단순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구성수출가격으로 판정됩니다.

무역위는 수출가격과 구성수출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송장금액에 판매관련 부대비용 등의 조정사항을 고려합니다. 이에 더해 구성수출가격의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한 판매 관련 비용, 추가가공 원가 및 수익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한국 내 판매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한국 내 관계자(회사)의 활동과 관련 있습니다. 이들 비용 중 제조자나 수출자에 의해 보상받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은 조정사항에서 제외됩니다.

10) 거래단계 차이 조정

거래단계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무역위는 유통시스템, 고객 분류, 판매활동 및 판매 관련 비용 발생 수준을 조사합니다. 대개는 유통 경로가 다른 구매자들이나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다른 판매 활동을 하는 판매자가 있는 경우 다른 거래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판매활동의 차이가 반드시 거래단계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거래단계가 차이가 있는 경우 판매활동의 차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같은 논리로 고객을 도매상, 소매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거래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임은 맞으나 반드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역위는 판매자의 판매과정 전체를 고려하여 다른 거래단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11) 이용가능한 자료

이해관계자가 자료(정보) 접근을 또는 제공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자료(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판정이나 최종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제출된 것이 발견되면 그 정보는 무시될 수 있으며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덤핑조사 과정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12) 원산지국

원산지국은 보통 상품의 생산이 전적으로 이루어진 지역(국가 또는 관세영역)이나, 1개 이상의 지역이 상품의 생산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 또는 관세영역을 말합니다.

13) 주문자상표표시 생산(OEM)

구입자의 상표로 판매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를 말합니다.

14) 생산원가(COP)

생산원가는 제조원가와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합니다. 재무비용은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일부분입니다. 제조원가와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15) 제조원가(COM)

제조원가는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로 구성됩니다. 원재료비,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16) 재료비(원재료비)

재료비는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에 발생한 모든 재료비를 포함합니다.

17)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는 생산량에 직접 영향을 줌으로써 조사대상물품의 생산과정과 직접 연계되는 노무비를 말하며, 이 비용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18)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는 간접노무비, 감가상각비, 동력비, 수선유지비 등 조사대상 물품에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19) 판매 및 일반관리비 (SG&A)

판매 및 일반관리비는 생산원가의 일부분이며 별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비용을 포함합니다.

제조원가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 제경비

생산원가 = 제조원가 + 판매 및 일반관리비

20) 판매일

무역위원회는 보통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수출자나 생산자의 기록이 기재된 상업송장 상의 일자를 판매일로 사용합니다. 다만, 수출자나 생산자의 판매조건(가격, 수량)을 더욱 적절히 반영한 다른 일자(장기계약의 경우에 계약일)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를 판매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자가 송장일 외의 다른 일자를 판매일로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일에 따라 어떤 판매가 이 질의서의 Section E와 F에 대한 답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와 수출가격을 환산할 적절한 환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록 Ⅱ. 자료의 정확성 입증

본인은 “회사명”에 소속된 “직책, 이름”로서, 제출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본인이 아는 한 완벽하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서 명)

부록 III. 공개본 작성 지침

본 질의서에 대한 공개본 답변서는 모든 수출자, 수입자 및 한국 생산자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공개본 답변서는 비공개로 제출된 정보의 실질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공개본 답변서 작성 시 다음의 사항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1. 완성된 비공개본 답변서를 근거로 귀사가 기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를 식별하여 공개본에 포함하십시오.
2. 귀사가 비공개본 답변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정보가 실제로 비밀정보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기밀정보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본 답변서에 사항별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해당 기밀정보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시하십시오. 요약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요약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아래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여러 해에 걸쳐 관련된 정보를 요약하는 경우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밀정보 예시

2010	2011	2012
US\$ 100,000	US\$ 200,000	US\$ 300,000

· 공개본 표시 예

2010	2011	2012
100	200	300

기밀정보가 단일 수치로 표시되는 경우 백분율을 적용하여 변화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기밀정보 예시 : 귀사의 COM이 USD 1,000/톤인 경우 비공개본의 요약정보는 USD 1,100/톤으로 표시하고, 주석으로 기밀정보이므로 실제치에서 $\pm 10\%$ 범위 안에서 조정되었음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기밀정보가 수치가 아닌 문장인 경우, 요약하거나 이름 등을 제외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기밀정보 예시 : "A사로부터 수입가가 20% 낮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문장의 경우 비공개본의 요약정보는 "[고객 중 한 곳]으로부터 수입가가 20% 낮다는 사실을 들었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공개용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 여부
검토보고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6-2호)

2026. 3.

무역조사실

< 목 차 >

I. 조사신청 개요	1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1
2. 조사신청물품 및 국내생산품	3
3.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	6
4. 국내수급 현황	7
5. 비밀취급 여부 검토	8
II. 조사개시 여부 검토	11
1. 조사신청 자격 유무	16
2. 조사신청의 대표성 충족 여부	17
3. 덤핑사실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18
4.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22
5.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22
6. 기타 조사신청 기각 사유 해당 여부	23
III. 종합 검토의견	24
IV. 조사개시 결정 사항	25

< 참고자료 >

1.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사실 관련 증빙자료	29
2. 신청인이 제출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 관련 증빙자료	34
3. 신청인이 제출한 국내산업의 피해우려 관련 증빙자료	39
4. 신청인이 제출한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피해의 인과관계 증빙자료	40
5.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의견 자료	43
6. 조사신청서 상 비밀취급 요청정보 및 사유	46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의 자료는 환산값과 증감률을 표시함
 - 환산값은 예시와 같이 기준 연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 연도 값과 환산값은 "12,345" (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예) 기준 연도 값 : 1,0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변동폭(%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 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음수(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음수(또는 적자) 확대', '양수(또는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I. 조사신청 개요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가. 신청취지

- '26.3.17.1) 주식회사 영진은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제출함

나. 신청인

- 신청인 : 주식회사 영진
 - 대리인 : 법무법인 울림(변호사 김태우),
주식회사 더인터내셔널트레이드컨설팅(공인회계사 김종탁)

< 신청인 현황 (‘24년 기준) >

구분	신청인	(주)영진
회사설립 연·월·일		1978.8.10.
대표자		박제성
주 소(본사/공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38 (삼정동)
자본금		153,000백만원
매출액	총매출액	41,291백만원
	동종물품	xxx백만원
주요 생산제품		고체 수산화나트륨, 인산염, 규산염 등의 화공약품
종업원수		xxx명

* 자료 : 조사신청서

- 1) 신청인은 당초 '26.1.30.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 (무역위원회고시 제2025-7호) 제16조제2항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신청서 보완요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26.3.17. 최종 보완된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자료가 제출된 날을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봄
- 2) 본 보고서에서 회사명 앞이나 뒤의 (주)는 주식회사의 약어임

다. 피신청인

공급국 / 관세영역 ³⁾	공급자 (생산자) ⁴⁾	신청인 제시 덤핑률
중국	베파르 (Befar Group Co., Ltd.)	20.03%
	산시 베이원 (Shaanxi Beiyuan Chemical Group Co., Ltd.)	
	산둥 다디 (Shandong Dadi Salt Chemical Group Co., Ltd.)	
	산둥 신파 (Shandong Xinfu Chemical Co., Ltd.)	
	신장 중타이 (Xinjiang Zhongtai Chemical Co., Ltd.)	
	신장 티앤예 (Xinjiang Tianye Group Co., Ltd.)	
	웨이방 케미칼 (Hebei Jinhong Weibang Chemical Co., Ltd.)	
	뉴소스 케미칼 (Shandong New Source Chemical Co., Ltd.)	
	폰드랜드 케미칼 (Fondland Chemicals Co., Ltd.)	
	칭다오 광진롱 (Qingdao Fangjinlong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스타 그레이스 (Star Grace Mining Co., Ltd.)	
대만	포모사 (Formosa Plastics Corporation)	34.32%
	헬리 엔터프라이즈 (Joint Fair Enterprise Co., Ltd.)	
	유니온 케미칼 (Union Chemical Works Ltd.)	

* 자료 : 조사신청서

3)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뿐 아니라 대외무역 관계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한 '독자적 관세영역'의 가입을 허용하며(마라케쉬 협정 제12.1조), 대만은 해당 지위로 '02.1월 WTO에 가입하였는 바, WTO 반덤핑협정을 포함한 다자간 무역협정은 대만 관세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한편, 마라케쉬 협정은 '국가'라는 용어에 독자적 관세영역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WTO는 공식발간자료(반기별 무역구제조치 현황 통보문) 등에서 '국가(country)'와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을 실무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바, 조사실은 이러한 국제실무 관행과 대만의 WTO 회원명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 대만을 '관세영역'으로 지칭함

* 대만의 WTO 회원명 :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약칭 'Chinese Taipei')

4) 신청인이 파악한 조사신청물품의 주요 공급자는 모두 해당 공급국 또는 관세영역 내의 '생산자'로서, 중간무역상인 수출자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자료 등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자료 내에서는 중간무역상 정보 파악이 불가능함)

2. 조사신청물품 및 국내생산품

가. 조사신청물품

○ 품명 : 고체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⁵⁾ solid)

- 관세품목분류(HSK) : 2815.11.0000⁶⁾

- 관세율 : 기본세율 8.0%, WTO 협정세율 5.5%(대만), 한-중 FTA 협정세율 0%(중국)

○ 정의 :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농도로 농축·가공하여 제조한 백색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으로, NaOH의 화학식을 가진 것

○ 물리·화학적 특성 : 백색의 무른 고체로,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아 수용액이 되는 조해성(潮解性)이 강하고, 대표적인 강염기(강알칼리)⁷⁾ 물질로서 유지류(기름) 및 단백질 분해능력이 탁월함

○ 용도 : 범용 무기화학제품⁸⁾인 조사신청물품은 세척 및 중화(pH 조절) 등의 기능이 요구되는 각종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됨

* 용도 예시 : 비누·세제 제조, 공정 pH 조절, 산성폐수 중화 등의 수처리, 금속 표면처리, 섬유의 가공 및 정련, 펄프·제지의 정련 등

5) 강부식성인 수산화나트륨은 흔히 '가성(苛性)소다'로도 불리며, 국제관세기구(WCO)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HS코드 2815.1(액체·고체 수산화나트륨)의 공식품명을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로 명명하고 있음

6) 조사신청물품의 관세품목분류(HSK) 정의

관세품목분류	정의	
	한 글	영 문
2815 1-	수산화나트륨 [가성(苛性)소다]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2815 11 0000	고체	Solid
2815 12 00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In aqueous solution (soda lye or liquid soda)

7) 물 또는 산(Acid)과 접촉 시 반응열을 일으키며 강력히 반응하므로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8) 황산,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 등 대량 생산·소비 체계를 갖추고 전방산업 전반에 기초원료로 투입되는 무기화학물질로서, 제품 간 차별성이 낮아 가격 경쟁력 및 수급 안정성이 핵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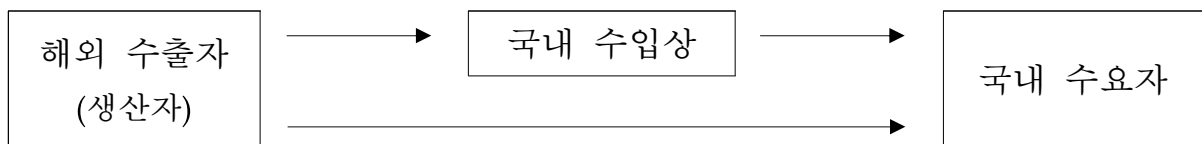
- **제조과정** : 원재료인 농도 50% 내외의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온에서 농축하고, 냉각·고체화한 후 성형, 포장을 거쳐 생산함

< 제조 공정⁹⁾ >

1단계	원료 투입	원재료인 농도 50% 내외의 액체 수산화나트륨 ¹⁰⁾ 을 농축기에 공급
2단계	농축	원재료를 고온·저압 상태의 낙하박막식 농축기 ¹¹⁾ 에 통과시켜 수분을 제거하고 농축하는 핵심 공정
3단계	고체화·성형 ¹²⁾	고농도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회전하는 냉각 롤러 표면에 얇게 도포한 후 빠르게 식혀 고체화하고, 칼날로 긁어내 조각 형태로 생산
		고농도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타워 상단에서 분사하여 냉풍에 의해 균형 미세한 방울 형태로 생산 등
4단계	포장·저장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습기에 민감하므로 밀폐된 용기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저장

- **유통경로** : 조사신청물품은 국내 수입상이 해외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수요자가 직접 수입함

< 주요 유통경로 >



9) 제조공정은 보편적인 공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생산자별로 적용 기술 및 공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물품의 정의 및 특성 등이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조사신청물품에 해당함

10) 염수(소금물)를 정제 후 전기분해하여 농도 30% 내외의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만든 뒤, 증발설비(Evaporator)에서 물을 제거하여 농도 50% 내외로 농축시킨 것

11) 낙하박막식 농축기 : 액체를 얇은 막 형태로 흘러보내 물만 선택적으로 증발시켜 농도를 높이는 장치

12)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형태는 플레이크, 펠, 펠릿 타입 등으로 다양하나, 물리·화학적 특성은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며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함

나. 국내생산품

- 품명 및 정의 : 조사신청물품과 동일함
- 물리·화학적 특성 등 : 조사신청서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은 조사신청물품과 물리·화학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함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주요 품질 항목 비교13)>

품질 시험항목	분류	단위	국내동종물품	조사신청물품	
			(주)영진	중국산14)	대만산
수산화나트륨 (NaOH)15)	순도	%	xxx	xxx	xxx
탄산나트륨 (Na ₂ CO ₃)16)	불순물	%	xxx	xxx	xxx
염화나트륨 (NaCl)17)		%	xxx	xxx	xxx
산화철 (Fe ₂ O ₃)18)		%	xxx	xxx	xxx

* 자료 : 조사신청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품질 시험성적서)

- 제조공정 : 조사신청서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은 조사신청물품과 제조공정이 동일함

13)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동일한 화학식(NaOH)을 가지며, 표에 제시된 네 가지 시험항목은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품질을 구성·좌우하는 주요 성분임. 신청인에 따르면,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끓는점·녹는점 등의 물리적 특성이 아닌 순도와 불순물 함량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제품으로, 신청인은 고체 수산화나트륨 98% 제품에 대한 품질 시험성적서를 제출함.

참고로 KS 규격에서는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품질 기준을 수산화나트륨·탄산나트륨·염화나트륨·산화철 네 가지 성분의 함량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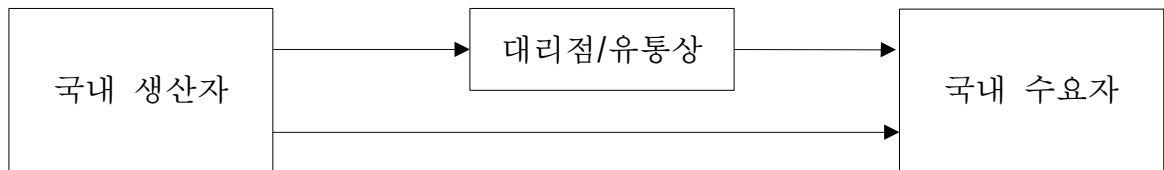
또한 조사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98% 농도의 고체수산화나트륨의 녹는점은 318℃, 끓는점은 1,390℃이며 70~75% 농도의 경우 녹는점은 약 65℃, 끓는점은 약 181.5℃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동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14) 대만산의 경우 피신청인 중 하나인 'Formosa'의 제품을 분석하였으나, 중국산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지 못하여 중국 내 유통되는 중간상('L&S International')의 판매 제품을 분석함
- 15) 수산화나트륨(NaOH) :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주성분으로, 강염기성을 나타내는 실제 유효 알칼리 부분이며, "유효분" 또는 "알칼리도"로 표시하고, 해당 함량이 높을수록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순도와 반응성이 좋다고 평가함
- 16) 탄산나트륨(Na₂CO₃) : 고체 수산화나트륨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해 생기는 부산물로, 유효 알칼리도를 떨어뜨리고 비누·펄프 등 일부 공정에서는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탄산분"을 낮게 관리함
- 17) 염화나트륨(NaCl) : 원료 염수(소금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남아 있는 소금 성분으로, 전도도·부식성 등에 영향을 주므로 고품질 고체 수산화나트륨일수록 NaCl 함량을 엄격히 제한함
- 18) 산화철(Fe₂O₃) : 설비·배관·원료에서 유입되는 철(Fe) 불순물이 산화된 형태로, 미량 금속 불순물 지표이며 특정 공정(반도체·전자·정밀화학 등)에서 제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철분(Fe)"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함

- 품질 및 소비자 평가 : 조사신청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과 국내 생산품 간에는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측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음
- 유통경로 : 조사신청서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은 조사신청물품과 동일하게 최종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되거나 중간상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국내생산품 주요 유통경로>



3.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

가. 국내생산자

- 조사신청일 현재 국내생산자는 (주)영진 및 범창산업(주) 2개사임

국내생산자	'24년 생산량(톤)	생산비중(%)
(주)영진	xxx	xxx
범창산업(주)	xxx	xxx
합계	xxx	xxx

* 자료 : 조사신청서, 소관부서(산업부 화학산업과) 자료

나. 수입자

-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등

다. 수요자

- xxx, xxx, xxx, xxx, xxx 등

4. 국내수급 현황

-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수요는 '24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소비는 xxx톤으로 xxx%, 국내생산품 수출은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공급은 '24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공급은 xxx톤으로 xxx%, 외국산 제품 총수입은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국내시장 수급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연도	'22년	'23년		'24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 요	국내소비 (국산품 내수 + 총수입)	물량	<u>1,000</u>	<u>953</u>	-4.7	<u>1,044</u>	9.6	<u>1,000</u>	<u>899</u>	-10.1
		금액	<u>1,000</u>	<u>941</u>	-5.9	<u>1,000</u>	6.3	<u>1,000</u>	<u>1,015</u>	1.5
	수출 (국산품 수출)	물량	<u>1,000</u>	<u>409</u>	-59.1	<u>630</u>	54.0	<u>1,000</u>	<u>2,043</u>	104.3
		금액	<u>1,000</u>	<u>1,870</u>	87.0	<u>744</u>	-60.2	<u>1,000</u>	<u>1,636</u>	63.6
합 계		물량	<u>1,000</u>	<u>951</u>	-4.9	<u>1,043</u>	9.7	<u>1,000</u>	<u>901</u>	-9.9
		금액	<u>1,000</u>	<u>949</u>	-5.1	<u>998</u>	5.2	<u>1,000</u>	<u>1,018</u>	1.8
공 급	국내공급 (국산품 내수+수출)	물량	<u>1,000</u>	<u>795</u>	-20.5	<u>804</u>	1.1	<u>1,000</u>	<u>799</u>	-20.1
		금액	<u>1,000</u>	<u>877</u>	-12.3	<u>863</u>	-1.6	<u>1,000</u>	<u>838</u>	-16.2
	수입 (총수입)	물량	<u>1,000</u>	<u>1,316</u>	31.6	<u>1,603</u>	21.8	<u>1,000</u>	<u>1,025</u>	2.5
		금액	<u>1,000</u>	<u>1,079</u>	7.9	<u>1,243</u>	15.2	<u>1,000</u>	<u>1,259</u>	25.9

* 자료 : 조사신청서

5. 비밀취급 여부 검토

< 검토할 사항 >

- 비밀취급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비밀취급 요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줄 것을 요청했는지 여부
- 비밀취급 요청한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비밀취급 요청인이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요약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
 -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6.5조

성격상 비밀인 정보 (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아니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1조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2조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정보의 제공자가 그 정보의 공개나 일반화된 또는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인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가. 비밀취급 요청 자료

- 신청인 제출자료 : 조사신청서 및 별첨자료

나. 비밀취급 요청 사유 및 요약서 제출 여부

- 신청인은 비밀취급 요청자료에 대해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상세한 공개본 자료를 제출하였음

다. 비밀취급 요청자료 공개 시 제출자 및 이해관계인 이익의 침해 우려 여부 등

- 신청인은 비밀취급 요청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제조원가,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거래처 정보 등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비밀취급요청 목록 및 비공개 사유에 대해 제출하였음¹⁹⁾
- 조사실은 조사신청서 및 별첨서류 상의 비공개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자들이 해당 정보를 직접 영업에 활용하거나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19) (참고6) 조사신청서 상 비밀취급 요청정보 및 사유

II. 조사개시 여부 검토

< 검토할 사항 >

-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 조사에 찬성한 국내생산자가 조사신청의 대표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 덤핑사실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 해당 여부
 - 미소덤핑마진 또는 미소수입물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내산업의 피해가 경미한지 여부
 -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 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

< 관계 법규 >

-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 ④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 ⑤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관세 법규 >

○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① 영 제59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 ② 영 제59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1.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 ③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 관계 법규 >

○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개시)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

○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② 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1.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 수입량: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이상인 경우
 - 나.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③ 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2.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 관계 법규 >

○ WTO 반덤핑협정 제4.1조

이 협정의 목적상 "국내산업"이라는 용어는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상품의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다음의 예외가 있다.

- (i) 생산자가 덤핑으로 주장되고 있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계가 있는²⁰⁾ 경우, 또는 생산자 자신이 그 물품의 수입자인 경우에는, 국내 산업은 나머지 생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WTO 반덤핑협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를 받고 있는 덤핑의 존재, 정도 및 영향을 판정하기 위한 조사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행하여진 서면신청으로 개시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5.2조

제1항의 신청은 (a)덤핑, (b)이 협정에 의해 해석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피해, (c)덤핑수입품과 주장된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한다.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은 이 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동 신청은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 (i) 신청자의 신원 및 신청자의 동종 상품 국내생산량 및 가치에 대한 기술. 서면신청이 국내산업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동 신청서는 동 신청이 대신하는 산업을 동종 상품의 알려진 모든 국내생산자(또는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자협회) 명부로서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러한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량과 가치를 기술한다.

20) 이 항의 목적상 생산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a) 동인들 중 하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하나를 통제하는 경우, 또는 (b)동인들이 함께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당하는 경우, 또는 (c)동인들이 함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 단, 이 관계의 효과가 관련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되지 아니한 생산자와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할 정도라고 믿거나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들중 일방이 타방을 법적 또는 운영상으로 제약 또는 감독을 행할 위치에 있을 경우 전자가 후자를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관계 법규 >

- (ii) 덤핑협약이 있는 상품에 대한 상세 기술, 당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명, 알려진 각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의 신원, 그리고 알려진 당해 상품 수입자의 명부;
 - (iii) 당해 상품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또는, 적절한 경우, 동 상품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으로부터 제3국에 판매되는 가격이나 구성가격에 관한 정보) 및 수출가격에 관한 정보 또는 적절한 경우 동 상품이 수입회원국의 영토내의 독립된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
 - (iv) 제3조제2항과 제4항에 열거된 국내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소와 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덤핑협약이 있는 수입품의 물량의 추이에 관한 정보, 동 수입이 국내시장의 동종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
- WTO 반덤핑협정 제5.3조
당국은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당국이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의해 표명된 신청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정도에 관한 검토에 근거하여, 동 신청이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졌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개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신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국내산업의 부분이 생산한 동종의 상품의 총생산의 50%를 초과하는 총체적 산출량을 구성하는 국내생산자가 지지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청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총생산이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된 동종 상품의 총생산의 25%미만인 경우 조사가 개시되지 아니한다.

< 관계 법규 >

○ WTO 반덤핑협정 제5.7조

덤핑과 피해의 증거는 (a)조사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에서, 그리고 (b)그 이후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로부터 개시되는 조사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5.8조

관계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히 종결된다. 덤핑마진이 최소허용 수준이거나,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된다.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마진은 최소허용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물량이 수입 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량의 3% 미만을 점유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의 3%미만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총체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물량의 7%를 초과 점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덤핑 수입량은 일반적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1. 조사신청 자격 유무

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여부 검토

- 조사신청서와 국내산업 소관부서²¹⁾ 의견 자료(이하 “소관부서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인 (주)영진은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21)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나. 신청서 접수일 이전 6개월 동안 조사신청물품 수입 여부 검토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조사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일 이전 6개월 동안('25.9.17.~'26.3.16.)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음

다. 조사신청물품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 유무 검토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조사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라. 조사신청 자격 유무 검토

- 이상의 검토 결과, 신청인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 이전 6개월 동안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조사신청 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

2. 조사신청의 대표성 충족 여부

- 조사신청서와 소관부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신청일 현재 국내 생산자는 (주)영진, 범창산업(주)로 총 2개사임
-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합계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국내생산자 생산량 합계의 xxx%로서 최소기준인 50%를 초과하고, '24년 국내 총생산량의 xxx%로서 최소기준인 25% 이상이므로 조사신청의 대표성을 충족함

<국내생산자 조사신청 찬·반 의견 현황>

(‘24년 기준)

국내생산자	생산량(톤)	비중(%)	조사신청 찬성여부
(주)영진	xxx	xxx	찬성
범창산업(주)	xxx	xxx	찬성
총계	xxx	xxx	

* 자료 : 조사신청서, 소관부서자료

3. 덤핑사실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신청인은 중국 및 대만산 조사신청물품에 대하여 각각 20.03%, 34.32%의 덤핑률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 중 국 >

가.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 (정상가격) 신청인은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정보를 입수하고자 하였으나, 기업 간 거래(B to B) 품목의 특성상 해당 가격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음²²⁾
 -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자료로서 중국 및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신청인의 제조원가, 중국 내 알려진 공급자의 공개된 재무제표 등을 사용하여 구성가격²³⁾을 산정·제출함
- (조정요소) 신청인이 제시한 정상가격은 공장도가격에 준하는 순(純) 구성가격²⁴⁾으로서, 내륙운임 등의 조정요소 제출·공제는 불요함

22) 신청인은 자신의 해외지사 및 코트라(KOTRA) 칭다오 무역관을 통하여 현지시장가격 정보를 입수코자 하였으나, 기업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은 비공개 정보로서 입수할 수 없었다고 밝힘

구성 요소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원재료비	노무비 및 제조경비		
23) 사용 정보*	㉠ 액체 수산화나트륨 중국 내수가격	㉡ 신청인의 농축공정 노무비 및 제조경비 ㉢ 한국-중국 간 임금, xxx, xxx 등의 차이	㉣ 중국 내 알려진 공급자의 비용	㉤ 중국 동종업계 평균이윤율

* 출처 : ㉠ OilChem 공시 액체 수산화나트륨 중국 내수가격('24.7~'25.6), ㉡ 신청인의 제조원가 자료, ㉢ Trading Economics의 한국·중국 제조업 평균임금 및 1인당 구매력 GDP('24), Global Petrol Prices의 국가별 xxx 단가('24.7~'25.6), ㉣ 중국 내 알려진 공급자(생산자)인 베파르, 산시 베이원, 신장 중타이의 공개된 손익계산서, ㉤ 중국 통계청 발표 '통계연감 2024'의 화학제조업 평균원가 및 영업이익

· OilChem: '02년 설립된 중국의 에너지·화학 등 정보 전문기관으로, 중국 내 정유·석유화학·가스·석탄·비철금속 등 주요 벌크 원자재의 내수가격, 수급·재고·수출입통계 및 가격지수 정보 등 제공 (<https://ca.oilchem.net>)

· Trading Economics: '08년 설립된 글로벌 경제 데이터 플랫폼으로, 196개 국가·관세영역에 대한 2천만개 이상의 거시경제·금융지표 데이터 및 전망치 제공 (<https://tradingeconomics.com>)

· Global Petrol Prices: '11년 설립된 글로벌 에너지 가격정보 전문기관으로, 150여개 국가·관세영역에 대한 자동차 연료, 전기요금 및 천연가스 가격 정보 제공 (<https://www.globalpetrolprices.com/>)

24) 순구성가격(Net CV) :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이윤을 합산한 총구성가격(Gross CV)에서 운임 등의 판매비를 차감해 공장도 거래단계로 맞춘 것으로, 덤핑마진 산정 시 '조정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가격

※ 덤핑마진 = '조정된 정상가격(순구성가격)' - 조정된 덤핑가격

나. 덤핑가격 및 조정요소

- (덤핑가격) 신청인은 '24.7월~'25.6월 조사신청물품 평균수입가격(CIF)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하고,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함
- (조정요소) 신청인은 덤핑가격 조정요소로서 내륙운임, 해상운임, 수출부대비용 및 증치세 미환급액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
 - (내륙운임) 중국 내륙에서 항구(XXX, XXX)까지의 철도운송 비용으로, 중국의 실제운임 단가표를 증빙으로 제출함
 - (해상운임·수출부대비용) 중국 항구에서 한국까지 선적 및 운송하는 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류기업 발행 견적서를 증빙으로 제출함
 - (증치세 미환급액) 조사신청물품 수출 시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증치세액²⁵⁾으로, 중국 세무총국의 증치세 환급률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함

다. 과세가격

- 신청인은 '24.7월~'25.6월 조사신청물품 평균수입가격(CIF)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하고,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함

라. 신청서 증거의 정확성 및 적정성 검토

- 신청서에 제시된 증빙자료는 WTO 반덤핑협정 제5.2조에 따른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며, 동 협정 제5.3조에 따른 '정확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 따라서 중국산 조사신청물품에 대하여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됨

25) 중국은 원칙적으로는 수출재화에 대한 매입증치세를 전액 환급하되, 산업 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출 제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차등 조정하고 있음. 조사신청물품은 이러한 수출 제한 품목 중 하나로, 수출가격의 13%만큼 매입증치세가 미환급되며, 해당 금액만큼 실질적인 수출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 증치세 미환급액(조사신청물품) = 수출가격(FOB) × [증치세 부과기준율(13%) - 수출 시 환급률(0%)]

< 대 만 >

가.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 (정상가격) 신청인은 해당 관세영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에 대한 통상거래가격 정보를 입수하고자 하였으나, 중국산 물품과 마찬가지로 기업 간 거래(B to B) 품목 특성상 가격정보 입수에 한계가 있었음²⁶⁾
-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자료로서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의 자료, 신청인의 제조원가, 대만 내 알려진 공급자의 공개된 재무제표 등을 사용하여 구성가격²⁷⁾을 산정·제출함
- (조정요소) 신청인이 제시한 정상가격은 공장도가격에 준하는 순(純) 구성가격으로서, 내륙운임 등의 조정요소 제출·공제는 불요함

나. 덤핑가격 및 조정요소

- (덤핑가격) 신청인은 '24.7월~'25.6월 조사신청물품 평균수입가격(CIF)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하고,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함
- (조정요소) 신청인은 내륙운임, 해상운임 및 수출부대비용을 덤핑가격 조정요소로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

26) 신청인은 자신의 해외지사 및 코트라(KOTRA) 타이베이 무역관을 통하여 현지시장가격 정보를 입수코자 하였으나, 기업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은 비공개 정보로서 입수할 수 없었다고 밝힘

구성 요소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원재료비	노무비 및 제조경비		
27) 사용 정보*	㉠ 액체 수산화나트륨 대만 내수가격	㉡ 신청인의 농축공정 노무비 및 제조경비 ㉢ 한국-대만 간 임금, xxx, xxx 등의 차이	㉣ 대만 내 알려진 공급자의 비용	㉤ 대만 내 알려진 공급자 및 유사업종 가중평균 이윤율

* 출처 : ㉠ [Chemical Market Analytics\(CMA\)](#) 공시 액체 수산화나트륨 대만 내수가격('24.7~'25.6), ㉡ 신청인의 제조원가 자료, ㉢ [Trading Economics](#)의 한국·대만 제조업 평균임금('24.7~'25.6) 및 한국의 1인당 GDP('24), 대만 공식통계 포털(<https://eng.stat.gov.tw>)의 대만의 1인당 GDP('24), [Global Petrol Prices](#)의 국가 및 관세영역별 xxx 단가('24.7~'25.6), ㉣ 대만 내 알려진 공급자(생산자)인 포모사의 공개된 손익계산서, ㉤ 포모사 및 xxx(대만의 종합화학회사)의 공개된 손익계산서

· [Chemical Market Analytics\(CMA\)](#): 1979년 최초 설립된 글로벌 화학시장 분석기관으로, 30여 개 국가 및 관세영역의 기초화학제품 200여 종에 대한 수급·가격·마진 및 교역 데이터 제공 (<https://cma.opisnet.com>)

- (내륙운임) 대만 내륙에서 항구(가오슝항)까지의 컨테이너 운송비용으로, 'Doing Business 2020 보고서'²⁸⁾ 상의 운임 단가를 증빙으로 제출함
- (해상운임·수출부대비용) 대만 항구에서 한국까지 선적 및 운송하는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류기업 발행 견적서를 증빙으로 제출함

다. 과세가격

- 신청인은 '24.7월~'25.6월 조사신청물품 평균수입가격(CIF)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하고,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함

라. 신청서 증거의 정확성 및 적정성 검토

- 신청서에 제시된 증빙자료는 WTO 반덤핑협정 제5.2조에 따른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며, 동 협정 제5.3조에 따른 '정확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 따라서 대만산 조사신청물품에 대하여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됨

28) Doing Business 2020 :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한 전세계 190개 국가 및 관세영역의 국경 간 교역 및 내륙운송(비용, 소요시간 등) 관련 정보제공 보고서. Doing Business '2020'은 특히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프로젝트 페이지(²¹) 전 마지막 공식 집계치로서 비록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의 유가 및 인건비 상승분 등은 미반영되어 있으나, 지역별 비즈니스 환경 검토·분석 기준 자료로서 널리 인용됨

4.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신청인은 '22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의 국내산업의 생산, 판매, 재고, 손익, 제조원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자료를 제출함
 - 해당 자료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의 내수 판매량은 '22년 xxx톤에서 '24년 xxx톤으로 감소하였고, '25년 상반기는 xxx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0.6% 감소하였으며, 가동률은 '22년 xxx%에서 '25년 상반기 xxx%로 감소함
 - 이에 따라, 신청인의 내수 영업이익률은 '22년 xxx%에서 '25년 상반기에는 xxx%로 하락 추세를 보임
- 조사신청서에 제시된 증빙자료는 WTO 반덤핑협정 제5.2조에 따른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며, 각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 협정 제5.3조에 따른 정확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 따라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해 조사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됨

5.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시장점유율·판매가격, 국내생산품의 국내판매량·시장점유율·실제판매가격·목표판매가격 등 자료를 제출함
 -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22년 xxx톤에서 '24년 xxx톤으로 증가하였고, '25년 상반기는 xxx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하였으나, 국내 시장점유율은 '22년 xxx%에서 '25년 상반기 xxx%로 지속 상승함
 - 이에 반해 국내산업의 내수판매량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국내 시장점유율 또한 '22년 xxx%에서 '25년 상반기 xxx%로 지속 하락함

1

- 조사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시장 판매가격이 '22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는 국내생산품의 가격인하 압박과 내수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함
- 조사신청서에 제시된 증빙자료는 WTO 반덤핑협정 제5.2조에 따른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며, 각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 협정 제5.3조에 따른 정확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 따라서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됨

6. 기타 조사신청 기각 사유 해당 여부

가. 덤핑차액 또는 수입물량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제시한 덤핑률은 중국 20.03%, 대만 34.32%이고,
 - 조사신청일 직전 1년²⁹⁾ 동안의 총수입물량 대비 조사신청물품 수입 비중은 xxx%³⁰⁾임
- 따라서 신청인이 제시한 공급국 및 관세영역의 덤핑차액과 조사신청 물품의 수입량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미소마진과 미소 수입물량 기준³¹⁾을 충족하므로, 조사신청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9) 미소수입물량 여부는 조사신청일 직전 정보이용이 가능한 1년을 대상으로 판단함(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III.2.바)

30) 조사신청일 이전 1년('25.3.17.~'26.3.16.) 동안 총 수입물량(약 xxx톤) 중 중국산이 약 xxx톤(xxx%), 대만산이 약 xxx톤(xxx%)임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31) 1. 덤핑차액 :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 수입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종물품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나. 덤핑물품 국내 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 합계가 국내 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나.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지 여부

- 조사신청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지속적인 저가판매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내수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등 시장 잠식이 이루어졌고,
 -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내수 부문 영업이익은 '22년 xxx백만원에서 '25년 상반기 xxx백만원, 영업이익률은 '22년 xxx%에서 '25년 상반기 xxx%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임
- 이상과 같은 국내산업의 내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감소 등 경영실적의 악화를 볼 때,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되었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III. 종합 검토의견

-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조사신청 자격이 있고, 조사신청의 대표성을 충족하며,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기타 조사신청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상 검토에 따라, 조사실은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IV. 조사개시 결정 사항

1. 조사대상물품

가. 품명 : 고체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solid)

- 관세품목분류(HSK) : 2815.11.0000³²⁾
- 관세율 : 기본세율 8.0%, WTO 협정세율 5.5%, 한-중 FTA 협정세율 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화학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범위 :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농도로 농축·가공하여 제조한 백색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으로, NaOH의 화학식을 가진 것³³⁾

*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및 물품통제코드(CCN)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무역위원회(덤핑 조사지원과)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2. 조사대상기간

가.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따라 '25.1.1.부터 '25.12.31.까지로 하되, 추후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나.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22.1.1.부터 '25.12.31.까지로 하되,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 시 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관세품목분류		정의	
		한글	영문
2815	1-	수산화나트륨 [가성(苛性)소다]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32) 2815	11 0000	고체	Solid

33) 농도(예 : 고체 수산화나트륨 70%, 98%, 99% 등) 및 고체 성상(예 : 플레이크, 펠, 펠릿 등) 등과 관계없이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본질적인 물리·화학적 특성을 지닌 것은 모두 조사범위에 해당함

< 관련 규정 >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⑤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 (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 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무역위원회 고시 제2025-7호)

제6조(조사대상기간)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에 관한 조사는 6월 이상의 기간을,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개시결정 이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또는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최종판정일 전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을 연장한 경우,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3. 조사대상자

가.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³⁴⁾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³⁵⁾에 따라, 덤핑사실 조사대상기간('25.1.1.~'25.12.31.) 동안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³⁶⁾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공급국 / 관세영역	공급자 (생산자, 수출자)	신청인 제시 덤핑률
중국	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	20.03%
	Skyey Impex Limited	
	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 Ltd.	
대만	Formosa Plastics Corporation	34.32%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상기 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참여 신청서'³⁷⁾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덤핑률을 산정함

34)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 관련된 수출자·생산자 수가 너무 많을 경우 당국은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를 합리적인 수로 제한할 수 있음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 등)

35)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시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 포함) 사용을 원칙으로 함

36)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사실 조사대상기간('25.1.1.~'25.12.31.) 동안 조사대상물품 對한국 수출비중 : (중국 3개사) 중국 → 한국 수출량의 약 xxx% 차지, (대만 1개사) 대만 → 한국 수출량의 약 xxx% 차지

37) 해당 공급국 정부나 관세영역 당국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참여 신청서'를 입수하여 신청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s://ktc.go.kr>) : 무역구제조사 진행 > 반덤핑 조사건명 > 질의서/답변서 참조

- 무역위원회가 조사참여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거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지 않은 공급자 및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신규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가중평균한 덤핑률을 적용함

나.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조사하며, 실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수행함

4. 조사 기간

-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관보게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되, 2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되, 2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이해관계인 참가 신청

-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및 관세영역의 협회 또는 단체, 국내수입자 및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이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관보게재일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부문은 덤핑조사 지원과,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토록 함

참고 1**신청인이 제출한 덤핑사실 관련 증빙자료****< 중 국 >****1. 신청인 제시 덤핑률**

○ 신청인은 중국 공급자에 대하여 20.03%의 덤핑률을 제시함

(단위 : USD/톤)

공급국	조정된 정상가격(a)	조정된 덤핑가격(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중 국	XXX	XXX	XXX	XXX	20.03% ³⁸⁾

2. 덤핑사실에 관한 증빙자료< 비공개 >

38) 조정된 정상가격 등의 모든 수치(단가)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된 표기값으로, 덤핑률 산정 시에는 실제 수치를 사용하였으며, 덤핑률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과 동일하게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함

< 비공개 >

< 비공개 >

< 대 만 >

1. 신청인 제시 덤핑률

- 신청인은 대만 공급자에 대하여 **34.32%**의 덤핑률을 제시함

(단위 : USD/톤)

관세영역	조정된 정상가격(a)	조정된 덤핑가격(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대 만	XXX	XXX	XXX	XXX	34.32%

2. 덤핑사실에 관한 증빙자료

< 비공개 >

< 비공개 >

< 비공개 >

참고 2

신청인이 제출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 관련 증빙자료

1.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에 관한 자료

< 조사신청물품의 수입 가격 >

구분	'22년	'23년		'24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조사 신청 물품	수입물량(톤)	<u>1,000</u>	<u>1,322</u>	32.2	<u>1,612</u>	21.9	<u>1,000</u>	<u>972</u>	-2.8
	수입금액(천US\$)	<u>1,000</u>	<u>1,173</u>	17.3	<u>1,255</u>	7.0	<u>1,000</u>	<u>1,061</u>	6.1
	평균수입가격(CIF) (US\$/톤)	<u>1,000</u>	<u>886</u>	-11.4	<u>779</u>	-12.1	<u>1,000</u>	<u>1,091</u>	9.1
	원화 재판매가격 ⁴¹⁾ (천원/톤)	<u>1,000</u>	<u>892</u>	-10.8	<u>809</u>	-9.3	<u>1,000</u>	<u>1,159</u>	15.9
중국	수입물량(톤)	<u>1,000</u>	<u>1,914</u>	91.4	<u>3,403</u>	77.8	<u>1,000</u>	<u>805</u>	-19.5
	수입금액(천US\$)	<u>1,000</u>	<u>1,569</u>	56.9	<u>2,520</u>	60.6	<u>1,000</u>	<u>888</u>	-11.2
	평균수입가격(CIF) (US\$/톤)	<u>1,000</u>	<u>820</u>	-18.0	<u>740</u>	-9.8	<u>1,000</u>	<u>1,103</u>	10.3
	원화 재판매가격 (천원/톤)	<u>1,000</u>	<u>831</u>	-16.9	<u>785</u>	-5.5	<u>1,000</u>	<u>1,165</u>	16.5
대만	수입물량(톤)	<u>1,000</u>	<u>1,014</u>	1.4	<u>679</u>	-33.0	<u>1,000</u>	<u>1,504</u>	50.4
	수입금액(천US\$)	<u>1,000</u>	<u>958</u>	-4.2	<u>568</u>	-40.7	<u>1,000</u>	<u>1,584</u>	58.4
	평균수입가격(CIF) (US\$/톤)	<u>1,000</u>	<u>944</u>	-5.6	<u>835</u>	-11.5	<u>1,000</u>	<u>1,053</u>	5.3
	원화 재판매가격 (천원/톤)	<u>1,000</u>	<u>954</u>	-4.6	<u>884</u>	-7.3	<u>1,000</u>	<u>1,112</u>	11.2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 (천원/톤)	<u>1,000</u>	<u>722</u>	-27.8	<u>752</u>	4.2	<u>1,000</u>	<u>683</u>	-31.7	
국내생산품 평균가격 (천원/톤)	<u>1,000</u>	<u>1,084</u>	8.4	<u>1,075</u>	-0.8	<u>1,000</u>	<u>1,047</u>	4.7	

* 자료 : 조사신청서

41) 원화재판매가격 = (평균수입가격(CIF) + 관세 + 통관제비용) x 평균환율

2.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에 관한 자료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22년	'23년		'24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률 ⁴²⁾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a=b+e)	물량	<u>1,000</u>	<u>953</u>	-4.7	<u>1,044</u>	9.6	<u>1,000</u>	<u>899</u>	-10.1	
	금액	<u>1,000</u>	<u>941</u>	-5.9	<u>1,000</u>	6.3	<u>1,000</u>	<u>1,015</u>	1.5	
총수입 (b=c+d)	물량	<u>1,000</u>	<u>1,316</u>	31.6	<u>1,603</u>	21.8	<u>1,000</u>	<u>1,025</u>	2.5	
	금액	<u>1,000</u>	<u>1,079</u>	7.9	<u>1,243</u>	15.2	<u>1,000</u>	<u>1,259</u>	25.9	
조사신청물품 수입 (c)	물량	<u>1,000</u>	<u>1,322</u>	32.2	<u>1,612</u>	21.9	<u>1,000</u>	<u>972</u>	-2.8	
	금액	<u>1,000</u>	<u>1,185</u>	18.5	<u>1,325</u>	11.8	<u>1,000</u>	<u>1,122</u>	12.2	
	중국	물량	<u>1,000</u>	<u>1,914</u>	91.4	<u>3,403</u>	77.8	<u>1,000</u>	<u>805</u>	-19.5
		금액	<u>1,000</u>	<u>1,585</u>	58.5	<u>2,660</u>	67.8	<u>1,000</u>	<u>940</u>	-6.0
	대만	물량	<u>1,000</u>	<u>1,014</u>	1.4	<u>679</u>	-33.0	<u>1,000</u>	<u>1,504</u>	50.4
		금액	<u>1,000</u>	<u>968</u>	-3.2	<u>600</u>	-38.0	<u>1,000</u>	<u>1,676</u>	67.6
기타수입 (d)	물량	<u>1,000</u>	<u>1,201</u>	20.1	<u>1,436</u>	19.6	<u>1,000</u>	<u>2,363</u>	136.3	
	금액	<u>1,000</u>	<u>867</u>	-13.3	<u>1,079</u>	24.5	<u>1,000</u>	<u>1,613</u>	61.3	
국내생산품 출하 (e)	물량	<u>1,000</u>	<u>797</u>	-20.3	<u>804</u>	0.9	<u>1,000</u>	<u>794</u>	-20.6	
	금액	<u>1,000</u>	<u>864</u>	-13.6	<u>865</u>	0.1	<u>1,000</u>	<u>831</u>	-16.9	
국내 소비 점유율	조사신청물품			11.1%p		4.4%p			3.6%p	
	기타수입			0.4%p		0.2%p			2.8%p	
	국내생산품			-11.4%p		-4.6%p			-6.4%p	

* 자료 : 조사신청서

42) 이하 본 보고서에서 %를 단위로 하는 지표(시장점유율, 가격비율 등)의 경우 '증감률'란에 표기된 수치는 각 연도의 전년 대비 변동폭을 의미하며, 그 단위로 %p를 표기함

3.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

가. 생산량 및 가동률

(단위 : 톤, %)

구분	'22년	'23년		'24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u>1,000</u>	<u>1,000</u>	0.0	<u>1,000</u>	0.0	<u>1,000</u>	<u>1,000</u>	0.0
생산량(b)	<u>1,000</u>	<u>766</u>	-23.4	<u>779</u>	1.7	<u>1,000</u>	<u>828</u>	-17.2
가동률(b/a)			-11.1%p		0.6%p			-6.4%p

* 자료 : 조사신청서

나. 판매 및 재고현황

< 판매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22년	'23년		'24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 (a=b+c+d)	물량	<u>1,000</u>	<u>795</u>	-20.5	<u>804</u>	1.1	<u>1,000</u>	<u>796</u>	-20.4
	금액	<u>1,000</u>	<u>861</u>	-13.9	<u>864</u>	0.3	<u>1,000</u>	<u>834</u>	-16.6
국내출하 (b)	물량	<u>1,000</u>	<u>797</u>	-20.3	<u>804</u>	0.9	<u>1,000</u>	<u>794</u>	-20.6
	금액	<u>1,000</u>	<u>864</u>	-13.6	<u>865</u>	0.1	<u>1,000</u>	<u>831</u>	-16.9
수출 (c)	물량	<u>1,000</u>	<u>178</u>	-82.2	<u>712</u>	300.0	<u>1,000</u>	<u>1,667</u>	66.7
	금액	<u>1,000</u>	<u>155</u>	-84.5	<u>629</u>	305.9	<u>1,000</u>	<u>1,732</u>	73.2
자가소비 (d)	물량	-	-	-	-	-	-	-	-

* 자료 : 조사신청서

< 재고현황 >

(단위 : 톤, %)

구분	'22년	'23년		'24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a)	<u>1,000</u>	<u>795</u>	-20.5	<u>804</u>	1.1	<u>1,000</u>	<u>796</u>	-20.4
재고(b)	<u>1,000</u>	<u>699</u>	-30.1	<u>515</u>	-26.3	<u>1,000</u>	<u>1,291</u>	29.1
재고율(b/a)			-0.4%p		-0.9%p			3.5%p

* 자료 : 조사신청서

다. 내수 부문 손익

(단위 : 백만원, %)

구분	'22년	'23년		'24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a)	<u>1,000</u>	<u>864</u>	-13.6	<u>865</u>	0.1	<u>1,000</u>	<u>831</u>	-16.9
매출원가(b)	<u>1,000</u>	<u>886</u>	-11.4	<u>852</u>	-3.8	<u>1,000</u>	<u>873</u>	-12.7
매출총이익(c=a-b)	<u>1,000</u>	<u>757</u>	-24.3	<u>918</u>	21.3	<u>1,000</u>	<u>645</u>	-35.5
판매관리비(d)	<u>1,000</u>	<u>1,077</u>	7.7	<u>1,208</u>	12.2	<u>1,000</u>	<u>853</u>	-14.7
영업이익(e=c-d)	<u>1,000</u>	<u>376</u>	-62.4	<u>572</u>	52.1	<u>1,000</u>	<u>144</u>	-85.6
영업이익률(f=e/a)			-45%p		1.8%p			-46%p

* 자료 : 조사신청서

라. 제조원가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 : 천원/톤, %)

구분	'22년	'23년		'24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료비(a)	<u>1,000</u>	<u>1,087</u>	8.7	<u>1,051</u>	-3.3	<u>1,000</u>	<u>1,086</u>	8.6
노무비(b)	<u>1,000</u>	<u>1,288</u>	28.8	<u>1,288</u>	0.0	<u>1,000</u>	<u>1,165</u>	16.5
경 비(c)	<u>1,000</u>	<u>1,115</u>	11.5	<u>996</u>	-10.7	<u>1,000</u>	<u>1,110</u>	11.0
제조원가(a+b+c)	<u>1,000</u>	<u>1,112</u>	11.2	<u>1,061</u>	-4.6	<u>1,000</u>	<u>1,100</u>	10.0
국내생산품 공장도판매가격	<u>1,000</u>	<u>1,084</u>	8.4	<u>1,075</u>	-0.8	<u>1,000</u>	<u>1,047</u>	4.7

* 자료 : 조사신청서

마.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단위 : 천원, %)

구분	'22년	'23년		'24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설비투자	<u>1,000</u>	<u>4,054</u>	305.4	<u>9,413</u>	132.2	<u>1,000</u>	<u>0</u>	-100.0
연구개발	<u>1,000</u>	<u>1,388</u>	38.8	<u>1,122</u>	-19.2	<u>1,000</u>	<u>1,243</u>	24.3

* 자료 : 조사신청서

바. 주요 원자재 가격

(단위 : 원/톤, %)

구분	'22년	'23년		'24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xxx	<u>1,000</u>	<u>1,088</u>	8.8	<u>1,046</u>	-3.9	<u>1,000</u>	<u>1,087</u>	8.7

* 자료 : 조사신청서

참고 3

신청인이 제출한 국내산업의 피해우려 관련 증빙자료

< 조사신청물품 공급국(관세영역)의 생산능력 및 수급현황 >

(단위: 천톤, %)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예상)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중국	생산능력(a)	<u>1,000</u>	<u>1,011</u>	1.1	<u>1,016</u>	0.5	<u>1,016</u>	0.0
	생산량(b)	<u>1,000</u>	<u>1,027</u>	2.7	<u>1,026</u>	-0.1	<u>1,021</u>	-0.5
	가동률(b/a)			1.1%p		-0.4%p		-0.3%p
대만	생산능력(a)	<u>1,000</u>	<u>1,000</u>	0.0	<u>1,000</u>	0.0	<u>1,000</u>	0.0
	생산량(b)	<u>1,000</u>	<u>992</u>	-0.8	<u>992</u>	0.0	<u>901</u>	-9.2
	가동률(b/a)			-0.7%p		0.0%p		-8.0%p
합계	생산능력(a)	<u>1,000</u>	<u>1,011</u>	1.1	<u>1,016</u>	0.5	<u>1,016</u>	0.0
	생산량(b)	<u>1,000</u>	<u>1,026</u>	2.6	<u>1,025</u>	-0.1	<u>1,018</u>	-0.7
	가동률(b/a)			1.1%p		-0.4%p		-0.5%p

* 자료 : 조사신청서

<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 >

(단위: 천원/톤, %)

구분		'22년	'23년		'24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		<u>1,000</u>	<u>892</u>	-10.8	<u>809</u>	-9.3	<u>1,000</u>	<u>1,159</u>	15.9
	중국	<u>1,000</u>	<u>831</u>	-16.9	<u>785</u>	-5.5	<u>1,000</u>	<u>1,165</u>	16.5
	대만	<u>1,000</u>	<u>954</u>	-4.6	<u>884</u>	-7.3	<u>1,000</u>	<u>1,112</u>	11.2
국내생산품 평균판매가격		<u>1,000</u>	<u>1,084</u>	8.4	<u>1,075</u>	-0.8	<u>1,000</u>	<u>1,047</u>	4.7

* 자료 : 조사신청서

참고 4

신청인이 제출한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피해의 인과관계 증빙자료

1.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 조사신청물품 국내판매가격과 국내생산품 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

구분	'22년	'23년		'24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 조사신청물품 평균 재판매가격(a)	<u>1,000</u>	<u>892</u>	-10.8	<u>809</u>	-9.3	<u>1,000</u>	<u>1,159</u>	15.9
중국	<u>1,000</u>	<u>831</u>	-16.9	<u>785</u>	-5.5	<u>1,000</u>	<u>1,165</u>	16.5
대만	<u>1,000</u>	<u>954</u>	-4.6	<u>884</u>	-7.3	<u>1,000</u>	<u>1,112</u>	11.2
○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a)	<u>1,000</u>	<u>722</u>	-27.8	<u>752</u>	4.2	<u>1,000</u>	<u>683</u>	-31.7
○ 국내생산품 판매가격(b)	<u>1,000</u>	<u>1,084</u>	8.4	<u>1,075</u>	-0.8	<u>1,000</u>	<u>1,047</u>	4.7
○ 가격차이(a-b)								
- 조사신청물품	음수	음수	음수확대	음수	음수확대	음수	음수	음수축소
중국	음수	음수	음수확대	음수	음수확대	음수	음수	음수축소
대만	음수	음수	음수확대	음수	음수확대	음수	음수	음수축소
- 기타수입국	<u>1,000</u>	<u>674</u>	-32.6	<u>709</u>	5.2	<u>1,000</u>	<u>619</u>	-38.1

* 자료 : 조사신청서

< 국내생산품 실제판매가격과 목표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

구분	'22년	'23년		'24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생산품 목표판매가격(a)	<u>1,000</u>	<u>1,137</u>	13.7	<u>1,106</u>	-2.7	<u>1,000</u>	<u>1,097</u>	9.7
- 단위당 제조원가	<u>1,000</u>	<u>1,112</u>	11.2	<u>1,061</u>	-4.6	<u>1,000</u>	<u>1,100</u>	10.0
국내생산품 실제판매가격(b)	<u>1,000</u>	<u>1,084</u>	8.4	<u>1,075</u>	-0.8	<u>1,000</u>	<u>1,047</u>	4.7
차이(a-b)	<u>1,000</u>	<u>2,000</u>	100.0	<u>1,164</u>	-41.8	<u>1,000</u>	<u>2,903</u>	190.3

* 자료 : 조사신청서

주) 목표판매가격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당 판매비) / (1 - 목표영업이익률),

신청인은 국내생산자의 '22년도 동종물품 내수 영업이익률인 xxx%를 목표영업이익률로 사용함

<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억제로 인한 수입상실 >

(단위 : 톤, 천원/톤, 백만원, %)

구분	'22년	'23년		'24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산품 실재가격 (a)	<u>1,000</u>	<u>1,084</u>	8.4	<u>1,075</u>	-0.8	<u>1,000</u>	<u>1,047</u>	4.7
목표판매단가 (b)	<u>1,000</u>	<u>1,137</u>	13.7	<u>1,106</u>	-2.7	<u>1,000</u>	<u>1,097</u>	9.7
단위당수입상실 (c=b-a)	0		-		-41.8			190.3
국내판매량 (d)	<u>1,000</u>	<u>797</u>	-20.3	<u>804</u>	0.9	<u>1,000</u>	<u>794</u>	-20.6
수입상실 (e=c×d)	0		-		-41.3			130.5

* 자료 : 조사신청서

< 고객상실로 인한 수입상실 >

(단위 : 톤, 천원/톤, 백만원, %)

구분	'22년	'23년		'24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목표판매량 (a)	<u>1,000</u>	<u>953</u>	-4.7	<u>1,044</u>	9.6	<u>1,000</u>	<u>899</u>	-10.1
실제판매량 (b)	<u>1,000</u>	<u>797</u>	-20.3	<u>804</u>	0.9	<u>1,000</u>	<u>794</u>	-20.6
판매상실물량 (c=a-b)	0		-		54.0			27.2
판매단가 (d)	<u>1,000</u>	<u>1,084</u>	8.4	<u>1,075</u>	-0.8	<u>1,000</u>	<u>1,047</u>	4.7
수입상실 (e=c×d)	0		-		52.7			33.1

* 자료 : 조사신청서

주) 목표판매량은 '22년 기준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 점유율 xxx% 유지를 가정함

2.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 국내소비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22년	'23년		'24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a=b+e)	물량	<u>1,000</u>	<u>953</u>	-4.7	<u>1,044</u>	9.6	<u>1,000</u>	<u>899</u>	-10.1
	금액	<u>1,000</u>	<u>941</u>	-5.9	<u>1,000</u>	6.3	<u>1,000</u>	<u>1,015</u>	1.5
총수입 (b=c+d)	물량	<u>1,000</u>	<u>1,316</u>	31.6	<u>1,603</u>	21.8	<u>1,000</u>	<u>1,025</u>	2.5
	금액	<u>1,000</u>	<u>1,079</u>	7.9	<u>1,243</u>	15.2	<u>1,000</u>	<u>1,259</u>	25.9
조사신청물품 수입 (c)	물량	<u>1,000</u>	<u>1,322</u>	32.2	<u>1,612</u>	21.9	<u>1,000</u>	<u>972</u>	-2.8
	금액	<u>1,000</u>	<u>1,185</u>	18.5	<u>1,325</u>	11.8	<u>1,000</u>	<u>1,122</u>	12.2
기타수입 (d)	물량	<u>1,000</u>	<u>1,201</u>	20.1	<u>1,436</u>	19.6	<u>1,000</u>	<u>2,363</u>	136.3
	금액	<u>1,000</u>	<u>867</u>	-13.3	<u>1,079</u>	24.5	<u>1,000</u>	<u>1,613</u>	61.3
국내생산품 출하 (e)	물량	<u>1,000</u>	<u>797</u>	-20.3	<u>804</u>	0.9	<u>1,000</u>	<u>794</u>	-20.6
	금액	<u>1,000</u>	<u>864</u>	-13.6	<u>865</u>	0.1	<u>1,000</u>	<u>831</u>	-16.9
국내 소비 점유율	조사신청물품			11.1%p		4.4%p			3.6%p
	기타수입			0.4%p		0.2%p			2.8%p
	국내생산품			-11.4%p		-4.6%p			-6.4%p

* 자료 : 조사신청서

< 비공개 >

< 비공개 >

< 비공개 >

참고 6

조사신청서 상 비밀취급 요청정보 및 사유

페이지	비공개 요청정보	법적근거	내용
6	신청인 국내동종물품 영업이익, 종업원수	②	*비공개 요청항목: 신청인 국내동종물품 영업이익, 종업원 수 본 자료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정보로, 해당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영업과 경쟁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에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13	수입자 현황	③	*비공개 요청항목: 수입자명, 수입량 및 수입량 비중 본 자료는 신청인이 영업 과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공표되지 않는 회사의 내부 자료이며, 공개 시 경쟁자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14	수요자 현황	③	*비공개 요청항목: 수요자명, 수요량 및 수요량 비중 본 자료는 신청인의 중요한 영업기밀 정보로서, 공개 시 경쟁자에게 신청인의 거래처가 공개되고,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14	국내 생산자	②	*비공개 요청항목: 국내생산자,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및 생산량 비중 본 자료는 공표되지 않는 내부 자료로서 회사의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이며, 대외 공개 시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15	국내 수급 현황	②	*비공개 요청항목: 국내 및 해외 수요, 공급 물량 / 국내 및 해외 수요, 공급 금액

페이지	비공개 요청정보	법적근거	내용
			본 자료 중 국내 및 해외 수요, 공급 자료는 공표되지 않는 회사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경쟁자들이 이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23	품질시험성적서	④	*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의 품질시험성적서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유료로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또한, 대외 공개 시 제품경쟁력 침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24~25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 충족 사실	②	*비공개 요청항목: 신청인 및 찬성인의 생산량 비중 본 자료는 공표되지 않는 내부 자료로서 회사의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이며, 신청인 및 기타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비중이 공개될 경우 경쟁사가 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26~29	대만산 정상가격 및 산정 근거	④	*비공개 요청항목: 정상가격의 출처, 정상가격 및 산정 근거 내역 본 자료는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유료로 제공받은 자료 및 신청인의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자료로서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대외공개가 금지되어 있음
30	대만산 덤핑가격 및 덤핑률 산정 근거	② ④ ⑤	*비공개 요청항목: 덤핑가격 산정근거 출처, 조정 전 덤핑가격, 내륙운송비, 해상운임 및 수출부대비용 조정사항 산정근거에 사용된 자료는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유료로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또한, 대외 공개 시 제품경쟁력 침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조정 전 덤핑가격 또한 신청인이 유료사이트를

페이지	비공개 요청정보	법적근거	내용
			<p>기반으로 획득한 자료임으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p>본 자료에 포함된 조정사항에 해당하는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내륙운반비는 협조를 통해 제공받은 외부 자료로서 영업 기밀에 관한 정보이며,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p>
31~33	중국산 정상가격 및 산정 근거	④	<p>*비공개 요청항목: 정상가격의 출처, 정상가격 및 산정 근거 내역</p> <p>본 자료는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유료로 제공받은 자료 및 신청인의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자료로서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대외공개가 금지되어 있음</p>
34~35	중국산 덤핑가격 및 덤핑률 산정 근거	② ④ ⑤	<p>*비공개 요청항목: 덤핑가격 산정근거 출처, 조정 전 덤핑가격, 내륙운송비, 해상운임 및 수출부대비용, 미환급증치세 조정사항</p> <p>산정근거에 사용된 자료는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유료로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또한, 대외 공개 시 제품경쟁력 침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p> <p>또한, 조정 전 덤핑가격 또한 신청인이 유료사이트를 기반으로 획득한 자료임으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p>본 자료에 포함된 조정사항에 해당하는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내륙운반비는 협조를 통해 제공받은 외부 자료로서 영업 기밀에 관한 정보이며,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증치세는 조정 전 덤핑가격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36~37	조사신청물품 수입 가격, 재판매가격	② ⑤	<p>*비공개 요청항목: 조사신청물품 수입가격, 재판매가격</p>

페이지	비공개 요청정보	법적근거	내용
			<p>조사신청물품의 수입 가격 및 재판매가격에는 신청인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자료가 반영되어 있기에 공개가 불가능함</p>
38~39	국내 소비, 수입, 국내생산품 출하 및 점유율 현황	②	<p>*비공개 요청항목: 국내 소비 물량 및 금액, 수입 물량 및 금액, 국내생산품 출하 물량 및 금액, 국내 소비 점유율</p> <p>본 자료는 공표되지 않는 내부 자료로서 회사의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영업 실적 자료임. 공개 시, 판매 물량 및 국내소비 등 국내산업의 시장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p>수입 데이터는 신청인이 외부 유료사이트로부터 획득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함</p>
40~42	수입 원화재판매가격 및 국내 동종물품 평균 가격	② ⑤	<p>*비공개 요청항목: 수입품의 재판매가격 및 국내 동종물품의 평균가격</p> <p>수입품의 재판매가격은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유료로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또한, 대외 공개 시 제품경쟁력 침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p> <p>국내 동종물품 평균 가격은 공표되지 않는 내부 자료로서 회사의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영업 실적 및 회계상 자료임.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42~43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	②	<p>*비공개 요청항목: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p> <p>신청인의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정보에 대한 근거 자료는 비공개 회계자료로 회사 영업 및 회계 기밀 정보임. 또한, 본 자료를 공개 시</p>

페이지	비공개 요청정보	법적근거	내용
			경쟁자는 신청인의 생산규모 및 가동률에 따른 경험 추정치를 이용하여 고정제조원가 및 변동제조원가를 추정할 수 있어 사업전략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44~46	판매현황	②	*비공개 요청항목: 신청인의 국내출하 물량 및 금액, 수출 물량 및 금액, 총출하 물량 및 금액, 자가소비 및 타계정대체 물량 및 금액 신청인의 영업상 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 기밀 정보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 및 국내 전체 시장규모를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공격적 가격정책을 통해 수입물량 확대를 시도할 수 있음
47~48	재고현황	②	*비공개 요청항목: 신청인의 총출하 물량, 재고 물량 및 재고율 신청인의 영업상 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 기밀 정보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영업과 경쟁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49~50	손익현황	②	*비공개 요청항목: 신청인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본 자료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정보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영업과 경쟁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51~52	제조원가	① ②	*비공개 요청항목: 신청인의 제조원가 본 자료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정보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영업과 경쟁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53	설비투자	②	*비공개 요청항목: 신청인의 설비투자 현황, 연구개발 내역

페이지	비공개 요청정보	법적근거	내용
			본 자료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정보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영업과 경쟁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54~55	주요 원자재가격	① ②	*비공개 요청항목: 주요 원자재의 가격, 국내생산품 가격 본 자료는 공표되지 않는 내부 자료로서 회사의 비밀정보이며, 회사의 제조원가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함.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영업과 경쟁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56~57	조사신청물품 수입 물량, 수입 가격, 재판매가격	② ⑤	*비공개 요청항목: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 수입가격, 재판매가격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에는 신청인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자료가 반영되어 있기에 공개가 불가능하며 수입 가격은 외부 유료사이트로부터 획득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함.
58~59	조사신청물품의 공급국(관세영역)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	④	*비공개 요청항목: 조사신청물품의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본 자료는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유료로 제공받은 자료로서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대외공개가 금지되어 있음
60~61	조사신청물품 수입 가격, 재판매가격,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	② ⑤	*비공개 요청항목: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 수입가격, 재판매가격,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 조사신청물품의 수입 가격 및 재판매가격에는 신청인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자료가 반영되어 있기에 공개가 불가능함.
63~65	국내 소비, 수입, 국내생산품 출하 및 점유율 현황	②	*비공개 요청항목: 국내 소비 물량 및 금액, 수입 물량 및 금액, 국내생산품 출하 물량 및 금액, 국내 소비 점유율 본 자료는 공표되지 않는 내부 자료로서 회사의

페이지	비공개 요청정보	법적근거	내용
			<p>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영업 실적 자료임. 공개 시, 판매 물량 및 국내소비 등 국내산업의 시장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p> <p>수입 데이터는 신청인이 외부 유료 사이트로부터 획득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함.</p>
66~70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	② ⑤	<p>*비공개 요청항목: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p> <p>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에는 신청인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자료가 반영되어 있기에 공개가 불가능함.</p>
71~75	가격 억제로 인한 수입 상실	① ②	<p>*비공개 요청항목: 국내생산품 적정판매가격, 매출원가, 실제판매가격, 판매수량</p> <p>비공개정보인 국내 생산품 실제 판매 가격, 적정 판매가격, 판매수량 및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되었으므로 공개가 불가능함</p>
	<별첨2> 신청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⑤	<p>*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p> <p>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인 외 기타 이해관계자의 접근 불가능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밀취급이 필요함</p>
	<별첨4> 신청인의 감사보고서	② ⑤	<p>* 비공개 요청항목 : 2025년 반기 재무제표</p> <p>2025년 재무정보는 아직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회계자료로써 신청인 외 기타 이해관계자의 접근 불가능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밀취급이 필요함</p>
	<별첨8> 주요 수입자 연락처	③	<p>* 비공개 요청항목 : 주요 수입자 연락처</p> <p>개인정보 보호법에 강화에 따라 무역협회는</p>

페이지	비공개 요청정보	법적근거	내용
			수입자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동 정보 대외공개 시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별첨9> 주요 수요자 연락처	③	* 비공개 요청항목 : 주요 수요자 연락처 신청인의 고객을 포함하여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영업기밀 자료로서 대외공개 시 경쟁자에게 신청인의 거래처가 공개되고 신청인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
	<별첨11>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자료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자료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제공하는 수입통계자료는 신청인이 유료정보로 획득한 자료로써 대외공개가 허락되지 않음으로 비밀유지가 필요함
	<별첨14> 한국화학융합시험연 구원의 품질 시험성적서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의 품질시험성적서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유료로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또한, 대외 공개 시 제품경쟁력 침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별첨17> 코트라 현지가격 조사 의뢰결과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코트라 현지가격 조사 의뢰결과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18> 대만의 액체 수산화나트륨 내수 가격 (CMA가격)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대만 CMA 액체 수산화나트륨 내수가격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19> 농축 공정의 노무비 계산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노무비 계산내역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페이지	비공개 요청정보	법적근거	내용
	<별첨20> 농축 공정의 연료비 및 기타제조경비 계산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연료비 및 기타제조경비 계산내역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21> 산업용 [천연가스] 국가별 가격 비교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내역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22> 산업용 [전력비] 국가별 가격 비교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산업용 전력비 가격내역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23> 국가별 GDP 기준 환산 비율의 계산 근거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국가별 GDP 환산비율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24> 대만의 판매비 및 관리비 계산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대만 주요 생산자 판매비 및 관리비 비율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25> 대만의 주요 화학업체 원가 대비 영업이익률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대만 주요생산자 영업이익률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26> 정상가격(구성가격) 산정 상세 계산내역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정상가격 산정내역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페이지	비공개 요청정보	법적근거	내용
	<별첨27> 대만의 수출 내륙운송비 계산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대만 내륙운송비 계산내역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28> 대만의 수출부대비용 및 해상운임 계산 상세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대만 수출부대비용 및 해상운임 계산내역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29> 중국의 액체 수산화나트륨 (32%) 내수가격 공시자료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액체수산화나트륨 내수가격 공시자료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30> 중국의 판매비 및 관리비 계산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주요 생산자 판매비 및 관리비 비율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31> 중국의 화학제조업 평균 원가 대비 영업이익률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화학제조업 영업이익률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32> 중국의 수출 내륙운송비 계산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내륙운송비 계산내역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33> 중국의 수출부대비용 및 해상운임 계산 상세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수출부대비용 및 해상운임 계산내역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페이지	비공개 요청정보	법적근거	내용
	<별첨34> 조사신청물품의 증치세 환급률 자료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증치세 환급 계산내역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35> 국내수입 통관비용 산정근거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국내수입 통관비용 계산내역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별첨36> 신청인 생산능력 산정근거	②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 생산능력 계산내역 신청인의 생산능력은 공표되지 않은 내부자료가 반영되어 있기에 공개가 불가능함.
	<별첨37> 대만 및 중국의 생산능력 및 수급현황 증빙	④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대만 및 중국 생산능력 및 수급현황 신청인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받은 정보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 비공개정보 구분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1) 제조원가
-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 (3)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사항
-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무역조사실

무역조사실장 전 응 길

조 사 단

[국내산업피해 조사]

조사단장	산업피해조사과장	류 동 희
조 사 관	산업피해조사과	신 여 름

[덤핑사실 조사]

조사단장	덤핑조사지원과장	김 영 윤
조 사 관	덤핑조사지원과	이 선 덕

<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 >

본 안내서는 반덤핑 질의서 Section C-1(조사대상물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에 대하여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1-1.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조사대상물품은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농도로 농축·가공하여 제조한 백색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으로, NaOH의 화학식을 가진 것입니다.

이때 농도(예: 수산화나트륨 농도 70%, 98%, 99% 등) 및 고체 성상(예: 플레이크, 펠, 펠릿 타입 등) 등과 관계없이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본질적인 물리·화학적 특성을 지닌 것은 모두 조사범위에 포함됩니다.

C-1-2. CCN 기준

CCN은 반덤핑조사 목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질의서 상에서 언급되는 CCN과 관련하여 아래의 코딩 체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코딩 체계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CCN과는 별개로 귀사에서 영업 및 회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코딩 체계(예: 물품코드, 자재번호 등)에 관하여 함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반덤핑 질의서 “Section C-1, C-2, C-3” 참조

물품 특성 1 : 등급 (Grade)

물품의 등급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Non-prime 등급으로 분류한 제품이 있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십시오.

P = 정상등급 (Prime merchandise)

N = 정상등급 외 (Non-prime merchandise)

물품 특성 2 : 농도

물품 고체화 기준, 수산화나트륨(NaOH)의 농도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070 = 70% 이상 ~ 75% 미만

075 = 75% 이상 ~ 80% 미만

080 = 80% 이상 ~ 85% 미만

085 = 85% 이상 ~ 90% 미만

090 = 90% 이상 ~ 95% 미만

095 = 95% 이상 ~ 100% 미만

물품 특성 3 : 형태

물품의 형태(고체 성상)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FL = 플레이크 (Flake)

PT = 펠릿 (Pallet)

PL = 펄 (Pearl) 또는 비드 (Bead)

OT = 기타 (Others)

※ 기타로 분류한 경우, 구체적인 형태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 주십시오.(예 : 파우더 등)

< CCN 구성 예시 >

농도 98%의 플레이크 타입 정상등급 고체 수산화나트륨 제품 → “P095FL”

자릿수	1	2~4	5~6
물품 특성	등급	농도	형태
	정상등급	98%	플레이크
CCN	P	095	FL